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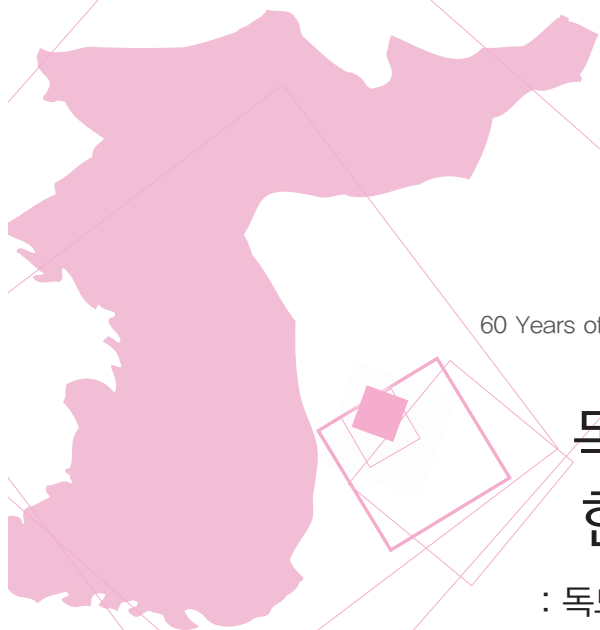
60 Years of Dokdo Issue and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 Event-Data Approach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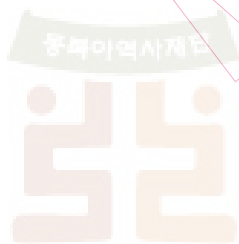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0 Years of Dokdo Issue and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 Event-Data Approach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배진수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영토 문제가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러한 역사·영토 문제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상생을 위한 역사 대화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영토·역사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갖는 연구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에 출범한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설립 이래 독도문제에 장기적·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술적인 연구·조사와 대외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새로운 독도영유권 논리 보강과 개발을 위해서는 사료 발굴과 함께 기존 자료의 집대성을 통한 새로운 분석기법의 적용도 적극 시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데이터 (1952~2010년)』는 국내외 처음 시도된 중요한 연구성과로서, 우리 재단의 연구 역량을 입증한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기존 독도연구 분야의 역사적, 국제법적 연구 성과에 추가하여 ‘실증적·경험적’ 연구의 토대 마련을 통해 영유권 논리 보강 및 개발에 기여하며, 정책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패턴 분석에 의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현안 발생시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흡하나마 이 연구결과가 학계 및 유관 부처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밑
알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2011년도 한 해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로 단행본 저술이라는 훌륭한 학문적 결실을 내어놓은 연구자와 책을 만
드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 책머리에

I. 이벤트데이터(Event-Data) 분석기법과 독도

1. 실증적 분석과 독도영유권 • 15
2.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과 활용례 • 17

II. 독도 이벤트데이터 구축

1. 독도 이벤트데이터 추출 • 25
2. 독도 이벤트데이터 코딩(Coding) • 33
3. 독도 이벤트데이터 개관 : 코드북(Codebook) • 47

III. 독도 이벤트데이터 분석사례

1. 연도별 독도 이벤트 현황 • 51
2. 행위목적별 독도 이벤트 현황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 55
3. 행위자별 독도 이벤트 현황 : 중앙 vs. 지방 • 59
4. 행위유형별 독도 이벤트 현황 • 62
5.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관할권 행사 현황 • 65
6. 이슈별 독도 이벤트 현황 • 72

IV. 독도 이벤트의 유사 분석사례

1.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 기사 분석 : 1948~2008년 • 81
2. 일본 의회회의록의 독도발언 건수 분석 • 94
3.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기술 분석 • 98
4.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분석 • 105
5. 미국 정권교체의 독도 관련성 분석 • 115

V. 맺음말 :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정교한 영유논리로 일본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 • 123
2. 대상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 • 126
3. 독도 기사 보도와 언론의 역할 • 136

참고자료 1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주요 독도 이벤트 개관

1. 독도 등대 (1954.8.10 무인 / 1998.12.10 유인) • 143
2. 독도 우표(1954.9.15 / 2002.8.1 / 2004.1.16) • 144
3. 독도 경비 (1956.4.8) • 146
4. 독도 거주 (1965.3) • 148
5. 독도 헬기장 (1981 / 2011) • 151
6. 독도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1982.11.16 / 1999.12.10) • 152
7. 독도 통신(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1991.12.27 일반전화 개통) • 153
8. 독도 부채자 투표(1995.6.27 / 2006 / 2007 / 2008 / 2010) • 156
9. 독도 점안시설 (1997.11) • 157
10. 독도 국립공원 지정 계획 보도 (2001.10.17) • 159
11. 광업지적에 독도 포함 (2002.11.22) • 161
12. 독도 입도 '허가제→신고제' 전환 (2005.3.16, 3.24) • 162
13. 독도 운항 (2005.4.8) • 164
14. '독도함' 명명 (2005.7.12) • 165
15.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법률 발효 (2008.7.28) • 167
16. 사업자 등록증 교부 (2009.3.11) • 168
17. 독도 원격의료진료시스템 개통 (2009.7.23) • 169
18.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2010.11.10) • 170
19. 독도 생물유전자 등록 (2010 / 2011) • 171

참고자료 2

독도 이벤트 연표 : 1952~2010년(538건)



필자가 독도연구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15년 전인 1997년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라는 연구서를 출간하면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특히 『방위백서』를 통해서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해가 바로 1997년이였다. 이때의 독도연구를 계기로 2006년 9월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과도 인연을 맺게 됨을 항상 감사하고 있다.

당시 막상 ‘독도’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생각만큼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였다. 예전처럼 개인 연구자로서 연구할 때는 그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이제는 대책과 해결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채 문제점만 도출하는 식으로는 정책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부담감도 들었다. 예전까지 개인 연구자로서 분석하고 주장했던 필자의 일부 소견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것들도 있었고 한편 어떤 과제들은 좀 더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군다나 독도문제를 보는 시각과 입장이 정부, 학계, 국민 할 것 없이 각 계층별로 극과 극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어떠한 기초를 유지하더라도 스펙트럼을 달리하는 최소한 어느 한 부류로부터는 본의 아니게 견제와 곡해 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부처별 특성상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 수 밖에 없고, 학계는 학계대로 역사·지리·국제법·국제정치학 등 전공 간 또는 전공 내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일 때가 있으며, 심지어 시민단체들 간에도 예외 없이 “독도개발”을 선호하느냐 “독도환경보전”을 선호하느냐 등에 따라 입장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은 중단되거나 포기될 것 같은 조짐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도발 수위와 차원이 점점 높아져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듯한 양상마저 띄고 있다. 동양의 한자(漢字) 문화권 특성상 역사적 고사료(古史料) 등에 의한 영유권 논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3국들은 설사 관심을 갖더라도 역사적 고사료와 국제법적 법리에 의거한 영유권들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때가 되면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정부는 정부대로 전략적 차원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거의 매번 정부의 소극적 대응 의지에 실망을 표출할 때가 많다.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수호 측면에서 보면 가히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 형국이다.

과연 이 딜레마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 나가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수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책의 집필 동기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새로운 독도영유권 논리 보강과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 발굴과 함께 기존 자료의 집대성을 통한 새로운 분석기법의 적용이 적극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 학계에서 활용되어 온 ‘Event-Data 분석기법’에 의거 독도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처음으로 1952~2010년 기간 총 538건의 이벤트 추출을 통해 ‘독도 Event-Data’ 구축을 시도하였다. ‘독도’라는 극히 한정된 이슈에 국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도된 작업의 결과 538건의 독도 이벤트 건수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간 한국이 입법관할권을 비롯하여 국방·치안, 정치·외교, 공공행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독도 영토주권을 확실히 행사해 왔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국내외 처음 시도되는 ‘독도 Event-Data(1952~2010년)’ 구축과 관련하여 제1장은 이벤트데이터(Event-Data)의 개념과 개괄적 소개를, 제2장에서는 독도 이벤트데이터 구축을 위한 자료추출과 유형분류의 세부적인 코딩(coding) 기준과 원칙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추출된 독도 이벤트데이터의 여섯 가지 각 변수별 현황과 연도별 추이 등 기초적인 분석 내용을 SPSS(s/w) 그래프 및 도표와 함께 시각적으로 쉽게 기술하고 있다 : (1) 연도별, (2) 행위목적별, (3) 행위자별, (4) 행위유형별, (5) 관할권영역별, (6) 이슈별.

둘째 부분은 독도 이벤트와 관련하여 그간 필자가 실증적·경험적 접근방법에 의거 시도해 온 다섯 가지 각 독도 이벤트 현안 별 분석사례들을 제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존의 여타 분석들에 비해 실증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들도 제시되어 있다 : (1)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기사 이벤트, (2) 일본국회의 독도발언 이벤트, (3)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기술 이벤트, (4)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이벤트, (5) 미국 정권교체와 독도관련 이벤트. 특히 제5장 ‘맺음말’에서는 독도 이벤트데이터 추출을 가능케 해 준 ‘언론기사’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되짚어볼 만한 ‘언론매체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도 필자의 고언(苦言)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 셋째 부분에서는 한국이 독도 영토주권을 행사해 온 독도등대, 독도우표, 독도입도 등 19가지 주요 독도 이벤트별 개관을 알기쉽게 연혁 위주로 정리했으며, 또한 1952~2010년 기간을 대상으로 추출된 538건의 독도 이벤트를 ‘한국행위’와 ‘일본행위’로 구분하여 연표로 첨부했다. 향후 각 부처·기관별로 활용목적에 따라 이벤트 범위 및 코딩 변수의 추가나 조정을 통해서

또는 접근 가능한 자료출처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시도되는 작업이기에 계속해서 보완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필자로 하여금 2011년도 한 해 동안 본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6년 재단 출범 이래 발간된 단행본 중 재단 소속 연구위원이 저술한 첫 단독연구 단행본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고 기다려 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필자에게 지혜와 슬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2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저자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 이벤트데이터(Event-Data)

분석기법과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실증적 분석과 독도영유권

최근 수년 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2005년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 제정 및 매년 행사 강행, 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정밀 위성지도 제작(2007.12),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용 10개 외국어판 팸플릿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2008.2), 일본 문부성의 초등·중등·고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및 교과서 검정본 등의 독도기술 강화(2008.7/2009.12/2010.3/2011.3),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 및 외무성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 계속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 초등·중등·고등 교과서의 독도기술 강화 현실화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성격상 민족적 정서가 개입되기 쉬운 영토와 역사 갈등일수록 보편적 기준과 가치에 의거한 국제사회의 바른 인식과 지지가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와 합리적 논리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학문 풍토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료와 논리를 실증적이고 설득력 있게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 선결 과제다.¹⁾ 또한 국제갈등-협력 분야의 세계 학계

1) 독도 관련 실증적 분석의 기존연구로는 배진수(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및 배진수,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 : 미국·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배진수 외(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에서 국가 간 갈등 이슈를 굳이 계량화하려는 궁극적 이유는 안보 및 위기상황에 대한 평가가 주로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최대한 객관화시킴으로써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갭(gap), 혹은 서로 상이한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 상호 간의 갭(gap)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²⁾

한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60여 년간 발표된 독도 관련 주제 연구논문과 단행본은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을 망라하여 모두 1천 여 편(권)을 초과하며, 석·박사 학위논문도 100여 편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학계에서도 우리 영유논리 보강과 새로운 논리 개발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독도연구 경향이 각 학문영역별로 진행된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연구에 큰 비중을 두었다면, 향후 독도연구의 방향은 (1) ‘인접 학문영역 간의 학제적(學際的) 접근’과 (2) ‘실증적·경험적 접근’ 등 2가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기존 영유논리 보강은 물론 새로운 영유논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의 독도연구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실증적·경험적 접근’을 통한 연구기반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세계 학계의 국제갈등·협력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효용성이 높게 평가되어 온 ‘이벤트데이터(Event-Data) 분석기법’에 의거 한일 간 독도 이벤트데이터 구축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술적으로 기존 독도연구 분야의 역사적, 국제법적 연구성과에 추가하여 ‘실증적·경험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

2) Bent Sorensen(1985), "On the Quantification of Security," *Cooperation and Conflict*, XX, p. 195.

하여 영유논리 보강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패턴 분석에 의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현안 발생시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독도 위기관리의 조기경보체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과 활용례

1)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

‘이벤트(Event)’는 ‘어느 특정 시점에 한 행위자가 다른 상대자에게 취한 모종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벤트데이터’란 ‘각 이벤트를 일시-행위자-상대자-이슈-행위유형-행위목적 등 특정 사항별로 범주화된 분류기준에 의거 코딩(coding)하여 숫자화 시킨 사건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이벤트데이터 분석’이란 국가 간 일련의 갈등-협력 상호작용을 이슈별, 행위유형별 등 협력-갈등의 긴장 수위를 척도화함으로써, 시계열적 또는 관련 상황변수별 패턴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이슈 발생시 가능한 전개 양상을 예측하고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분석기법을 말한다.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차원에서 미국 등 각국에서 활용되어 온 이벤트데이터 사례로는,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 CREON(Comparative Research on the Events of Nations), BCOW(Behavioral Correlates of War)를 비롯하여, 최근에 보다 발전된 형태의 IDEA(Integrated Data for Events Analysis), KEDS(Kansas Event Data System),

PANDA(Protocol for the Analysis of Nonviolent Direct Action), CAMEO(Conflict and Management Event Observations)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의 이벤트데이터 분석 사례로는, 주로 ‘남북한 갈등-협력 관계’ 분야에서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몇 차례 시도가 있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시도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독도연구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벤트데이터 활용례 : 남북한 긴장기류 측정

이벤트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기준과 방법은 해당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한일 간 독도영유권 관련한 이벤트데이터 역시 국내외 처음으로 시도되는 작업으로써 양 국가 간의 ‘독도’ 이슈라는 한정된 이벤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간 모든 영역의 이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이벤트데이터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비록 이벤트데이터의 성격은 다를 수 있겠으나,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벤트데이터의 활용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의 국내 유일 활용례인 남북한 간 관계기류 측정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³⁾

국가관계를 대외행위에 의거 측정한 데이터로는 WEIS, CREON, PRINCE, IBA, BCOW, COPDAB 등이 존재하는데,⁴⁾ 이들 중 COPDAB

3) 남북한 관계 이벤트데이터의 활용례는 「한반도 관계기류 측정 : Event-Data」 및 「북·미일수교의 남북한 관계 파급효과 예측 : Event-Data」, 배진수(2006), 『북한·통일·남북관계 예측 : 측정지표 및 예측평가』, 지샘, 37~47·60~73쪽 참조.

4)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Charles F. Hermann and Gregory Peacock (1987), “The Evolution and Future of Theoretical Research in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in Charles F. Hermann, Charles Kegley, and James Rosenau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Boston : Allen &

DATA는 미국 북캐롤리나 대학 에드워드 아자(Edward Azar)교수를 중심으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1948~1978년 동안 각국 간 관계를 측정한 데이터로서 국가관계를 가장 우호적 관계인 통일 내지 통합에서부터 가장 갈등적 관계인 전쟁에 이르는 15가지의 순차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가 간 갈등-협력관계를 분석하는 데 비교적 많이 적용되어 온 방법이기도 하다.⁵⁾ 즉, COPDAB의 대외행위 측정기준은 중립관계인 '8'을 기준으로 협력관계(1~7)와 갈등관계(9~15)로 나누어진다. 이를테면, '협력관계(1~7)'의 경우 가장 협력적인 '(1) 통일·통합'으로부터, (2) 공동시장·군사동맹, (3) 군사협정 체결, (4) 경제협정 체결, (5) 교류협력 외교관계 개설, (6) 상대국 정책에 대한 공식적 지지, (7) 상대국 정책에 대한 소극적 구두 지지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갈등관계(9~15)'의 경우는 갈등 정도가 가장 약한 것부터 순서대로 (9) 상대국 정책에 대한 소극적 구두 반대, (10) 적대감·보복 경고·위협 표명, (11) 대사 소환·군대 이동, (12) 외교관계 단절, (13) 소규모 군사시위·봉쇄, (14) 제한적 전투행위, (15) 전면전쟁·대규모 침공 등으로 구분되어 측정된다. 비록 COPDAB 이벤트데이터의 측정기준에 따르면 협조행위와 갈등행위가 그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연구대상의 성격에 따라서는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세부적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단순히 '협조행위'와 '갈등행위' 등 이분하여 측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벤트데이터 접근법은 협조-갈등의 차원에서 해당기간 동안에 나타난 국

Unwin), pp.13~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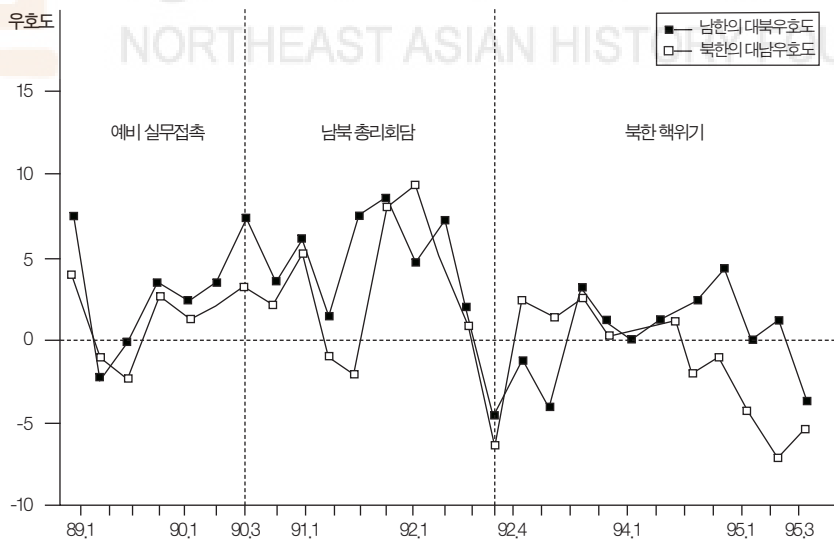
- 5) COPDAB의 측정기준과 전반적 소개에 대해서는, Edward Azar(March 1980), "The Conflict and Peace Data (COPDAB) Proje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4, No.1, pp.143~152; Edward Azar, *The Codebook of the Conflict and Peace Data Bank (COPDAB)*, ICPSR (Inter-University Consortium of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참조.

가 간 모든 협조행위와 갈등행위를 총망라하여, 각 기간별로 어느 특정 국가 관계가 어느 정도 화해기류이고 긴장기류인지 그 추이를 나타내 준다. 측정 단위기간으로는 월별 혹은 연별 측정이 보편적이나 이 경우, 연별로 할 경우 단기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 월별로 할 경우에는 월별 행위가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벤트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측정되어 분석하기도 한다.

1989~1995년 동안 3개월씩을 측정단위로 하여 남북한 관계의 이벤트데이터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대북 우호도와 북한의 대남 우호도 변화 패턴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에 상호 비슷한 수준의 우호도로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남 우호적(또는 비우호적)행위는 남한의 대북 우호적(또는 비우호적)

<그림 1-1> Event-Data에 의한 남북한 관계기류(1989~1995)



출처: 배진수(2006), 『북한·통일·남북관계 예측: 측정지표 및 예측평가』, 지샘, 46쪽.

행위를 초래하고, 거꾸로 남한의 대북 우호적(또는 비우호적)행위는 북한의 대남 우호적(또는 비우호적)행위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간 상호 작용-반작용 양상이 가장 현저히 나타난 기간은 두 우호도 곡선이 가장 근접했던 1989년 1월~1991년 6월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간은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예비 실무접촉 기간과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중이던 전반부 총리회담 기간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유독 1990년 3분기 만은 남한의 대북 우호도에 비해 북한의 대남 우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의 우호도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1990년 제3분기 동안의 대표적 사례를 들면, 1990년 7월 20일 남한의 민족대교류기간선포에 따른 남북자유왕래 제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 그리고 1990년 7월 24일 ‘정치범 인권논의’를 위한 남한의 남북법무장관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 등을 들 수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 기간에 한·러(당시 ‘소련’) 수교(1990.9.30)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이 기간 남북 우호도가 상대적으로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한·러 수교를 둘러싼 남북한의 상반된 대외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한으로서는 한·러 수교로 인한 대북한 자극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대북 우호행위를 상대적으로 증가시켰을 가능성,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한·러 수교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여 남한의 대북 우호행위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러 수교 직후인 1990년 제4분기(10~12월) 동안에는 남북한 기류가 급격히 하강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남북한 기류의 하강현상은 한·중 수교(1992.8.24) 직후인 1992년 제4분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남북 우호도의 수준에 있어서는 1992년 후반 이전까지는 대체로 ‘+’ 우호도를 보여 화해기류로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989년 2월~1990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

한 예비회담 및 실무접촉, 이어 1990년 9월~1992년 9월까지 약 2년간의 남북 총리회담과 그로 인한 「남북화해와 불가침·교류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의 마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후반부터는 남북한 기류가 계속 긴장국면으로 하강함을 보여주는데, 1992년 9월 제8차 남북총리회담을 끝으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남북교착상태는 북한의 핵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두 국가만의 관계로 볼 때, 1991년 후반과 1992년 전반에 걸쳐 한때 통일이라는 협조관계의 최고점으로 급속히 나아가는 듯했으나 1992년 후반부터는 통일의 최고점으로부터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1994년 북한핵 문제를 계기로 남한의 대북기류에 비해 북한의 대남기류가 더 큰 폭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음을 이벤트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간 독도 이슈만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데이터의 경우 측정기준과 분석틀 등은 남북한관계의 이벤트데이터와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는 독도 이벤트데이터 구축에 관하여 이벤트를 어떻게 추출하고 추출된 독도 이벤트를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코딩(coding)하여 측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될 것이다.

Ⅱ. 독도 이벤트데이터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독도 이벤트데이터 추출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란 “1952~2010년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간에 발생한 독도영유권 관련 구두, 서면, 물리적 행위 등 일련의 이벤트들을 범주화된 측정 기준에 의거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이벤트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들을 추출할 자료 출처와 추출할 이벤트의 범위 내지 요건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의 시기적 범위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독도 포함 평화선 선포 이래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독도 이벤트 관련 본격적인 언론매체 자료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1952년 1월 18일의 평화선 선포라고 볼 수 있고,⁶⁾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자료 정리가 완료된 최근까지의 연도별 추이 파악을 위한 편의상 목적에 따른 것이다.

독도 관련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에 의거 추출하고자 했으며 대부분의 이벤트데이터 경우처럼 신문 기사자료에 우선적으로 의존했는데,

6)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의거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하였으며 ‘평화선’으로도 일컬어지기도 한다.

독도 관련 언론매체 기사들을 추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출처들은 다음과 같다.

1) 독도 이벤트 관련 사이트 현황

최근 2007년을 전후하여 동북아역사재단 등 ‘독도’ 관련 전문기관 출범으로 ‘독도’ 기사 스크랩 서비스가 본격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략 2007년 이후부터는 이들 독도 전문기관의 언론기사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정리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매체를 전반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종합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되, 다만 이 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한 1960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했다. 부득이 1960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 언론매체 기사 DB 등을 활용하고, 언론 기사 자료의 미비한 부분들은 가능한 대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 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된 외교문서 자료들, 일본 국회회의록 자료, 기존 연구결과 등을 부분적으로 참조하는 식으로 보완하고자 했다.

(1)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⁷⁾의 ‘언론기사’ 사이트에는 2006년 9월 12일부터 ‘독도 및 동북아역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가 게시되었으며, 2006년 9월 12일~2010년

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6.5.19. 법률 제7955호) 제1조(목적)에 의하면, 2006년 9월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2월 31일 기간의 언론보도 기사는 총 1,194건으로 집계된다.⁸⁾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언론기사’ 사이트에는 2008년 6월 9일 이래 독도 관련 언론보도 기사가 게시되어 있으며, 2008년 6월 9일~2010년 12월 31일 기간의 언론보도 기사는 총 2,050건으로 집계된다.⁹⁾

(2)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의 ‘언론보도’ 사이트에는 2007년 3월 5일 이래 독도 관련 언론보도 기사가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원 독도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된 2007년 3월 5일~2010년 12월 31일 기간의 독도 관련 언론기사는 총 2,976건으로 집계된다.¹⁰⁾

(3)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 사이트(KINDS)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99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내 최대 뉴스 전문검색 사이트로서, 모든 매체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어를 and, or, not 등으로 조합해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고 검색어 입력 후 신문명이나 발행일, 주제별, 글자수에 따른 검색도 가능하다. 특히 서울종합일간지의 경우 기고자명, 고정물명, 면종, 기사 유형 검색 등 세분화된 검색 기능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종합일간지뿐 아

8)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참조. 알림마당→재단활동→언론기사(<http://www.historyfoundation.or.kr>).

9)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이슈&뉴스→언론기사(<http://www.dokdohistory.com>).

10)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뉴스→언론보도(<http://www.dokdo.re.kr>).

나라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각종 전문지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1960~1989년 신문의 이미지 파일 DB,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고신문 검색 기능까지 추가해 전 분야의 미디어 및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서울지역 종합일간지 기사를 비롯, 25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6개 경제일간신문, 3개 TV방송뉴스, 9개의 인터넷신문, 2개 영자일간지, 5개 지역주간신문, 고신문 및 1990년대 이전 신문 등을 포함한 1,200만 건이라는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대해서는 검색 기능이 가능하다. 1990년대 이전 기사에 대해서는 본문 및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하지만,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날짜별 신문 지면(PDF 파일)을 볼 수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종합검색 사이트에는 1990년 1월 1일 이래 총 64개 매체의 언론 기사들이 DB로 구축되어 있으며, 199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전국종합일간지의 독도 관련 언론기사는 총 8,546건으로 집계된다.¹¹⁾

(4) 기타 언론매체 기사DB

조선일보는 1920년 창간부터 현재까지 290만 여건의 기사에 대해 취재 기자, 기고자별, 기사유형별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다. 1990년 이후부터는 텍스트(무료) 및 PDF(유료) 서비스 모두 가능하지만, 1945~1989년 기간은 PDF(유료) 서비스만 가능하고 그 이전인 1920~1940년 기간은 PDF 대신 기사원문서비스를 통해 역시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1920년~2010년 12월 31일 기간의 ‘독도’ 관련 제목의 기사는 총 2,107건으로 집계된다.¹²⁾ 이 외에도 중앙일보, 동

1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종합검색 사이트 참조 (<http://www.kinds.or.kr>).

12) 조선일보 기사DB 웹사이트 참조. 조선닷컴→DB조선→PDF·기사DB (<http://>

아일보, 네이버 등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상의 독도 관련 언론기사 사이트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독도 관련 언론기사 사이트 현황

Event 검색 사이트	연도	(독도 관련) 언론기사 제공 사이트			
		KINDS (언론재단)	조선DB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조선DB	1950년대	×			
	1960년대	경향 동아 서울 한국	PDF (유료)		
	1970년대	-검색 불가			
	1980년대	-날짜별 열람			
KINDS (언론재단)	1990년대	모든 매체 -검색 가능	텍스트(무료)/ PDF(유료)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독도연 해양연	2009년			2007.3.5~	2008.6.9~
	2010년				
	2011년				

언론 기사 자료의 미비한 부분들은 필요시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 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된 외교문서 자료들에 의거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¹³⁾ 한국 외교통상부는 1994년부터 일반국민에게 외교활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외교문서를 공개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공개제도는 1993년 7월 28일 외무부령으로 제정 공포된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를 공개 대상

srchdb1.chosun.com/pdf/i_service).

- 13) 이를테면 1952~1976년 기간의 한일 간 독도 관련 78건의 외교문서들에 대해서는 『독도관계자료집(1) : 왕복외교문서(1952~76)』(외무부, 197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으로 하고 있다. 심의절차 과정을 거친 외교문서는 31년째가 되는 해 1월 중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공개되고 있으며, 그간 외교통상부는 1994년 1월에 1948~1959년도 외교문서를 1차 공개한 이후 2011년 2월 21일까지 18차에 걸쳐 총 14,300여 권(176만 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된다.¹⁴⁾

2) 독도 이벤트의 범위

이벤트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도 이슈의 성격과 연구목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지금까지 독도 이슈를 둘러싼 한일 간 행위를 감안해 본다면 어느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상대국의 '항의'가 뒤따르고, 이 항의에 대해서 당초 행위국은 다시 '자국 행위의 정당성 주장'과 '상대국 항의를 일축'하는 식으로 일련의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독도 이벤트에는 주로 어느 특정 사안의 '최초 행위'를 위주로 정리하기로 하며 경우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시 '상대국의 항의 행위'까지 포함하되 '상대국의 항의'에 대한 최초 행위국의 '재반론' 등 반복되는 '재항의' 행위들은 일단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양 국가의 최초 행위 및 반응만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례상 명분 축적용으로 단순히 행해지는 재반박 행위는 생략하기로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국회 내에서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단순 반복하는 차원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생략하기로 한다.

특정한 사안과 관련 없이 일본이 독도영유권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는 구상서는 현재 외교문서 공개제도 절차에 의거 공개된 기간에

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68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제11-31호), 2011.2.21.

한해서는 가능한 한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료과 악의 한계성으로 인해 본 이벤트데이터에는 일일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 1977년에 한국 외교부에서 편찬한 『독도관계자료집(I)』에는 1952~1976년 기간의 한국 측 외교문서 36건과 일본 측 외교문서 42건 등 총 78건의 외교문서가 포함되어 있다.¹⁵⁾ 1987년에 일본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일본 정부 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52~1987년의 약 25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외교문서 형태로 항의’한 것은 총 53회이며, 1978~1987년의 10년 동안 외상 회담이나 외상 레벨에서의 ‘구두 항의’ 행위는 15회에 달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¹⁶⁾ 상기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외교문서’ 형태로든 ‘구두 항의’ 형태로든 대략 연평균 3회 정도 ‘항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등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매년 보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일본의 도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정부에 대하여 유감 표명 등 모종의 항의 의사를 표명하였을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항의’ 역시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여 코딩하기로 한다.

‘일본의 영해침범’ 경우 매 사건 발생시 일반 언론에 소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이벤트를 추출하여 포함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문서가 공개된 기간 등 자료과악이 가능한 범

15) 『독도관계자료집(I) : 왕복외교문서(1952~76)』(외무부, 1977).

16) 일본국회의사록 중의원농림수산위원회 4호(1987년 8월 19일),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Ⅱ)』, 762쪽.

위 내에서 최대한 포함하기로 한다. 일본 어선, 순시선 등의 독도 근해 출현은 대체로 발생빈도가 많을 수도 있는 편인데 비해 영해를 직접 침범한 경우는 그리 빈번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건발생 확인이 가능한 대로 ‘이벤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비록 자료파악 한계로 이벤트들이 모두 반영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952년 한국의 독도 포함 평화선 선포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순시는 1953년에 16회, 1954년 14회, 1955년 5회, 1956년 2회, 1957년과 1958년 및 1959년 각 3회씩 달하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상륙은 1954년 6월까지만 가능했는데 모두 9회로 파악된다.¹⁷⁾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7년 이래 1996년까지 일본 순시선과 항공기 및 어선이 독도근해에 출현한 경우는 총 465회에 걸쳐 발생한 반면 영해를 직접 침범한 경우는 23회로 집계된다.¹⁸⁾

실제로 행위가 실시된 사건을 기준으로 독도 이벤트데이터에 포함되지만, 행정 부처의 ‘○○○계획 발표’ 자체 만으로도 상대국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었던 경우에는 ‘행동 실시’ 사건 뿐만 아니라 ‘계획 발표’ 사건 역시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리고 영유권과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중재재판소 판례 등에 따르면, 영토에 관한 실효적인 통제 근거는 사인(私人)인 개인의 행위가 아닌 공공기관(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한 개인)의 행위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행위 주체로서 일반 민간인의 행위는 독도 이벤트데이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우익들의 독도 상륙 시도’라든지 ‘일본 언론사

17) 조윤수(2011), 「한국의 평화선 선포와 일본의 독도정책 : 일본정부의 1952~60년 국제사법재판소 방식의 확립과정」, 『동북아역사문제』 2011년 9월호(통권 54호), 동북아역사재단, 25쪽 참고.

18) 합참작전본부(1996), 『독도의 역사적 고찰』, 34쪽 참고.

비행기의 독도 영공 침범' 또는 '한국 주민의 독도 거주' 등의 경우처럼 비록 일반 민간인의 행위일지라도 상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들은 제한적으로 포함시켜 코딩했다.

정부 주요 인사의 독도 방문 경우는 한국의 독도영유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 한해서 포함시키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직책으로서의 최초 독도 방문의 경우는 대체로 포함될 것이다. 해당 직책의 최초 방문이 아닐 경우에는 독도 방문의 전·후 시점에 발생한 일본의 독도영유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에서 비롯된 경우는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상의 자료 출처와 이벤트의 범위(요건) 등에 의거 1952~2010년 기간을 대상으로 538건의 한일 간 독도 이벤트가 추출되었다. 물론 이벤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접근 가능한 자료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추출될 이벤트의 전체 건수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여라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의거 이벤트가 추출되고 코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독도 이벤트데이터 코딩(Coding)

이벤트데이터에 포함될 이벤트의 범위가 결정되면, 각 이벤트별로 어떠한 사항들을 측정하고 싶은지의 코딩 항목, 즉 '변수'(Variable) 목록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각 항목 즉 변수별로 몇 개의 카테고리 구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것인지 등 코딩의 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기존 이벤트 데이터뱅크를 보면, 10개 미만의 변수 리스트만 포함하는 이벤트데이터 사례부터 많게는 60여 개의 변수 리스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뱅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변수 목록의 범위와 수는 해당 이벤트데이터의 성격과 연구자의 연구목적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된다. 본 이벤트데이터의 성격상 대부분의 독도 관련 이벤트들이 주로 언론 기사를 통해 파악되기 때문에 변수 목록도 기본적으로 언론 기사의 기본요건인 ‘육하원칙(六何原則, five W's and one H)’을 준용하고자 한다 : (1) 언제(when), (2) 어디서(where), (3) 누가(who), (4) 무엇을(what), (5) 어떻게(how), (6) 왜(why).¹⁹⁾

‘육하원칙’에 따른 변수 리스트

육하원칙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변수목록	일자 (Date)	국가 (Nation)	행위자 (Actor)	이슈 (Issue)	행위유형 (Type)	행위목적 (Objective)

어떤 항목(변수)에 대하여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코딩할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즉, ‘가능한 모든 유형이 포괄적으로 망라(exhaustive)’ 되면서 동시에 ‘각 유형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서(exclusive)’ 어떠한 경우에도 각 이벤트가 해당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어느 한 가지 카테고리에만 해당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설정된 각 변수별로 세부적인 분류기준과 코딩원칙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19) 통상적인 순서는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로 주로 일컬어진다.

1) When(언제) : ‘일자(Date)’

‘육하원칙’ 중 ‘언제(when)’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는 ‘일자(Date)’라는 변수로 명명하며 기본적으로 ‘년·월·일(○○○○○○○○)’을 포함하는 여덟 자리 숫자로 입력한다. 해당 이벤트의 년·월·일에 관한 정보가 모두 파악되지 못할 경우 파악되지 못한 ‘월’ 또는 ‘일’ 부분에는 ‘00’ 등으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의 일자가 2000년 4월까지지만 파악되고 몇일인지는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 ‘20000400’으로 입력하고, 만약 2005년의 연도까지만 파악되고 몇월 몇일인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50000’ 식으로 입력한다.

‘연도별’ 추이 분석 이외에, 필요시 기간별 추이 분석을 위해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등으로 코딩 변환(recoding)하기도 한다. ‘10년 단위’ 기간은 본 이벤트데이터의 대상 기간이 1952~2010년까지임을 감안하여, 편의상 1950년대(1952~1960년), 1960년대(1961~1970년), 1970년대(1971~1980년), 1980년대(1981~1990년), 1990년대(1991~2000년), 2000년대(2001~2010년) 등 여섯 구간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한편 ‘5년 단위’ 기간은 상기의 각 10년 단위별 구간에서 5년씩 전반부와 후반부로 반분하기로 한다. 따라서 1961~1965년 기간은 ‘1960년대 전반’으로 그리고 1966~1970년 기간은 ‘1960년대 후반’ 등으로 각각 구분되는 식이다.²⁰⁾

20)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단위’ 또는 ‘5년 단위’ 기간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1970년 시점이 본 이벤트데이터의 구분처럼 ‘1960년대(1961~1970년)’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1970~1979년)’로 구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본 이벤트데이터의 경우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등의 이벤트 수가 불과 2~3건씩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간별 추이를 비교하는 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어떤 이벤트의 해당 일자를 입력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법률, 조례, 규칙 등의 경우 안전 상징일, 제정일, 공포일 등 일련의 여러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행위가 의도하는 목적이 최초로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이벤트를 코딩하며 일련의 수반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벤트로 중복 기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통과’된 안전일 경우는 ‘조례 제정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입력한다. 이후 후속적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행위들인 ‘입법예고’나 ‘공포’ 등 일자에 대해서는 제정일과 다를 경우에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또한 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생하는 ‘시행령 제정’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벤트로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안전 ‘상정일’ 또는 법안 ‘제출’ 역시 중복 입력하지 않되, 2005년 2월 23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안 상정” 경우처럼 ‘상정’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인 한국에 미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정일’도 별도의 이벤트로 입력한다. 또한 부결된 안전의 경우에도 안전 상징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의 항의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부득이 ‘상정일’을 기준으로 이벤트에 포함시켜 코딩 입력한다.

시설물 설치의 경우, 며칠 정도의 단기간 공사일 때는 언론에서도 주로 착공 아니면 준공 가운데 한 가지만 보도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어느 시점이든 파악 가능한대로 한 가지만 입력하기로 하되, 가능하면 ‘준공일’을 우선으로 하고 정확한 ‘준공일’ 파악이 어려우면 차선으로 ‘착수일’을 기준으로 코딩하기로 한다. 그러나 독도 접안시설 공사처럼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이벤트일 경우에는 착공시 뿐만 아니라 완공시 모두 상대국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착공일’과 ‘완공일’ 모두 파악 가능한대로 각

각 별도의 이벤트로 코딩하기로 한다. 심지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 계획 발표만으로도 양국 간 긴장이 극심하게 고조되는 사례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착공일’과 ‘완공일’ 뿐만 아니라 ‘착수 계획’ 자체도 별도의 이벤트로 코딩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테면 지난 1996~1997년 독도 접안시설 공사 당시 준공일자를 앞당기겠다는 한국의 발표 자체만으로도 일본이 심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2007년에 “독도개발 4대 핵심사업(체험장마을, 현장관리사무소, 종합해양과학기지, 방파제)의 연내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상대국에게 미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비록 시설물과 관련된 ‘계획 발표’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벤트로 코딩하기로 한다.

반면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유형(有形)의 이벤트’와 달리, 해양조사 등과 같은 일종의 ‘무형(無形)의 이벤트’ 경우는 시설물 설치처럼 똑같이 이벤트가 수 일간 또는 수 개월간 지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벤트의 성격상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무형의 이벤트’는 행위가 일단 완료된 이후에는 원상회복 방안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완료일’ 보다는 ‘착수일’ 기준으로 코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착수일’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으로 ‘완료일’을 적용하여 코딩하기로 한다. 상당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이벤트일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유형의 이벤트이든 해양조사와 같은 무형의 이벤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는 중간 진행상황 보도 등은 가능한 생략하기로 하고 중복 입력하지 않기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실제 사건 발생 일자의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부처 발표 일자 또는 언론 보도 일자 등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실제 사건 발생 일자는 물론 언론 보도 일자까지도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행위에 대한 상대국의 항의 행위 일자가 파악될 경우 이 시점으로 가늠하기로 하고,

상대국의 항의 일자마저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연월일 중 파악 불가능한 부분은 '19950000' 식으로 코딩 처리하기로 한다.

2) Where(어디서) : '국가(Nation)'

‘육하원칙’ 중 ‘어디서(Where)’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는 ‘국가(Nation)’라는 변수로 명명하며,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2가지 유형이 가능하고 각각 숫자 ‘1’(한국)과 ‘2’(일본)로 입력된다. 이 변수는 향후 분석 시 한국과 일본의 독도 이벤트 발생 현황과 특징을 서로 비교 분석할 경우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사례(Case)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3) Who(누가) : '행위자(Actor)'

‘육하원칙’ 중 ‘누가(Who)’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는 ‘행위자(Actor)’라는 변수로 명명하며, 행위의 주체가 ‘행정부’인지 ‘국회(의회)’인지의 구분과 병행하여 ‘지방’인지 ‘중앙’인지의 여부에 의거하여 다음 7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 (1) 민간(공공기관 포함), (2) 지방의회, (3) 지방정부, (4) 국회, (5) 중앙정부, (6) 국무총리실(총리·수상), (7) 청와대(대통령).

이를테면 한국 ‘경상북도 의회’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행위는 ‘2’(지방의회)로 분류되고, 한국 ‘경상북도 도지사’의 행위는 ‘3’(지방정부)으로 그리고 한국과 일본 외교부 등 행정부처의 행위는 ‘5’(중앙정부) 등으로 분류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발언은 공식적인 성명, 담화 또는 회의 주재나 기자 질의에 대한 언급일 경우에만 포함하며, 일반 단체 강연 등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벤트에 포

함하지 않기로 한다. 본 이벤트데이터의 범위에 일반 민간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우익들의 독도 상륙 시도’라든지 ‘일본 언론사 비행기의 독도 영공 침범’ 또는 ‘한국 주민의 독도 거주(주민등록 전입 등)’나 ‘한국통신(KT)의 독도 전화 개통’ 경우들은 비록 민간인 또는 공공기관의 행위일지라도 상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별도의 유형인 ‘1’(민간 또는 공공기관)로 코딩하기로 한다. 일본 배의 독도 영해 침범과 관련하여 ‘순시선’인지 ‘민간 어선’인지의 여부를 확인 가능한대로 구분하고, 만약 자료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일본선’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어선’일 경우는 ‘1’로 코딩하고 나머지 경우는 ‘3’으로 코딩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그 행위 자체가 정부의 공식적 허가 등 절차에 따른 것이거나 또는 그 행위로 인해 상대국(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 등 반응을 초래한 경우는 이벤트로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5일에 한국해양연구원이 독도주변 해역의 지반 안정성 분석을 위해 5월 10일까지 일정으로 독도주변 해역의 지질특성 연구조사 실시계획을 밝히자, 당시 일본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외무성 부상이 이에 반발하여 4월 16일에 주일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지질조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항의한 사례가 있다.²¹⁾ 이러한 경우 한국해양연구원의 행위는 포함시키기로 한다.

4) What(무엇) : ‘이슈(Issue)’

‘육하원칙’ 중 ‘무엇(what)’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는 ‘이슈(Issue)’라는 변수로 포함시켰다. 한국과 일본 간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21) 《세계일보》(2010.4.17).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관련된 이슈 유형을 추출해 보았다. 먼저 독도 관련 언론 기사를 통해 추출된 이벤트들의 독도 관련 ‘주제어’(key word)들을 모두 열거해 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여 개로 파악되는데, 각 주제어별로 전체 해당 기간 중 빈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는 다른 유형과 통합하는 식으로 하여 편의상 대략 23개의 ‘이슈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표 2-2〉 독도 이슈유형과 주제어 분류

이슈 유형	해당 주제어 (Key Word)
교과서	교과서, 교육
방위백서	방위백서(국방백서)
외교청서	외교청서
독도우표	독도우표
등대(기상)	등대, 기상레이더, 기상장비(뷰이)
헬기장	헬기장, 헬리포트
국립(지질)공원	국립공원, 지질공원(유네스코등재), 천연보호구역
통신·발전	통신시설, 발전
해양조사	과학(해양, 지질)조사(해양과학기지), 해저지명
유인화(주민)	주민거주, 호적, 어민(주민)숙소, 선가장, 독도리신설, 우편번호부여, 우체통, 담수시설, 사업자등록증, 명예주민증, 어업활동, 독도관리(사무소), 리프트, 국기게양대, 관리파견, 기념비(독도조난어민위령비)
독도방문(입도)	독도방문(입도), 독도운항, 점안시설, 방파제
영토표식(상륙)	영토표식, 상륙시도
영해	영해, EEZ, 평화선
영공	영공,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경찰주둔	경찰주둔, 경비대
군사훈련	군사훈련, 방어계획, 레이더
ICJ회부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회부) 제의
홍보물(홍피)	홍보책자(기타 인쇄물), 홈페이지, 지도, 홍보기념관, 해도, 독도우표기(독도함 명명)
영유주장(망언)	영유논리(정부견해교환), 영유주장(망언), 영토권결의
개발(보전)	개발(보전)계획, 공시지가, 지적등록, 광업(지적)권, 산림생태계 복원
공공행정(서비스)	선거공약, 부재자투표, 국가자격시험실시, 원격의료체계, 생물유전자등록
조직(기구)	조직강화(개편), 기구(기관)설치,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독도(죽도)의 날	죽도의 날, 독도의 달(날)

5) How(어떻게) : ‘행위유형(Action Type)’

‘육하원칙’ 중 ‘어떻게(how)’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는 ‘행위유형(Action Type)’이라는 변수로 명명하며 한국 또는 일본에서 독도 이슈가 제기되는 행위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일본이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억지 주장 내지 도발을 하는 방식이 일본 교과서나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의 ‘발간물’ 형식을 통해서 한다면, 한국에서 관련 ‘법령’ 제정 또는 ‘시설물’ 설치 등의 방식을 통해서 독도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이슈가 표출되어 온 방식으로는 대략 기본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 행위에서 무력행사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음 8가지의 ‘행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 구두 또는 서면(구상서), (2) 입법(정당) 기관의 결의·고시 등 행위, (3) 법규 또는 행정 조치, (4) 발간물 등 홍보물, (5) 시설물, (6) 무력시위 등 행동, (7) 무력사용, (8) 기타 학술·조사·문화·행사 등.

국가 간 외교행위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구두’ 행위와 ‘서면’ 행위를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더욱 유용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외교적 행위가 ‘구두’ 및 ‘서면’이 동시에 병행될 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매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서면’ 행위의 여부까지 일일이 소개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본 이벤트데이터에서는 ‘구두 또는 서면 행위’로 통칭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 국회에서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본 정부 측이 “일본은 구두로 항의를 하는 동시에 구상서(서면)를 통해 항의하여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한국 측이 단순히 수령을 확인하는 구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에 반발하는 구상서를 낼 때도 있었고, 아무 반응 없이 기록으로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²²⁾ 또한 실제 법규로 제

정되거나 행정 조치로 실시되지는 않은 단계이지만 정부의 ‘정책 표명’ 행위 유형 역시 ‘1’(구두 또는 서면)로 코딩하기로 한다. 앞서 이벤트의 포함 범위와 관련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벤트가 실제로 행위가 실시된 사건을 기준으로 포함되지만, 행정 부처의 ‘○○○ 계획 발표’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었던 경우에는 ‘행동 실시’ 사건뿐만 아니라 ‘계획 발표’ 사건 역시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계획 발표’의 행위 유형과 ‘행동 실시’의 행위 유형은 각각 다르게 코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테면, 1996년 2월 한국 정부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 계획 발표’ 뿐만 아니라 1996년 4월 28일의 실제 ‘독도 접안시설 공사 착공’ 역시 각각 별도의 이벤트로 포함되는데, ‘계획 발표’는 아직까지 행정·법규 조치로 확정되기 이전 단계이므로 ‘3’(행정·법규 조치)과는 구분하여 ‘1’(구두, 서면, 정책방침 표명, 계획발표)로 코딩하기로 한다. 다만 계획 수립 중에서 ‘방위계획 수립’은 여타 행정 분야의 ‘계획 발표’와는 달리 실제 무력행사로 이어질 경우 양 국가 간 심대한 파급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7’(무력행사)의 전 단계인 ‘6’(무력시위) 단계로 코딩한다.

앞서 ‘일자’의 코딩 기준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법규) 조치 등의 행위 유형은 ‘법규나 조례 제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후속적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입법예고’나 ‘공포’ 및 ‘시행령 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벤트로서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정 여부와 일자 등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elis.go.kr>)’ 또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http://contents.archives.go.kr>)’ 등을 참조한다.

22) 일본국회의사록 중의원의무위원회 12호(1977년 4월 20일),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Ⅱ)』, 111쪽.

‘시설물의 설치’는 특히 독도 현지에서의 시설물 설치를 의미하며, 독도 이외 지역의 독도 관련 시설물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울릉도에서의 ‘독도박물관’ 설치라든지 국회 또는 정부청사에 설치된 실시간 독도 영상 모니터 등은 ‘시설물 설치’의 행위 유형으로 코딩하지 않고 그 대신 ‘홍보’ 등의 행위 유형으로 코딩하기로 한다.

6) Why(왜) : ‘행위목적’

‘육하원칙’ 중 ‘왜(why)’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는 ‘행위목적’이라는 변수로 명명된다. 독도 관련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대국 행위에 대한 ‘항의(대응)’ 차원인지 여부로 구분한 다음, 선제적 행위일 경우에는 이미 영토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인지 아니면 ‘일본의 도발’ 행위인지로 다시 구분하여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1) 일본도발, (2) 한국조치, (3) 항의(대응).²³⁾

즉 일본의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면 ‘1’(일본도발), 한국의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면 ‘2’(한국조치), 그리고 한국 또는 일본의 선제적 행위에 대한 상대국의 항의에 해당되면 ‘3’(항의) 등으로 코딩한다. 또한 ‘2’(한국조치)의 용어는 본문의 분석 부분에서는 ‘한국의 영토주권행사’ 또는 ‘한국의 관할권행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할 것이다.

이상 육하원칙에 따른 여섯 가지 변수 및 각 변수별 코딩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분류한 독도 이벤트데이터의 샘플 사례를 예시하면 <표 2-3>과 같다.

²³⁾ 이하 ‘항의(대응)’을 ‘항의’로 통칭하기로 함.

〈표 2-3〉 독도 이벤트의 코딩 구분 및 입력 예시

독도 이벤트 (예시)

사례1	2010.3.30 : 일본 문부성, 초등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독도기술 강화					
사례2	2010.3.30 : 한국 외교부, '일본 문부성 교과서 독도기술 강화' 엄중 항의					
사례3	2011.2.22 :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개최					

↓

독도 이벤트 육하원칙 코딩 (예시)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사례1	2010.3.30	일본	중앙정부	교과서	발간물	일본도발
사례2	2010.3.30	한국	중앙정부	교과서	구두(서면)	항의
사례3	2011.2.22	일본	지방정부	죽도의날	행사	일본도발

↓

독도 이벤트 변수별 코딩입력 (예시)

사례 (Case)	일자 (Date)	국가 (Nation)	행위자 (Actor)	이슈 (Issue)	행위유형 (Type)	행위목적 (Objective)
001	20100330	2	5	1	4	1
002	20100330	1	5	1	1	3
003	20110222	2	3	23	8	1

註: 코딩입력은 〈표 2-5〉 코드북(codebook)에 의거한 샘플입력임

7) 추가 변수 : 한국의 영토주권행사(관할권행사)

바로 앞서 언급한 ‘행위목적’ 변수의 3가지(일본도발, 한국조치, 항의) 분류 가운데 특히 ‘한국조치’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실효지배 관할권 행사의 영역을 구분하여 코딩했다.

국가 간 영유권분쟁 관련 국제판례, 행정부처의 일반적 업무 영역, 독도 관련 기사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사례들을 참고하여 〈표 2-4〉와 같이 일차적으로 대략 25개의 관할권 행사 세부 영역(이하 ‘관할권 소분류’로 통칭)으로 분류하고, 분석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 유사한 분야를 합쳐 다시 ‘관할권 중분류’ 또는 ‘관할권 대분류’ 등으로 편의상 구분해 보았다. 즉, 영토주권 행사의 ‘관할권 대분류’로는 ‘입법·사법권’ ‘국방·치안권’ ‘정치·외교권’ ‘공공·행정권’ 등 4개로

분류하고,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영토주권 행사의 '관할권 중분류'로는 이 가운데 '공공·행정권'을 다시 '인사·조직·보건·복지' '건설·교통·정보·통신' '해양·산림·산업·자원' '교육·문화·관광·홍보'로 구분하여 총 7개의 '관할권 중분

〈표 2-4〉 영토주권 행사의 '관할권'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기
입법·사법권	입법·사법	입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5)
		사법	—
국방·치안권	국방·치안	국방	한국해군, 독도부근 훈련구역 설정(1997)
		치안	경찰 독도경비 임무 인수(1956)
정치·외교권	정치·외교	정치·선거	대통령 부재자투표 실시(2007)
		외교	등대 설치 일본에 통고(1954)
공공·행정권	인사·조직·보건·복지	인사	독도 이장 임명식 개최(2007)
		고용·노동	독도에서 첫 국가공인자격시험 (정보기술자격·ITQ) 실시(2010)
		조직	대통령직속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설치(2005)
		보건	경찰병원, 독도 원격진료 운영 개통식(2009)
		복지	—
	건설·교통·정보·통신	건설	독도 접안시설 공사(1997)
		교통	울릉도-독도 정기여객선 조건부 면허 처음 승인(2010)
		정보·통신	독도 동도 일반전화 개통(1997)
		산림·농림	—
		해양·수산	독도주변 해양조사 실시(2000)
	해양·산림·산업·자원	기상	기상청, 독도 연안에 해양기상관측장비(뷰이) 설치(2010)
		산업·자원	산자부, '광업지적'에 독도 포함(2002)
		재정·세정	대구지방국세청, 독도 첫 사업자등록증 교부(2009)
	교육·문화·관광·홍보	교육	교과부, 독도교육 강화 교육과정 확정(2010)
		환경	대구환경청, 세계유전자은행에 독도 자생식물 유전자 등록(2010)
		문화	울릉군, '독도의 날' 선포(2008)
		관광	경북, 독도입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2009)
		홍보	경북경찰청, 독도방문 기념엽서 제작 현지 배포(2008)
		지리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지' 발간·배포(2009)

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상 영토주권 행사의 '관할권 소분류'와 '관할권 중분류' 및 '관할권 대분류' 유형 구분을 서로 비교하면 <표 2-4>와 같다.

'관할권행사'의 코딩 기준은 '관할권 행사가 행해진 시점에서의 목적과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독도경비대 청사'와 관련하여 1977년 독도경비대 청사가 독도에 처음으로 설치된 경우는 '치안'으로 분류되지만, 이후 1991년 '독도경비대 청사 증축'은 '건설' 관할권 행사로 분류된다. '독도 방문'의 경우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의 일환으로 독도를 방문한 사례는 '입법' 관할권 행사에 해당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광복절 즈음하여 거의 연례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행위라든지 2010년 4월 한국의 국회의장으로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행위 등은 '정치'로 분류하기로 한다.

국제사회 또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행위는 '외교' 관할권 행사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등대 설치' 자체는 '해양' 관할권으로 분류하지만,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들에게 등대 설치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는 '외교' 관할권 행사로 분류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선포 역시 해양 관할과 관련되지만 대외적인 수역 선포와 관련되는 경우는 '외교' 관할권으로 코딩한다. 같은 맥락으로, 2008년 독도 헬기장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정식 등록하여 지명 약어를 배정받은 행위 역시 '외교' 관할권 행사로 분류한다. 다만, 국제사회 또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행위이지만 '외교' 관할권 행사로 간주되기에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국내 관할 행정부처의 업무 영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테면, 2010년 3월 대구환경청에서 독도 자생식물 유전자를 미국의 세계유전자은행(NCBI)에 처음으로 등록했던 행위는 '외교' 관할권 행사로 간주되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은 관계로 소관 부처의 업무 영역인 '환경'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 독도 이벤트데이터 개관 : 코드북(Codebook)

이상에서 언급한 이벤트 추출의 자료 출처, 이벤트의 범위, 변수 설정, 각 변수별 코딩 기준과 원칙에 의거,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독도 포함 평화선 선포 이래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일단 538건의 독도 이벤트가 추출되었다. 독도 이벤트데이터의 변수목록과 코딩기준 등을 제시한 ‘코드북(Codebook)’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독도 이벤트데이터 코드북(Codebook)

구분	변수 (Variable)	코딩기준 (Value)	코딩기준 설명 (Value Label)
언제 (When)	일자 (Date)	00000000	년(0000)월(00)일(00)
어디서 (Where)	국가 (Nation)	1	한국
		2	일본
		1	민간
		2	지방의회
누가 (Who)	행위자 (Actor)	3	지방정부
		4	국회(의회)
		5	중앙정부
		6	국무총리(수상)
		7	대통령(청와대)
무엇을 (What)	이슈 (Issue)	1	교과서, 교육
		2	방위백서(국방백서)
		3	외교청서
		4	독도우표
		5	등대(기상)
		6	헬기장
		7	국립공원(지질공원)
		8	통신 · 발전
		9	해양조사 등
		10	유인화(주민)

구분	변수 (Variable)	코딩기준 (Value)	코딩기준 설명 (Value Label)
무엇을 (What)	이슈 (Issue)	11	독도방문(입도)
		12	영토표식(상륙)
		13	영해(EEZ, 평화선)
		14	영공(KADIZ)
		15	경찰주둔
		16	군사훈련
		17	ICJ회부
		18	홍보물(홍보페이지)
		19	영유주장(망언)
		20	개발(보전)
		21	공공행정(서비스)
		22	조직 · 기구
		23	독도(죽도)의 날
어떻게 (How)	행위유형 (Type)	1	구두 또는 서면
		2	결의 등(국회, 의회)
		3	행정 · 법규 조치
		4	발간물(홍보물 등)
		5	시설물 설치(철거)
		6	행동감행(무력시위)
		7	무력행사(충격퇴치 등)
		8	기타(행사, 조사 등)
왜 (Why)	행위목적 (Objective)	1	일본도발
		2	한국조치
		3	항의

Ⅲ. 독도 이벤트데이터 분석사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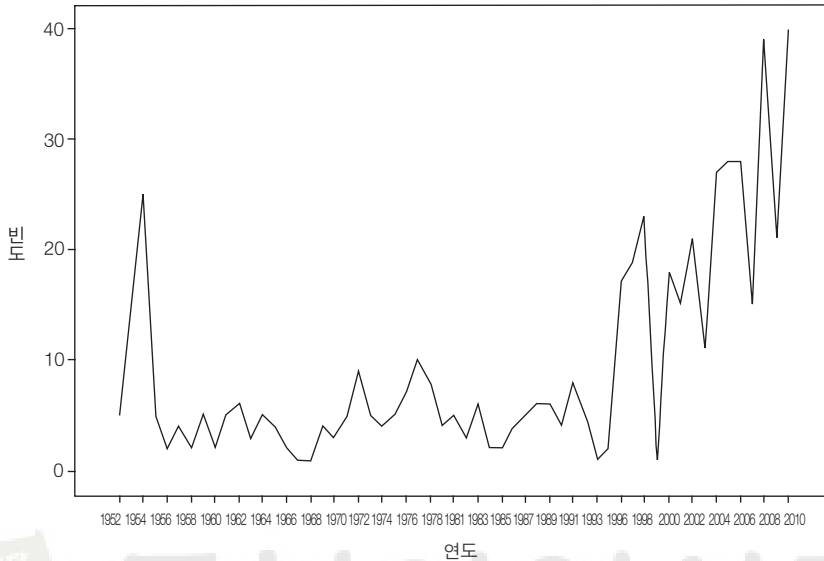
독도 이벤트데이터의 입력, 코딩, 분석 등 일련의 작업을 위해 사회과학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²⁴⁾가 활용되었으며, 이하에서는 연도별, 행위목적별, 행위자별, 행위유형별, 이슈별 독도 이벤트의 현황과 추이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에 의거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도별 독도 이벤트 현황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독도 포함 평화선 선포 이래 2010년 12월 31일까지 추출된 한일 간 독도 이벤트의 사례수는 대략 538건 정도로 집계된다. 한일 간 독도 이벤트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3-1>에 의하면, 1950년대 초반에 독도 이벤트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40여 년간 비교적 소강 상태를 거쳐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일 간 독도 관련 이벤트가 다시 급증되면서 그 이후로는 독도 이벤트 건수가 계속해서 상승기류 추세에 있음이 주목된다.²⁵⁾

24) SPSS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의 약자로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와 더불어 사회과학분야의 자료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다.

〈그림 3-1〉 연도별 독도 이벤트 추이 : 1952~2010년



구체적으로 독도 이벤트 발생 빈도가 높았던 1950년대 초반은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따라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일본선의 독도 상륙과 일본영토표식 설치 및 한국의 격퇴와 한국영토표식 설치의 몇 차례 반복, 독도 영유논리와 관련한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 간 몇 차례의 구상서 교환, 1954년 8월 10일 한국의 등대 첫 점등과 같은 해 9월 15일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 및 일본 정부의 항의, 같은 해 9월 25일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 한일 간 독도영유권 관련 다양한 이슈의 이벤트들이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던 시기였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40여 년 정도는 1977~1978년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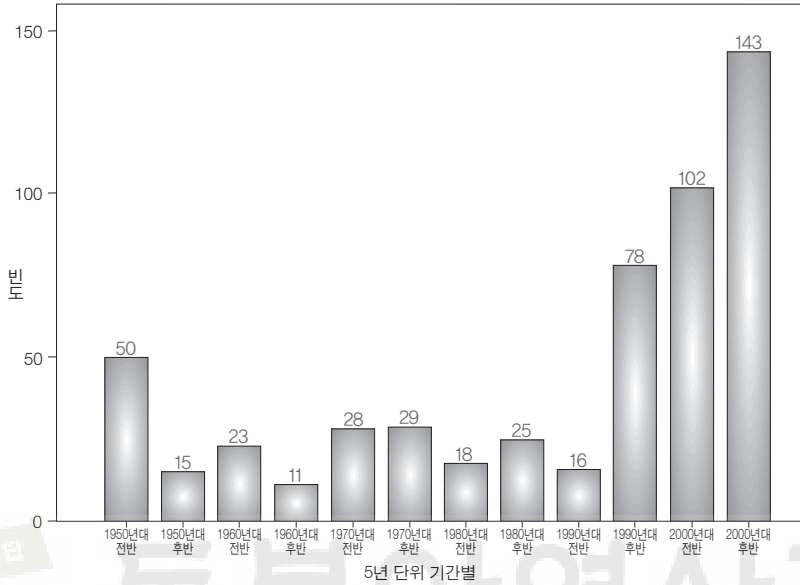
- 25)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까지 15년 동안 발생한 한일 간 독도 이벤트 건수를 모두 합치면 1952년 이래 60년간 발생한 전체 독도 이벤트 건수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 기간을 제외하면 한일 간에는 전반적으로 독도와 관련하여 비교적 소강상태를 유지해 온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77~1978년 시점은 영해 12해리 설정과 관련하여 한일 간 민감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영토주권 행사로는 1977년 독도경비대 청사 설치와 1978년 독도 헬리포트 착공 등이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에 의한 대표적인 독도영유권 도발로는 1977년 일본 신문사와 방송사 항공기의 잇따른 독도 영공 침범과 1978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최초의 독도 기술 등이 있었다.

40년 정도 비교적 소강 상태를 유지해 온 한일 간 독도영유권 갈등이 다시 고조된 계기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과 관련하여 한일 간 독도 영유권문제가 직접적인 당면 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를 둘러싼 한일 간 강경 대치가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독도의 일본명칭)의 날’ 조례 제정, 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정밀 위성지도 제작(2007.12),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용 10개 외국어판 팸플릿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2008.2), 일본 문부성의 초·중·고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및 교과서 검정본의 독도기술 강화(2008.7/2009.12/2010.3/2011.3) 등 일본의 전방위적인 독도영유권 도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5년 단위 기간별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3-2> 및 <표 3-1>에 의하면, 1950년대 전반 시기에 독도 이벤트 빈도가 다소 높았다가 그 이후 비교적 소강상태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일 간 독도 이벤트 발생 빈도가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즉 1990년대 후반에는 전체 독도 이벤트 건수의 14.5%인 78건이 발생했고, 2000년대 전반에는 전체 건수의 19%인 102건,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전체 건수의 26.6%인 143건 등으로 집계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발생한 한일 간 독도 이벤트

〈그림 3-2〉 5년 단위 기간별 독도 이벤트 추이 : 1952~2010년



〈표 3-1〉 5년 단위 기간별 독도 이벤트 추이 : 1952~2010년

5년 단위 기간	빈도	퍼센트(%)
1950년대 전반	50	9.3
1950년대 후반	15	2.8
1960년대 전반	23	4.3
1960년대 후반	11	2.0
1970년대 전반	28	5.2
1970년대 후반	29	5.4
1980년대 전반	18	3.3
1980년대 후반	25	4.6
1990년대 전반	16	3.0
1990년대 후반	78	14.5
2000년대 전반	102	19.0
2000년대 후반	143	26.6
합계	538	100.0

건수를 모두 합치면 1952년부터 60년간 발생한 한일 간 전체 독도 이벤트 건수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래에 올수록 한일 간 독도 이벤트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2. 행위목적별 독도 이벤트 현황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 포함 평화선 선포 이후 1953년 7월 13일 ‘일본 정부 견해(1)’ 이전의 약 1년 6개월 동안 일본은 순시선의 독도 파견 및 일본 관리의 독도 상륙과 영토표주 설치 등 도발적인 행동으로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재판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독도영유권 논리작업도 함께 병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영유권 논리를 정리한 일본 정부 견해를 1953년 7월 13일과 1954년 2월 10일 두 차례 한국 정부로 송부한 뒤인 1954년 9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 정부에 제의한 바 있다. 1954년 2월 10일 ‘일본 정부 견해(2)’ 이후 1954년 9월 25일 ‘한국 정부 견해(2)’ 이전의 약 7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국기 게양 및 등대 설치(1954.8), 독도 우표 발행(1954.9.15)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강화했고, 일본은 1954년 9월 25일 한국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의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했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각 두 차례씩 영유권리 외교문서를 교환한 이후인 1955년부터는 양측이 무력충돌을 되도록 자제하면서 논쟁을 계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약 2년 정도 지난 1967년 3월 30일 일본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사토[佐藤] 수상이 독도문제를 언급하게 되

었는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을 통해 자신이 방한하게 되면 독도의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이어 일본 아이지[愛知] 외상 역시 1969년 2월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심각히 검토 중이며 공식 외교경로로 한국과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때부터 일본은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독도영유권 관련 항의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시설물 설치 계획 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항의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테면 일본은 1972년 4월에 한국의 반항구적 등대설치 계획에 항의하는가 하면 1973년 4월에는 한국의 독도개발계획 보도에 항의하였고, 1975년 11월에도 한국관현의 즉시 퇴거 및 건물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본격적으로 재발되었던 시기는 1977~1978년경으로 이때는 한일 양국의 12해리 영해선포 시점과 비슷한 시기이기도 하다. 1977년에는 한국의 독도 경비대 청사 설치, 1977년 2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전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후쿠오카 RKB-TV 헬리콥터의 독도 영공 침범 등이 있었다. 이어 1978년에는 한국에서 독도 헬리포트 설치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이 즈음부터 일본은 방위성에서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처음으로 기술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의 제10차 한일각료회의 때부터는 거의 매년 일본 외상이 독도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²⁶⁾

1986년 9월 10일부터 한일 간 제1차 외무장관회담이 개시되었는데 이후로도 여전히 일본은 거의 매년 외무장관회담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편

26)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1967년 3월 당시 한국 국무총리 정일권(丁一權)과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한일각료회담을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가며 매년 열기로 합의하였고, 제1차 회담을 1967년 8월 9~11일 도쿄에서 개최했다.

이다. “한국에 의한 독도의 불법점거” 표현은 일본 『외교청서』에서 1987년판까지만 언급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사라졌는데, 2006년 한일 간 해양조사 충돌위기를 계기로 한때 일본 외무성에서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이 독도영유권 수호와 관련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대비한 것이다. 1990년 10월 31일 한국 합참의장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전망 및 독도방위 대책 수립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여 1991년 3월에 독도방위계획을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7월 12일 치안본부장이 독도에 레이더 설치를 검토 의뢰한 결과 1993년 12월 22일 독도에 근거리탐지용 레이더 2대가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측의 항의가 뒤따르기도 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한일 간 독도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당시 가장 첨예했던 이슈는 1996년 초 대두된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 착공과 반년 뒤 1996년 9월 18일 한국의 독도주변 수역 사격훈련구역(R-130) 신규 지정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지속적인 항의와 강한 반발이 뒤따랐는데 1996년 9월 27일 일본 자민당에서는 선거공약에 독도문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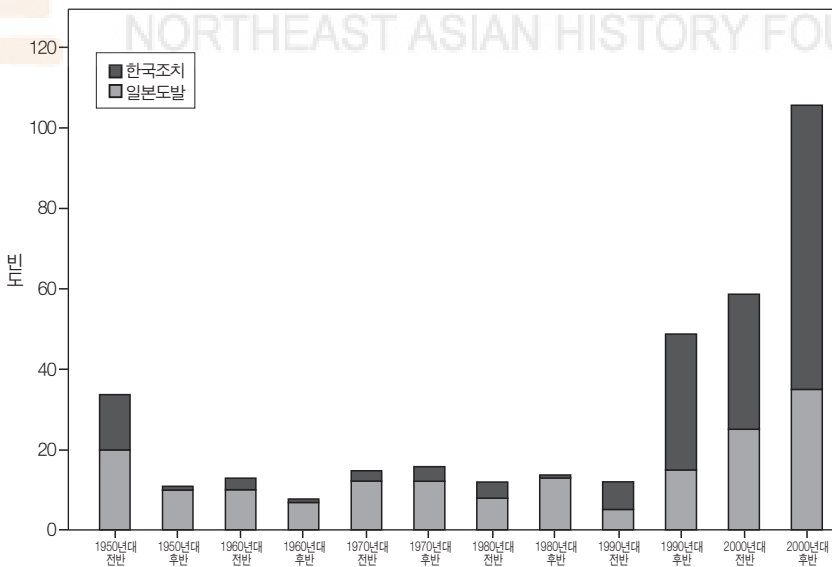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을 부당하게 막은 적은 있었지만 과학 탐사 활동을 막은 것은 2004년 7월이 처음이다. 당시 독도 인근에서 천연가스층을 조사하던 우리 측 한국수질자원연구원 소속 2,000톤급 해양 탐사선인 탐해2호에 대해 일본이 1,000톤급 순시선을 통해 작업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해경청 경비정이 긴급 출동하면서 한일 간 대치하기도 했다. 20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 제정 및 매년 계속되는 행사 강행을 비롯하여 최근 수년 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앞서 언급한대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대하여 과연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실효적 지배)는 그간 어떠한 추이를 보여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의 전체 538건에는 ‘행위목적’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되는데, ‘일본의 독도도발 행위’ 172건(32.0%),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177건(32.9%), 한국 또는 일본의 ‘상대국 행위에 대한 항의’ 189건(35.1%)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 또는 일본의 ‘항의’ 행위(189건)를 제외한 나머지 349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독도도발 행위’와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사례를 ‘5년 단위 기간’별로 추이를 비교해 보면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은 일본의 독도도발 사례와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사례의 빈도를 5년 단위 기간별로 그 추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한일 간 독도 이벤트의 증가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3> 및 <표 3-2>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는 그 이전까지의 추세와는 달리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행사 빈도수가 일본의 독도도발 빈도수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

<그림 3-3> 독도 이벤트 추이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표 3-2〉 독도 이벤트 추이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5년 단위												전체
	1950년 전반	1950년 후반	1960년 전반	1960년 후반	1970년 전반	1970년 후반	1980년 전반	1980년 후반	1990년 전반	1990년 후반	2000년 전반	2000년 후반	
일본 도발	20	10	10	7	12	12	8	13	5	15	25	35	172
	11.6%	5.8%	5.8%	4.1%	7.0%	7.0%	4.7%	7.6%	2.9%	8.7%	14.5%	20.3%	100.0%
	58.8%	90.9%	76.9%	87.5%	80.0%	75.0%	66.7%	92.9%	41.7%	30.6%	42.4%	33.0%	49.3%
한국 조치	14	1	3	1	3	4	4	1	7	34	34	71	177
	7.9%	.6%	1.7%	.6%	1.7%	2.3%	2.3%	.6%	4.0%	19.2%	19.2%	40.1%	100.0%
	41.2%	9.1%	23.1%	12.5%	20.0%	25.0%	33.3%	7.1%	58.3%	69.4%	57.6%	67.0%	50.7%
합계	34	11	13	8	15	16	12	14	12	49	59	106	349
	9.7%	3.2%	3.7%	2.3%	4.3%	4.6%	3.4%	4.0%	3.4%	14.0%	16.9%	30.4%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독도 이벤트 급증 추이가 일본의 독도도발 고조 추세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영토주권 행사 또는 실효지배 강화 추세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요컨대 1952년 이래 실제 한일 간 발생한 독도 이벤트데이터에 의거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도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3. 행위자별 독도 이벤트 현황 : 중앙 vs.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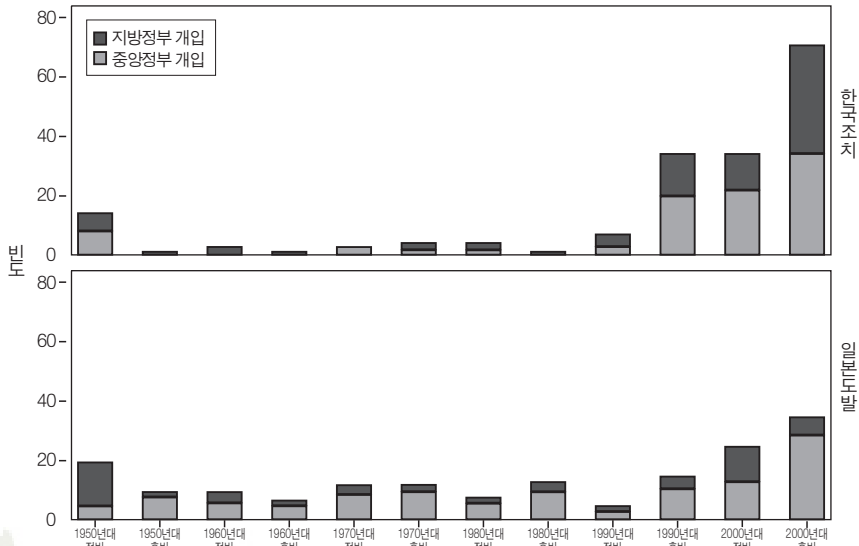
한일 간 독도영유권 이슈는 흔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도발과 대응인지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의 도발과 대응인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위자’ 구분을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다시 코딩변환(recoding)하여 과연 한일 간 독도영유권 이슈와 관련하여 양 국가의 중앙정

부 개입도와 지방정부의 개입도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코딩변환을 위해 ‘행위자’ 변수의 ‘민간·공공기관’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을 합쳐서 ‘지방정부 개입’으로, 그리고 나머지 ‘국회’ ‘중앙정부’ ‘총리’ ‘대통령’ 등을 합쳐서 ‘중앙정부 개입’으로 코딩변환했다.

전체 538건의 사례 중 ‘행위목적’ 변수의 ‘항의(189건)’를 제외한 나머지 349건(‘한국조치’ 177건과 ‘일본도발’ 172건)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개입 정도를 5년 단위 기간별로 그 추이를 비교한 <그림 3-4>에 의하면, 특히 2000년대 후반 들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를테면,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의 독도도발은 그 이전 기간에 비해 중앙정부의 개입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영토주권수호 행사의 경우는 그 이전 기간에 비해 지방정부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표 3-3>에 의하면, 일본의 독도도발 경우 중앙정부 개입 건수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에는 각각 11건과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 후반에는 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한국의 영토주권행사 경우는 오히려 지방정부 조치 건수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의 각각 14건과 12건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37건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이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2007년 국토지리원의 독도 정밀 위성지도 제작, 2008년 외무성의 독도 홍보용 10개 외국어판 팸플릿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2008년 7월 문부와 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및 2009년 12월 문부성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의 독도영유권 주장, 2010년 3월의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기술 강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개입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

〈그림 3-4〉 중앙정부-지방정부 개입도 추이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표 3-3〉 중앙정부-지방정부 개입도 추이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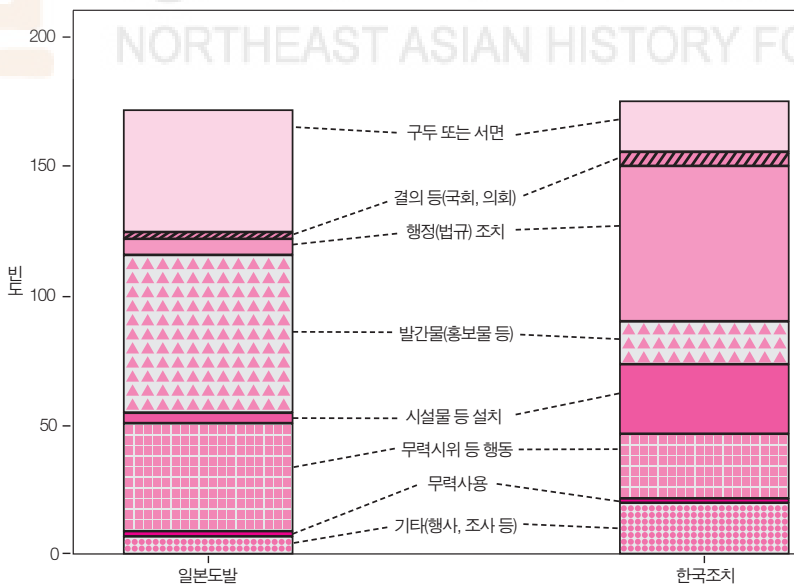
		5년 단위												전체
		1950년	1950년	1960년	1960년	1970년	1970년	1980년	1980년	1990년	1990년	2000년	2000년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일본	지방정부	6	1	3	1	0	2	2	1	4	14	12	37	83
	중앙정부	8	0	0	0	3	2	2	0	3	20	22	34	94
	합계	14	1	3	1	3	4	2	1	7	34	34	71	177
한국	지방정부	2	4	2	3	2	2	2	3	2	4	12	6	57
	중앙정부	8	6	5	9	10	10	6	10	3	11	13	29	115
	합계	10	10	7	12	12	12	8	13	5	15	25	35	172

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 역시 지방정부 차원인 경상북도 등의 독도 영토주권 조치가 더욱 가시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위유형별 독도 이벤트 현황

독도 이벤트가 표출된 행위유형으로는 구두(망언) 또는 서면(구상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문 채택, 행정법규(명령) 제정 또는 조치, 교과서나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등 발간 또는 홈페이지 게시, 시설물의 설치, 영해침범이나 상륙시도 또는 군사훈련 등 행동감행, 무력사용, 기타 해양조사 또는 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영토주권행사 및 일본의 독도도발 시 행위유형을 비교해 보면, <그림 3-5>에서와 같이 일본의 독도도발 행위는 주로 구두(망언) 또는 서면(구상서), 발간물, 행동감행 등의 유형으로 표출된 반면,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는 주로 행정법규 조치나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유형으로 표출되어 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림 3-5> 독도 이벤트 행위유형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구체적으로 각 행위유형별 빈도수를 나타낸 <표 3-4>에 의하면, 1952~2010년 기간 중 일본의 독도도발 행위 172건 가운데 ‘발간물(홍보물 등)’ 유형이 35.5%에 달하는 61건으로 가장 빈번한 행위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구두(망언) 또는 서면(구상서)’ 유형이 47건(27.3%), ‘무력시위 등 행동’ 유형이 42건(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행위의 경우는 전체 177건 가운데 ‘행정법규 조치’ 유형이 33.9%에 달하는 60건으로 가장 빈번한 행위유형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시설물 설치’ 유형이 27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독도를 실제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로 구두 망언이나 구상서에 의한 항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또는 『외교청서』 등 자국의 발간물을 통한 독도영유권 기술, 불법적인 영해침범 행위 또는 독도 상륙 시도 등에 의존함으로써 일

<표 3-4> 독도 이벤트 행위유형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행위유형	행위목적		전체
	한국조치	일본도발	
구두 또는 서면	20 11.3%	47 27.3%	67 19.3%
결의 등(국회, 의회)	6 3.4%	3 1.7%	9 2.6%
행정(법규) 조치	60 33.9%	6 3.5%	66 19.0%
발간물(홍보물 등)	17 9.6%	61 35.5%	77 22.1%
시설물 등 설치	27 15.3%	4 2.3%	31 8.9%
무력시위 등 행동	25 14.1%	42 24.4%	67 19.3%
무력사용	2 1.1%	2 1.2%	4 1.1%
기타(행사, 조사 등)	20 11.3%	7 4.1%	27 7.8%
전체	177 100.0%	172 100.0%	349 100.0%

〈표 3-5〉 독도 이벤트 행위유형 추이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행위유형		10년 단위						전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조치	구두 또는 서면	2 10.0%	0 .0%	2 10.0%	0 .0%	5 25.0%	11 55.0%	20 100.0%
	결의 등 (국회, 의회)	0 .0%	0 .0%	0 .0%	0 .0%	1 16.7%	5 83.3%	6 100.0%
	행정(법규) 조치	2 3.3%	0 .0%	1 1.7%	2 3.3%	10 16.7%	45 75.0%	60 100.0%
	발간물 (홍보물 등)	1 5.9%	0 .0%	0 .0%	0 .0%	4 23.5%	12 70.6%	17 100.0%
	시설물 등 설치	5 18.5%	1 3.7%	3 11.1%	1 3.7%	7 25.9%	10 37.0%	27 100.0%
	무력시위 등 행동	1 4.0%	3 12.0%	0 .0%	1 4.0%	9 36.0%	11 44.0%	25 100.0%
	무력사용	1 50.0%	0 .0%	0 .0%	1 50.0%	0 .0%	0 .0%	2 100.0%
	기타 (행사, 조사 등)	3 15.0%	0 .0%	1 5.0%	0 .0%	5 25.0%	11 55.0%	20 100.0%
	전체	15 8.5%	4 2.3%	7 4.0%	5 2.8%	41 23.3%	105 59.7%	177 100.0%
일본도발	구두 또는 서면	12 25.5%	10 21.3%	7 14.9%	7 14.9%	3 6.4%	8 17.0%	47 100.0%
	결의 등 (국회, 의회)	0 .0%	0 .0%	0 .0%	0 .0%	1 33.3%	2 66.7%	3 100.0%
	행정(법규) 조치	0 .0%	0 .0%	0 .0%	0 .0%	2 33.3%	4 66.7%	6 100.0%
	발간물 (홍보물 등)	0 .0%	2 3.3%	10 16.4%	8 13.1%	8 13.1%	33 54.1%	61 100.0%
	시설물 등 설치	4 100.0%	0 .0%	0 .0%	0 .0%	0 .0%	0 .0%	4 100.0%
	무력시위 등 행동	13 31.0%	5 11.9%	7 16.7%	5 11.9%	5 11.9%	7 16.7%	42 100.0%
	무력사용	1 50.0%	0 .0%	0 .0%	0 .0%	1 50.0%	0 .0%	2 100.0%
	기타 (행사, 조사 등)	0 .0%	0 .0%	0 .0%	1 14.3%	0 .0%	6 85.7%	7 100.0%
	전체	30 17.4%	17 9.9%	24 14.0%	21 12.2%	20 11.6%	60 34.9%	172 100.0%

본이 실제적으로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이벤트 행위유형을 10년 단위 기간별로 그 추이를 보여주는 <표 3-5>에 의하면, 일본의 가장 빈번한 독도도발 행위유형인 ‘발간물(홍보물 등)’ 행위 총 6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건(54.1%)이 모두 최근인 200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의 가장 빈번한 독도 영토주권 행사 유형인 ‘행정법규 조치’ 역시 전체 60건 중 3/4에 달하는 45건(75%)이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래 일본의 전방위적인 독도영유권 도발에 대하여 한국정부 역시 대응의 일환으로 행정법규 조치 등 영토주권 행사를 강화시켜 왔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조치 중 ‘시설물 설치’ 행위유형은 전체 27건 중 1950년대에 5건(18.5%), 1970년대 3건(11.1%), 1990년대 7건(25.9%), 2000년대 10건(37%) 등으로 전 기간에 걸쳐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가 꾸준히 행해져 온 편이다.

5.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관할권 행사 현황

1952~2010년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사례 177건을 대상으로 관할권(대분류) 구분 현황을 나타낸 <표 3-6>에 의하면, 공공행정권 행사가 전체 177건의 절반 이상인 104건(58.8%)에 달하며 나머지 3개의 영역은 대체로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입법·사법 관할권 행사 24건(13.6%), 국방·치안 관할권 행사 28건(15.8%), 정치·외교 관할권 행사 21건(11.9%) 등으로 나타난다.

관할권 대분류 중 ‘공공행정권’을 좀 더 세분화한 <표 3-7>에 따르면, 공공행정 관할권 행사 104건 중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건설·교통·정보·통신 관할권 행사가 가장 많은 36건으로 전체 177건의 20.3%이며, 교육·문화·관광·홍

〈표 3-6〉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관할권구분(대분류)

	빈도	퍼센트(%)
입법사법권	24	13,6
국방치안권	28	15,8
정치외교권	21	11,9
공공행정권	104	58,8
합계	1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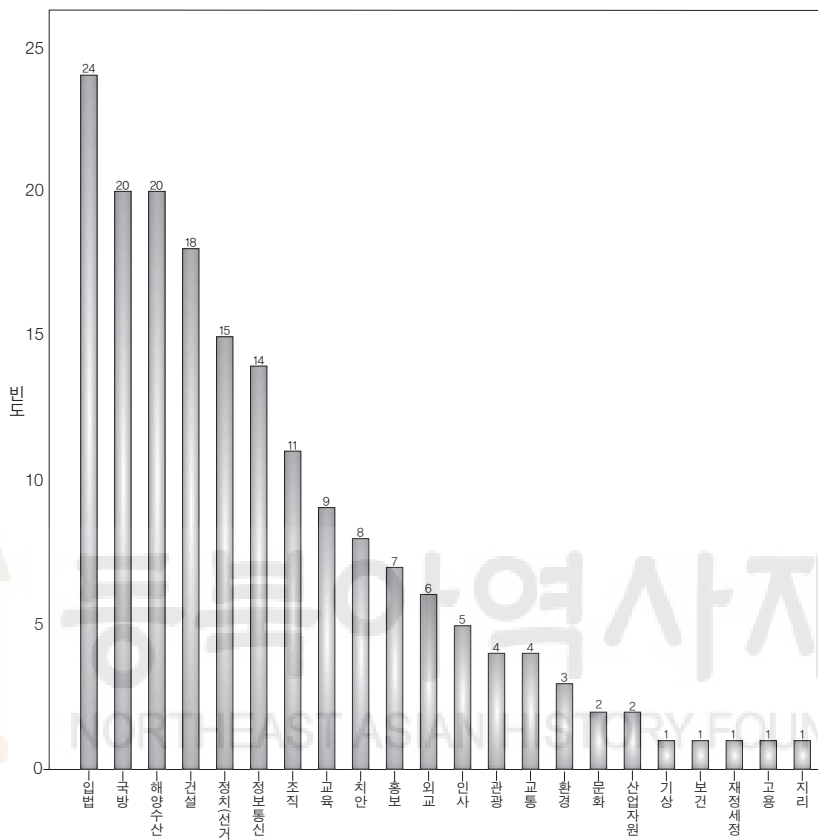
〈표 3-7〉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관할권구분(중분류)

	빈도	퍼센트(%)
입법사법권	24	13,6
국방치안권	28	15,8
정치외교권	21	11,9
인사조직보건복지 행정권	18	10,2
건설교통정보통신 행정권	36	20,3
해양산림산업자원 행정권	24	13,6
교육문화관광홍보 행정권	26	14,7
합계	177	100,0

보 관할권 행사 26건(14,7%), 해양·산림·산업·자원 관할권 행사 24건(13,6%), 인사·조직·보건·복지 관할권 행사는 18건(10,2%) 등으로 각각 집계된다.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를 관할권 세부 영역별로 비교한 〈그림 3-6〉 및 〈표 3-8〉에 의하면, ‘입법 관할권 행사’가 전체 177건 중 13,6%인 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가장 확실한 실효적 지배조치는 입법권 행사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방’과 ‘해양·수산’ 관할권 행사가 각 20건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영토 수호 및 한국 영해로서의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수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독도에 시설물 설치를 통해 한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한 ‘건설’ 관할권 행사가 18건, 부채자 투표 등 ‘정치(선거)’ 관할권 행사 15건, 전화

〈그림 3-6〉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관할권구분(소분류)



개통 등 ‘정보통신’ 관할권 행사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영토주권이 폭넓은 관할권 영역에서 실효적으로 행사되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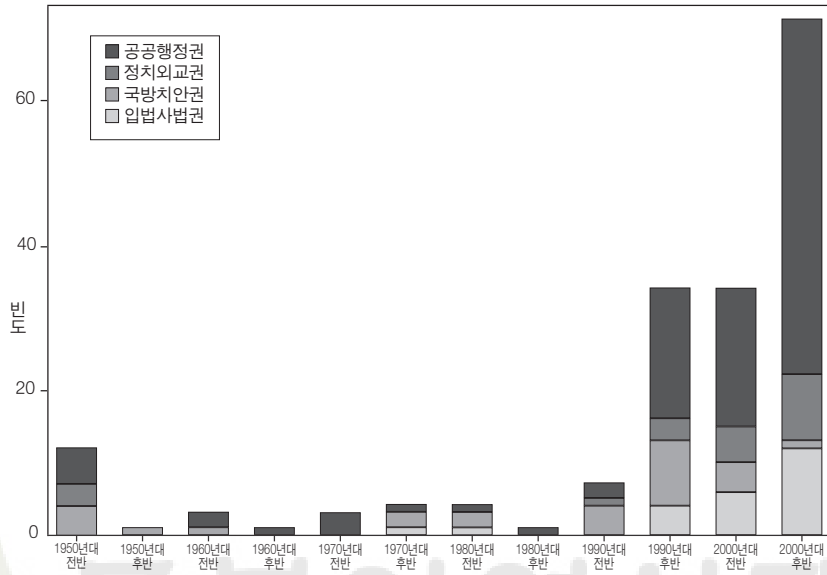
한국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행사한 177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관할권 영역을 입법사법권, 국방치안권, 정치외교권, 공공행정권 등 4개의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5년 단위 기간별 추이를 나타낸 〈그림 3-7〉과 〈표 3-9〉에 의하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1994년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 관련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이래 한일 간 독도 이벤트가 급증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

〈표 3-8〉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관할권구분(소분류)

	빈도	퍼센트(%)
입법	24	13.6
국방	20	11.3
치안	8	4.5
정치(선거)	15	8.5
외교	6	3.4
인사	5	2.8
고용	1	0.6
조직	11	6.2
보건	1	0.6
건설	18	10.2
교통	4	2.3
정보통신	14	7.9
해양수산	20	11.3
기상	1	0.6
산업자원	2	1.1
재정세정	1	0.6
교육	9	5.1
환경	3	1.7
문화	2	1.1
관광	4	2.3
홍보	7	4.0
지리	1	0.6
합계	177	100.0

터 특히 한국의 공공행정 관할권 행사의 빈도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기간별로 한국의 공공행정 관할권 행사가 불과 1~2건씩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에는 각각 18건과 19건, 2000년대 후반에는 무려 49건 등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이전 기간에 거의 찾아보기 힘

〈그림 3-7〉 영역별 한국의 독도관할권 행사 추이 : 1952~2010년



들었던 입법관할권의 행사 역시 1990년대 후반에 4건, 2000년대 전반에 6건, 2000년대 후반에 12건 등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국방치안 관할권 행사의 경우 간헐적으로 1950년대 전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전반, 1990년대 후반 전후 시기 등이 주목되는데, 이 시기들 역시 국방 관련 독도이슈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950년대 초반은 영토표식 설치를 둘러싼 일본의 영해침범과 독도 상륙 및 한국의 격퇴가 반복되었던 시기였으며, 1970년대 후반은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기술이 처음 등장하였던 시점(1978년)이었다. 특히 한국의 국방치안 관할권 행사가 9건으로 5년 단위 기간 중 가장 빈번했던 1990년대 후반은 1978년 이래 19년만인 1997년에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기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관할권 행사 104건을 좀 더 세분화한 관할권 중분류 기준으로

〈표 3-9〉 영역별 한국의 독도관할권 행사 추이 : 1952~2010년

5년 단위 기간	관할권(대분류)				전체
	입법사법권	국방치안권	정치외교권	공공행정권	
1950년대 전반	0 .0%	4 14.3%	3 14.3%	7 6.7%	14 7.9%
1950년대 후반	0 .0%	1 3.6%	0 .0%	0 .0%	1 .6%
1960년대 전반	0 .0%	1 3.6%	0 .0%	2 1.9%	3 1.7%
1960년대 후반	0 .0%	0 .0%	0 .0%	1 1.0%	1 .6%
1970년대 전반	0 .0%	0 .0%	0 .0%	3 2.9%	3 1.7%
1970년대 후반	1 4.2%	2 7.1%	0 .0%	1 1.0%	4 2.3%
1980년대 전반	1 4.2%	2 7.1%	0 .0%	1 1.0%	4 2.3%
1980년대 후반	0 .0%	0 .0%	0 .0%	1 1.0%	1 .6%
1990년대 전반	0 .0%	4 14.3%	1 4.8%	2 1.9%	7 4.0%
1990년대 후반	4 16.7%	9 32.1%	3 14.3%	18 17.3%	34 19.2%
2000년대 전반	6 25.0%	4 14.3%	5 23.8%	19 18.3%	34 19.2%
2000년대 후반	12 50.0%	1 3.6%	9 42.9%	49 47.1%	71 40.1%
전체	24 100.0%	28 100.0%	21 100.0%	104 100.0%	177 100.0%

5년 단위 추이를 살펴본 〈그림 3-8〉 및 〈표 3-10〉에 따르면, 우선 주목되는 것은 역시 한일 간 가장 첨예했던 쟁점의 하나인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건설·교통·정보·통신 관할권 행사가 1950년대 전반 이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행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독도 이벤트가 급증했던 199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건설·교통·정보·통신 관할권 행사의 빈도수도 마찬가지로 급증하여 그 이전까지 기간별로 1건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후반 9건,

연도	교육문화관광홍보 행정권	해양수산산업자원 행정권	건설교통정보통신 행정권	인사조직보건의복지 행정권
1950년대 전반	2	1	0	0
1950년대 전반	0	0	1	0
1950년대 전반	0	0	0	0
1950년대 전반	0	0	2	0
1950년대 전반	0	0	0	0
1950년대 전반	0	0	0	0
1950년대 전반	0	0	0	0
1950년대 전반	0	0	0	0
1950년대 전반	0	0	10	0
1950년대 전반	0	0	15	0
1950년대 전반	0	0	20	0
1950년대 전반	0	0	25	0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면서 주목되는 점은 인사·조직·보건·복지 관할권 행사 및 교육·문화·관광·홍보 관할권 행사가 각각 12건(66.7%), 19건(73.1%)으로 빈도수로나 퍼센트로나 그 이전까지의 기간에 비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한국내 독도 관련 전담 부서 또는 TF 등 조직의 강화 양상을 반영하는 한편, 일본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특히 교육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영토주권수호 관할권 행사 차원의 조치들이 강화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0〉 한국의 독도 공공행정 관할권 행사 추이 : 1952~2010년

5년 단위 기간	공공행정 관할권				전체
	인사조직 보건복지	건설교통 정보통신	해양산림 산업자원	교육문화 관광홍보	
1950년대 전반	0 .0%	1 2.8%	4 16.7%	2 7.7%	7 6.7%
1960년대 전반	1 5.6%	1 2.8%	0 .0%	0 .0%	2 1.9%
1960년대 후반	0 .0%	1 2.8%	0 .0%	0 .0%	1 1.0%
1970년대 전반	0 .0%	1 2.8%	2 8.3%	0 .0%	3 2.9%
1970년대 후반	0 .0%	1 2.8%	0 .0%	0 .0%	1 1.0%
1980년대 전반	1 5.6%	0 .0%	0 .0%	0 .0%	1 1.0%
1980년대 후반	1 5.6%	0 .0%	0 .0%	0 .0%	1 1.0%
1990년대 전반	1 5.6%	1 2.8%	0 .0%	0 .0%	2 1.9%
1990년대 후반	0 .0%	9 25.0%	7 29.2%	2 7.7%	18 17.3%
2000년대 전반	2 11.1%	9 25.0%	5 20.8%	3 11.5%	19 18.3%
2000년대 후반	12 66.7%	12 33.3%	6 25.0%	19 73.1%	49 47.1%
전체	18 100.0%	36 100.0%	24 100.0%	26 100.0%	1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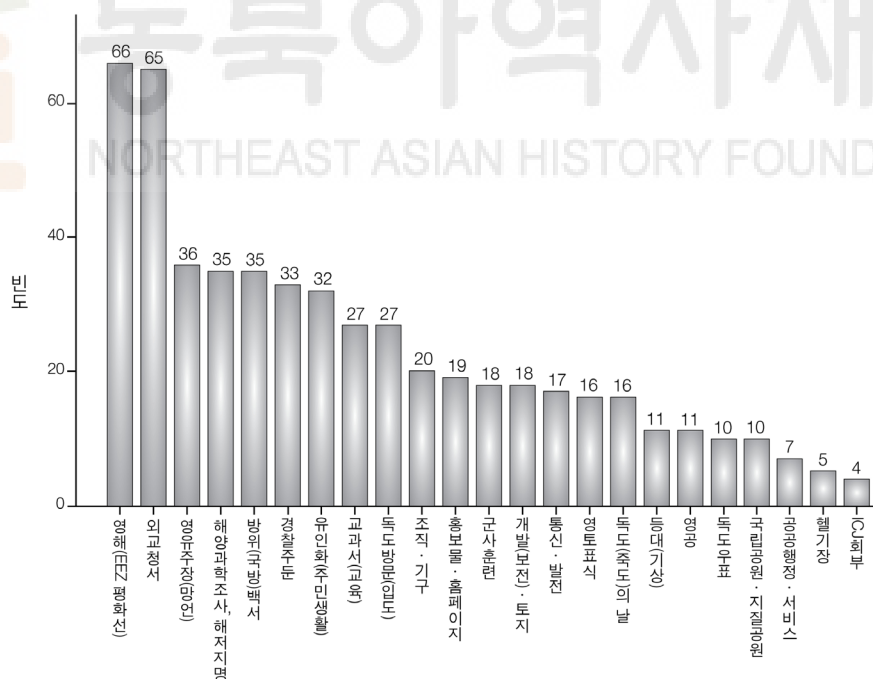
6. 이슈별 독도 이벤트 현황

1952년 이래 2010년까지 한일 간 발생한 독도 이벤트 538건의 이슈별 분포를 나타내면 〈그림 3-9〉 및 〈표 3-11〉과 같다. 역시 한일 간 독도영유권 관련 가장 많은 이벤트 이슈는 영해침범(EEZ, 평화선 포함) 관련 이슈로써 전체 538건의 12.3%인 66건으로 나타난다. 이어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65건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일본의 『외교청서』가 1957년 발간된 이후 1963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독도 관련 기술을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포함해 왔고 그 때마다 이에 대한 한국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벤트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방언) 이슈가 36건, 해양조사 관련 35건, 『방위백서』 35건, 경찰주둔 이슈 33건, 독도주민 유인화 이슈 32건, 교과서 27건, 독도 방문(입도) 관련 이슈 2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전체 사례 538건 중에는 상대국의 ‘항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대국의 ‘항의’ 행위를 제외할 경우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행사가 주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지 그 현황을 비

〈그림 3-9〉 독도 이벤트의 이슈별 현황 : 전체 사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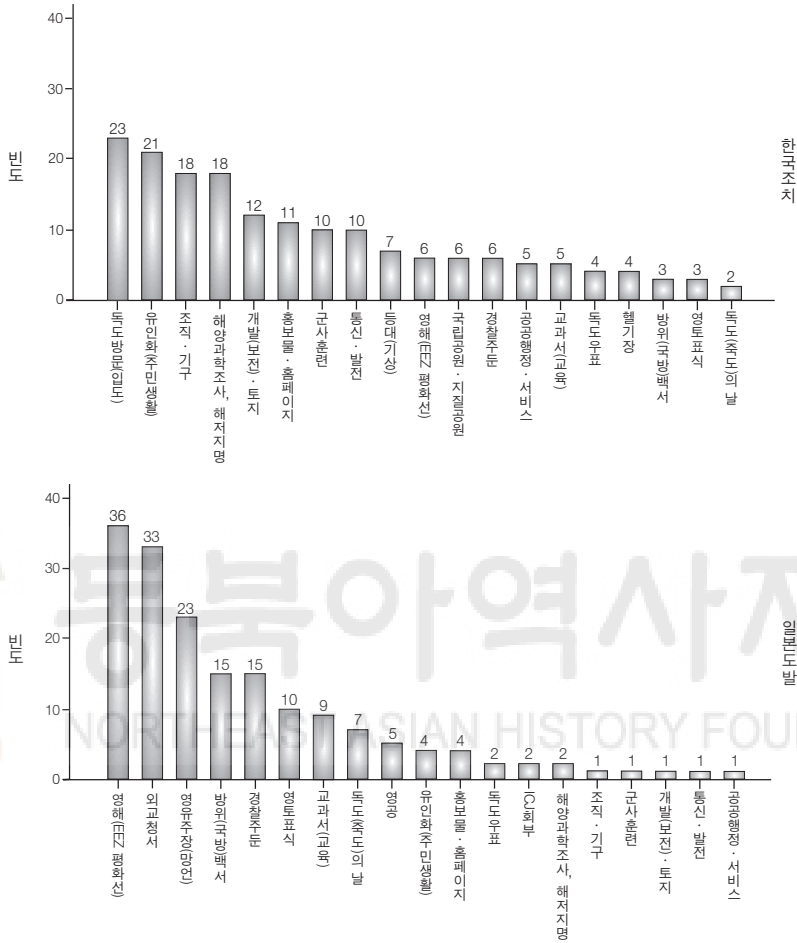


〈표 3-11〉 독도 이벤트의 이슈별 현황 : 전체 사례 대상

이슈	빈도	퍼센트(%)
영해(EEZ, 평화선)	66	12.3
외교청서	65	12.1
영유주장(망언)	36	6.7
해양과학조사, 해저지명	35	6.5
방위(국방)백서	35	6.5
경찰주둔	33	6.1
유인화(주민생활)	32	5.9
교과서(교육)	27	5.0
독도방문(입도)	27	5.0
조직, 기구	20	3.7
홍보물, 홈페이지	19	3.5
군사훈련	18	3.3
개발(보전), 토지	18	3.3
통신, 발전	17	3.2
영도표식	16	3.0
독도(죽도)의 날	16	3.0
등대(기상)	11	2.0
영공	11	2.0
독도우표	10	1.9
국립공원, 지질공원	10	1.9
공공행정, 서비스	7	1.3
헬기장	5	.9
ICJ회부	4	.7
합계	538	100.0

교해 보면 〈그림 3-10〉 및 〈표 3-12〉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¹⁷²건 이슈는 주로 영해 관련 36건, 『외교청서』 33건, 영유주장(망언) 23건, 『방위백서』 15건, 경찰주둔 관련 15건, 영도표식(상륙시도) 10건, 죽도(독도의

〈그림 3-10〉 독도 이벤트의 이슈별 현황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일본식 명칭)의 날 7건, 영공 관련 5건, 그리고 특히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관련 건수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한편 한국의 영토주권행사(177건)의 이슈로는 주로 독도방문(입도) 관련 이슈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독도주민 유인화 관련 이슈가 21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독도 주민 등록 전입, 어민(주민)숙소 설치(보수), 선가장 설치(보수), 독도리 신설, 우편번호

〈표 3-12〉 독도 이벤트의 이슈별 현황 : 일본도발 vs. 한국조치

이슈	행위목적		전체
	일본도발	한국조치	
영해(EEZ, 평화선)	36 85.7%	6 14.3%	42 100.0%
외교청서	33 100.0%	0 .0%	33 100.0%
영유주장(망언)	23 88.5%	3 11.5%	26 100.0%
해양과학조사, 해저지명	2 10.0%	18 90.0%	20 100.0%
방위(국방)백서	15 83.3%	3 16.7%	18 100.0%
경찰주둔	15 71.4%	6 28.6%	21 100.0%
유인화(주민생활)	4 16.0%	21 84.0%	25 100.0%
교과서(교육)	9 64.3%	5 35.7%	14 100.0%
독도방문(입도)	0 .0%	23 100.0%	23 100.0%
조직, 기구	1 5.3%	18 94.7%	19 100.0%
홍보물, 홈페이지	4 26.7%	11 73.3%	15 100.0%
군사훈련	1 9.1%	10 90.9%	11 100.0%
개발(보전), 토지	1 7.7%	12 92.3%	13 100.0%
통신, 발전	1 9.1%	10 90.9%	11 100.0%
영토표식	10 76.9%	3 23.1%	13 100.0%
독도(죽도)의 날	7 77.8%	2 22.2%	9 100.0%
등대(기상)	0 .0%	7 100.0%	7 100.0%
영공	5 100.0%	0 .0%	5 100.0%
독도우표	2 33.3%	4 66.7%	6 100.0%
국립공원, 지질공원	0 .0%	6 100.0%	6 100.0%
공공행정, 서비스	1 16.7%	5 83.3%	6 100.0%
헬기장	0 .0%	4 100.0%	4 100.0%
ICJ회부	2 100.0%	0 .0%	2 100.0%
전체	172 49.3%	177 50.7%	349 100.0%

부여, 우체통 설치, 담수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예주민증 발급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독도 이벤트의 유사 분석사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 기사 분석 : 1948~200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최근까지 《노동신문》에 나타난 ‘독도’ 관련 기사 140여건²⁷⁾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 성향을 시기별 및 이슈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북한의 의도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독도 이슈 제기가 ‘북한-일본 관계’나 ‘한국-일본 관계’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향후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한반도 및 남북관계의 답보 상태, 특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및 김정일 사망 관련 조문 등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거의 대부분의 남북관계가 경색을 초래해 온 상황에서, 과연 ‘독도 이슈’

27) 《노동신문》의 독도 관련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2007년 6월까지의 기사 자료 100건 내외의 조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지원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08년 12월까지 독도 관련 기사 40건 내외는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진수·양주(2009),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 기사(1948~2008년) 현황 분석 : 북일 관계 및 한일관계 상관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119~149쪽 참고.

가 남북한 공통분모의 하나로써 남북한 관계개선 타개의 여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독도 이슈’가 만약 남북한 관계개선 및 협력 창구로써 활용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등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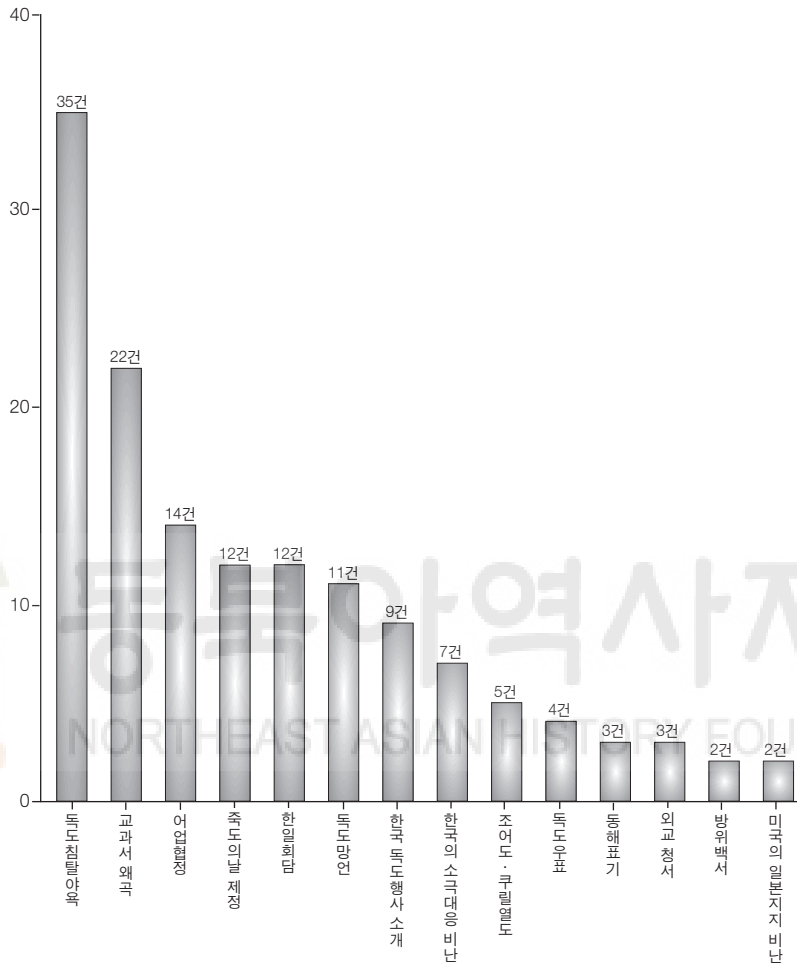
1) 《노동신문》 독도 기사의 연도별 및 이슈별 현황

북한 정권 수립 이래 2008년까지 《노동신문》에 나타난 독도 관련 기사는 총 141건으로 집계되는데, 이슈별 현황 분포를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에 의하면, 《노동신문》에 게재된 2008년까지의 독도 관련 기사 총 141건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슈는 ‘일본의 독도침탈 또는 독도강탈 야욕’을 비난하는 기사로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35건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22건), 한일어업협정 관련 일본의 도발(14건),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 제정 관련(12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관련(12건), 일본 관리의 독도망언 관련(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독도우표 관련 4건,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에서의 독도 기술 관련 3건,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에서의 독도 기술 관련 2건 등 독도 관련 일본의 영유 도발에 관한 모든 이슈를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독도 관련 소극적 입장 및 대일 유화 입장을 비난하는 기사도 7건이고, 미국의 독도 개입 및 일본입장 지지를 비난하는 기사가 2건에 이르는 등 ‘독도 이슈’ 역시 북한의 기존 대남 및 대미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 《노동신문》에 나타난 총 141건의 독도 관련 기사를 연도별 및 이슈별로 비교한 <표 4-1>을 보면 시기별로 독도 관련 이슈의 변화 흐름을 파악

〈그림 4-1〉 《노동신문》 독도 기사의 이슈별 현황(1948~2008년) : 총141건



할 수 있다. 우선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

- (1) 1960년대 한일기본조약 체결 시점의 ‘독도 기사 등장 시기’, (2) 1970년대 ~1990년대 후반의 ‘독도 기사 소강상태 시기’, (3)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독도 기사 재등장 및 급증 시기’.

〈표 4-1〉 북한 《노동신문》 독도기사의 연도별 · 이슈별 현황

연도	한일 회담 (12)	어업 협정 (14)	독도 망언 (11)	동해 표기 (3)	외교 청서 (3)	독도 우표 (4)	죽도의 날 (12)	교과서 (22)	방위 백서 (2)	한국 친일 (7)	미국 친일 (2)	독도 침탈 (35)	조어도 쿠릴열도 (5)	한국 소식 (9)	계 (141건)
1965	7	2								2					11
1966															0
1967	1	3										1			5
1968		1													1
1969		2													2
1970															0
1971															0
1972															0
1973															0
1974															0
1975															0
1976															0
1977															0
1978		1													1
1979															0
1980															0
1981															0
1982															0
1983			2												2
1984															0
1985															0
1986			1												1
1987															0
1988															0
1989															0
1990															0
1991															0
1992				1											1
1993															0
1994															0
1995															0
1996															0
1997															0

연도	한일 회담 (12)	어업 협정 (14)	독도 망언 (11)	동해 표기 (3)	외교 청서 (3)	독도 우표 (4)	죽도의 날 (12)	교과서 (22)	방위 백서 (2)	한국 친일 (7)	미국 친일 (2)	독도 침탈 (35)	조어도 쿠릴열도 (5)	한국 소식 (9)	계 (141건)
1998		1													1
1999															0
2000			1		1										2
2001												2			2
2002		1												1	2
2003															0
2004	1		3			3						1	1		9
2005	2	1	4		1	1	10	2			1	14	3		41
2006	1	1					2	5	2		1	4	1	1	18
2007				2			1					5			8
2008					1			14		5		7		7	34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던 시기인 1965년에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11건의 독도 기사가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5건, 1968년 1건, 1969년 2건으로 계속 게재되던 독도 기사가 1970년대 이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1978년·1983년·1986년·1992년 등 간헐적으로 한·두 건씩 게재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00년도 이후부터는 독도 기사가 본격적으로 집중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2000년도에 2건, 2001년 2건, 2002년 2건, 2004년 9건, 2005년 41건, 2006년 18건, 2007년 8건, 2008년 34건 등으로 최근에 올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동신문》에서 독도 관련 기사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65년 인데, 이는 1951년 이래 진행되어 오던 한일수교회담 교섭이 1964년 12월 3일의 제7차 한일회담을 계기로 거의 타결 직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조바심과 반발에 따른 것으로 그 배경이 분석된다. 이 시기의 기사들은 주로 한국과 일본의 독도 거래, 미국의 방조 등 한·미·일 3국의 대북한 안보협력 구도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 1965년 8월 5일자의 “독도는 흥정으로 될 수 없다”라는 기사, 동년 12월 17일자의 “매국문서교환 놀음과 함께 연방 벌리는 <회담>극” 등의 기사들을 들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주요 이슈로서 ‘한일어업 관련’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1967년 6월 10일자 《노동신문》의 “일본 배에 밀려 고기잡이를 못하는 어민들”, 1968년 1월 18일 “물고기를 못 잡아 파산몰락의 길을 걷는 남조선 어민들” 등의 기사들은 한일기본조약 체결이라는 한일수교로 인해 남한의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한일 양국을 동시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1978년 독도 관련 기사는 당시 한국의 영해 및 접속 수역법(1977.12.31) 및 시행령(1978.9.20)을 둘러싼 한일 간 접근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따른 것이며, 1986년 독도 관련 기사는 당시 일본 국회에서 행한 일본 문부상의 독도 망언에 대한 비난 기사인데, 전반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노동신문》에서 독도 관련 보도가 빈번하지 않았던 시기에 해당된다. 1980년부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본 관리의 독도 망언 관련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1992년 한국의 유엔 가입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해’ 표기 부당성 및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래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동해’ 표기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 도발에 대한 《노동신문》의 이슈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2000년부터는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기술된 독도 영유 주장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2004년에는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을 둘러싼 일본의 항의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그리고 2005년에는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비난하는 기사들 및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으며, 또한 2006년에는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

한 것에 대한 비난 기사들이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이슈들이 망라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있다.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는 이미 1971년 이래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로 기술되다가 1990년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신문》에서는 뒤늦게 2000년경부터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최초 기술이 1978년이었고 이후 19년 뒤인 1997년에 재언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본격 거론된 것은 한참 뒤인 2006년 경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독도’ 이슈를 북일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시작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노동신문》의 독도 기사와 북일관계 분석

《노동신문》의 연도별 독도 기사 현황과 북일관계 및 한일관계 일지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은데, 《노동신문》 독도 기사의 연도별 현황을 북일관계 맥락에서 그 연관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북일 수교 접촉 시기에는 북한이 독도 관련하여 일본을 비난하는 행위를 대체로 자제하는 편인 반면, 북일 수교 교섭이 결렬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는 북한이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을 다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50년대 북일관계의 주요 사건으로는 1956년 3월 6일의 ‘일북 무역회’ 결성 및 1959년 2월 25일의 ‘조총련 귀국선 북한 항발’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북일 접근 시기에는 《노동신문》에서 독도 관련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

〈표 4-2〉 《노동신문》 독도 기사와 한국-북한-일본 관계일지

북일관계	연도(기사건수)	한일관계
일북 무역회 결성(3,6)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7차 한일 회담(12,3)
	1965(11)	한일기본조약 체결(6,22)
	1966	
	1967(5)	
	1968(1)	
	1969(2)	
일북우호촉진의원연맹 결성(11,16)	1970	
	1971	
일북 무역촉진 합의서 채택(1,23)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1)	한국, 영해및접속수역법(1977.12.31), 시행령(1978.9.20)
	1979	
	1980	
	1981	
	1982	
	1983(2)	일본총리(나카소네) 최초 공식 방한(1,11~12)
	1984	
	1985	
	1986(1)	일본국회, 문부상 독도기술 방침 언급
	1987	
	1988	
	1989	
	1990	
북일 수교회담 1차(91,1)~8차(92,11)	1991	
	1992(1)	
	1993	
	1994	
	1995	
	1996	

북일관계	연도(기사건수)	한일관계
북일 수교 예비회담(8.21)	1997	
	1998(1)	한일어업협정 교섭 타결(9.25)
	1999	
북일 수교회담 9차(4.4~8) 개최 북일 수교회담 10차(5.22~26) 연기	2000(2)	일본 외교청서 '독도' 명기(7월) 일본 모리총리 독도방언(11월)
	2001(2)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4.3)
日 고이즈미 총리 1차 방북(9.17)	2002(2)	
	2003	
日 고이즈미 총리 2차 방북(5.22)	2004(9)	
	2005(41)	日 '죽도의 날(2.22)' 조례 제정안 가결(3.16)
	2006(18)	
1차 일북 관계 정상화 w/G회의(3.7~8) 2차 일북 관계 정상화 w/G회의(9.5~6)	2007(8)	
1차 공식 실무협의(6.11~12,북경) 2차 공식 실무협의(8.11~12,심양)	2008(34)	日 문부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명기(7.14)

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일 수교회담은 1991년 1월부터 시작하여 8차 회담까지 실시되었다가 이른해 문제로 인해 1992년 11월에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바 있었다. 1992년 11월 북일 수교회담 중단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1987년 이래 1991년까지 단 한 차례도 독도관련 보도가 없다가 1992년 10월 1일 《노동신문》 기사에서, “조선 사람들은 자기나라의 동쪽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 주간지 내용을 인용하면서 “조선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은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명칭이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에는 조선동해로, 남조선 지도에는 동해”라고 소개하는 등 ‘일본해’ 명칭 주장의 부당성을 제기했다.²⁸⁾

비록 1992년 말에 북일 수교 회담이 중단되긴 했지만 이후 수년 간 양측 간

²⁸⁾ 《노동신문》 1992년 10월 1일 참고.

에는 북일 수교 재개를 위한 접촉이 다각도로 시도되었고,²⁹⁾ 이후 2000년 4월 4~8일 평양에서 제9차 북일 수교교섭 본회담이 개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노동신문》에서 독도 관련하여 일본을 자극하는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³⁰⁾ 그러나 2000년 5월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10차 북일 수교 회담이 연기되자, 북한은 7월 26일 및 11월 11일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다시 일본의 독도 억지주장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2000년 7월 26일자 《노동신문》 6면에서 김종손은 “독도강탈 행위를 짓 부숴 버려야 한다”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당시 일본의 『외교청서』에 기술된 독도 주장을 비난하였으며, 2000년 11월 11일자 《노동신문》은 5면에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면서 일본 모리[森] 총리의 독도 망언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³¹⁾

일본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제1차 방북 및 평양선언이 발표된 2002년 9월 17일 이래 2003년 말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독도 관련 일본 비난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다가 2004년에 들어 일본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 중지를 요구하는 망언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북 이전까지 무려 8건의 독도 관련 기사를 《노동신문》에서

29) 1992년말 이래 북일 수교교섭 재개의 여러 시도로는, 1995.3 연립여당 대표단의 방북 및 수교교섭의 조기 재개를 권고하는 ‘4당 합의서’ 서명, 1997.8.21~22 일·북한 심의관 협의를 통해 제9차 수교교섭 본회담 조기 개최 및 적십자간 연락협의회 조속 설치 합의, 1997.9.6~9 일·북한 적십자 간 연락협의회 개최, 1999.12 일·북한 국장급 예비교섭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30) 다만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익일인 9월 1일에 일본은 대북한 제재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때 북한은 1998년 10월 13일자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 한일어업협정의 잠정수역 체결을 비난하는 전문가 글을 한 편 게재한 바 있을 뿐이다. “독도는 불가분리의 우리나라 영토이다” 《노동신문》 1998년 10월 13일 5면 참고.

31) 《노동신문》 2000년 7월 26일 6면, 2000년 11월 11일 5면 참고.

다루고 있다.

2004년 5월 22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독도 기사는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 현에서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22)’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북한의 독도 관련 기사는 2005년 한 해에만 무려 41건으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7월 14일에는 일본 문부성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기술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에 따라, 2008년도 《노동신문》에도 무려 34건의 독도 관련 기사가 언급되고 있다.

3) 《노동신문》의 독도 기사와 한일관계 분석

《노동신문》의 연도별 독도 기사 현황과 북일관계 및 한일관계 일지를 정리한 <표 4-2>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한일 접근 시기에는 한일 접근에 따른 북한 소외 우려와 견제의 필요에서 북한의 독도 관련 기사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신문》에서 독도 관련 기사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한일회담이 거의 타결되어 가던 1964년 12월 3일의 제7차 한일회담 이후부터다.³²⁾ 1965년 2월 23일자 및 2월 24일자 《노동신문》은 각각 “독도문제-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령토적 야망, 나라 령토까지 내어주는 친일 주구, 교활한 미제”라는 제목 및 “동해의 진주-독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정권과 일본과의 독도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난하고 있다. 또한 1965년 3월 5일자 《노동신문》은 “독도를 폭파해 버리려는 음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이 김종필-오히라 독도밀약을 보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거래 의혹을 집중

32) 《노동신문》 1965년 2월 23일 3면, 1965년 2월 24일, 1965년 3월 3일 3면 참고.

제기하는 한편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을 저지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일 수교교섭을 위한 접촉이 시도되던 1987년 이래 1997년까지의 근 10년 동안 《노동신문》에서 독도 관련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1998년 9월 25일에 한일 간 한일어업협정 교섭이 타결되자, 근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북한은 1998년 10월 13일자 《노동신문》에서 “독도는 불가분리의 우리나라 영토이다”라는 전문가 정남용의 기고를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공동구제수역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³³⁾ 비슷한 시기인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9월 1일에 대북한 제재조치를 발표했을 때에도 북한은 일본을 비난하는 독도 기사를 언급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일본의 대북한 관계악화 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견제의 카드로써 ‘독도’ 주장을 활용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써 한국의 독도 관련 기사들에 비해 북한의 독도 관련 기사에서는 일본의 독도 관련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6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을 비난하면서 《노동신문》 2006년 9월 21일자 6면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독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 독도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일본은 독도를 틀어쥐면 200마일 경제수역권을 통해 조선동해의 넓은 해상을 자기의 경제수역으로, <자위대>의 군사작전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특하기 그지없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노리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강짜를 부리면

33) 《노동신문》 1998년 10월 13일 5면 참고.

서 의도적으로 영토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³⁴⁾

특히 《노동신문》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언급할 때 거의 대부분 인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라고 시작하여 바로 이어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교시 내용이 인용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외에 최근에 와서 두드러진 특징으로써, 2008년 한국에서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한국 정부의 한일접근 경향을 친일정책으로 매도하면서 독도 기사를 활용하는 측면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신문》 2008년 5월 27일 5면의 “독도강탈야망을 부채질하는 친일매국노”, 2008년 7월 22일 5면의 “영토야망을 부채질한 친일굴욕행위” 등의 기사들을 들 수 있다.

2011년도에 나타난 《노동신문》의 기사 몇 건 역시 국내의 여느 언론매체에 서 같은 맥락으로 소개하고 있다.³⁵⁾ 납북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유골 사건으로 북·일 관계가 악화된 뒤부터 북한은 일본의 제국주의 본성을 드러낼 소재로 독도문제를 주로 활용해 왔다. 최근 2011년 8월 5일에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의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자기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해외팽창을 위한 재침야망이 뿔속까지 들어찬 일본 반동들만이 할 수 있는 망동”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8월 1일에는 《노동신문》이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우

34) “엄중한 단계에 이른 독도강탈야망” 《노동신문》 2006년 9월 21일 6면.

35) 이하 내용의 인용은 《뉴시스》(2011. 8. 12) 참고.

리 겨레는 조국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제의 과거 죄행과 함께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년 4월 3일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우리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글에서 “독도는 어제 오 늘도 그리고 머나먼 훗날에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라고 밝히기도 했다. 동년 8월 10일에는 《노동신문》이 ‘독도강탈 야망을 부추긴 조용한 외교’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겨레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 신성한 영토 문제로 이에 대한 양보나 묵인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죄악”이라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자세를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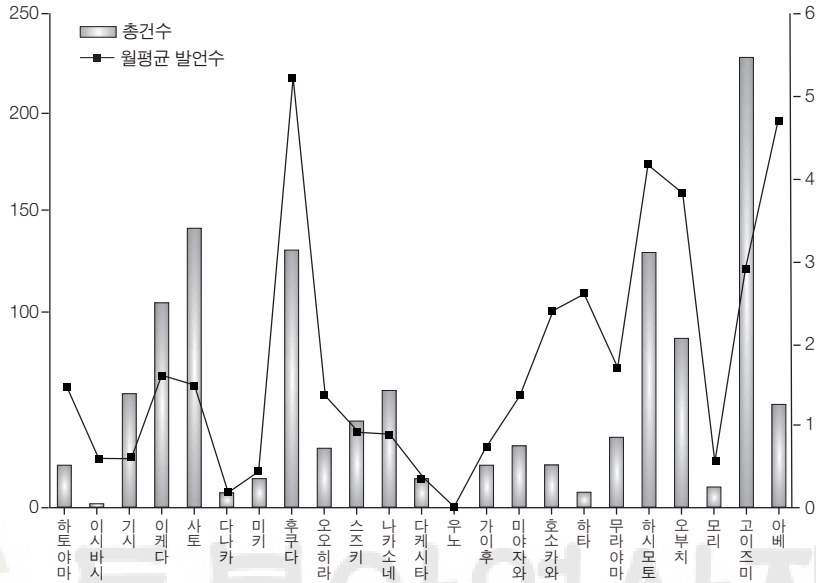
2. 일본 의회회의록의 독도발언 건수 분석³⁶⁾

일본 정권별 일본의회회의록의 독도 관련 발언횟수를 비교한 <그림 4-2>에 따르면, ‘총 발언건수’ 기준으로는 고이즈미 정권(228건), 사토[佐藤] 정권(140건),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정권(130건), 하시모토[橋下] 정권(1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총리 재임기간을 반영한 ‘월평균 발언건수’ 기준을 보면, 후쿠다 다케오 정권(월 5.2건), 아베[安倍] 정권(월 5.1건), 하시모토 정권(월 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정권별로 구분하여 일본정권별 의회의 독도발언 건수와 비교한

36) 구체적 사항은 배진수,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 : 미국·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배진수 외(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4~38쪽 참고.

〈그림 4-2〉 일본정권별 일본의회 의 독도발언 횟수



〈표 4-3〉에 따르면, 일본의회 의 독도발언 전체 횟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정권-한국정권’은 ‘고이즈미-노무현’ 정부(총 193회)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후쿠다 다케오-박정희’ 정부(130건) 및 ‘하시모토-김영삼’ 정부(총 101건) 시기로 나타난다. 또한 각 정부의 재임기간을 반영한 월평균 독도발언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후쿠다 다케오-박정희’ 정부시기에 일본의회 의 월평균 독도발언 횟수가 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 순으로 ‘아베-노무현’ 정부(월평균 5.1건), ‘하시모토-김대중’ 정부(월평균 4.6건), ‘고이즈미-노무현’ 정부(월평균 4.4건), ‘하시모토-김영삼(월평균 3.8건)’ 정부 등으로 각각 나타난다.

요약하면, 일본 정부의 경우 최근 순으로 ‘고이즈미 정부(2001.4.24~2006.9.26)’ ‘하시모토 정부(1996.1.11~1998.7.30)’ ‘후쿠다 다케오 정부(1976.12.24~1978.12.7)’ ‘사토 정부(1964.11.9~1972.7.7)’ 등에서 특히 독도관련 의회발언이 많았

〈표 4-3〉 일본정권별 및 한국정권별 일본의회 의원 발언 횟수

	이승만	허정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하토야마	22 (月1.5건)									
이시바시	2 (月0.6건)									
기시	54 (月1.3건)	2 (月0.4건)	1 (月0.2건)							
이케다			7 (月1.1건)	96 (月2.2건)						
사토				140 (月1.5건)						
다나카				7 (月0.2건)						
미키				14 (月0.5건)						
후쿠다				130 (月5.2건)						
오오히라				18 (月1.6건)	12 (月1.3건)					
스즈키					1 (月0.3건)	42 (月1.5건)				
나카소네						59 (月0.9건)				
다케시타						1 (月0.25건)	13 (月0.7건)			
우노							0			
가이후							22 (月0.7건)			
미야자와							18 (月1.1건)	13 (月1.8건)		
호소카와								22 (月2.4건)		
하타								8 (月2.6건)		
무라야마								35 (月1.7건)		
하시모토								101 (月3.8건)	28 (月4.6건)	
오부치									85 (月3.8건)	
모리									9 (月0.6건)	
고이즈미									35 (月1.5건)	193 (月4.4건)
아베										51 (月5.1건)

던 것으로 집계되며,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본의회의 독도발언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 외에도 이벤트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가능한 아젠다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분쟁론의 ‘속죄양 가설’(scapegoat hypothesis)에 따라 국내적 지지율 하락이나 국내적 불만에 직면한 정권일수록 국면전환을 위해 외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과연 일본의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역대 일본정권의 ‘참의원선거 참패 이후 정권퇴진 사례’로서는 1989년 7월 23일 제15회 참의원선거 참패(126석 중 36석 당선)에 따른 우노[宇野] 정권의 퇴진(1989.8.10) 사례, 그리고 1998년 7월 12일 제18회 참의원선거 참패(126석 중 44석 당선)에 따른 하시모토 정권의 퇴진(1998.7.30) 사례 등 2건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2건의 정권퇴진 경우(우노 퇴진/하시모토 퇴진), 정권교체 후 대략 3개월 시점인 당해년도 11월경쯤 새 정부에서 독도 관련 강경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테면, 1989년 8월의 우노 정권 퇴진 당시 동년 11월 28일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1척이 독도영해를 침범한 사례가 있고, 1998년 7월의 하시모토 정권 퇴진 당시에는, 동년 11월 5일에 일본이 독도영해가 포함된 한미연합훈련구역 설정에 대해 항의하는가 하면 11월 6일에도 포항-울릉도간 정기여객선 독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한국에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선거 사이클(election cycle)과 대외도발의 연관성’ 관련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선거 이전 시기’ 보다는 정책추진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선거승리 이후 시기’에 대외도발의 경향이 더 높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테면 일본의 경우, 과거 후쿠다 다케오 총리 당시 중의원총선(1976.12.5) 2개월 후 ‘일본 항공기의 독도영공 침범’ 도발로

인해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된 전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기술 분석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0년 이래 매년 7~8월경 방위성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통상 방위성에서 작성된 초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되며 각국 무관 대상 설명회를 거친 후 각료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관련 내용

2011년 현재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죽도[竹島 : 다케시마,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관련 언급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78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78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긴 했으나 그 이후 근 20년 동안은 ‘독도’ 기술이 없다가, 최초 언급된 지 19년 뒤인 1997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다시 재언급되면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외무성의 『외교청서』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인 1978~1987년 및 1990~1992년 동안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계속 기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1978년 최초 언급된 이래 19년간 없다가 1997년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판 일본 『방위백서』부터는 표현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어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그 이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의

2005년도판에서 ‘일본 고유영토’ 표현이 추가된 배경에는 아마도,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한 일본의 교과서가 2005년도 검정본부터 등장한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2005년도 중학교 공민 교과서 검증본 중 2군데(후쇼사 및 도쿄서적)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처음 기술하기 시작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한편, 2008년도 『방위백서』 작성 과정에서 한 때 일본내 일부에서는 표현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 추가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초안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예년처럼 ‘일본 고유영토’ 표현이 2011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일본은 1957년부터 『외교청서』를 발간했으며 1963년부터 독도 영유권 기술을 넣기 시작했다. 이후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면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2004년만 해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넣었다 빼다 해도 될 정도로 일본사회 내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⁷⁾ 또한 일본의 『외교청서』에서 1971~1987년까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표현을 사용해 오다가 1990년부터는 “고유영토”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기술해 오고 있는데,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 및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부분을 간략히 비교하면 <표 4-4>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 이래 발간되기 시작한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78년이었고, 이후 사라졌다가 19년 만인 1997년에 독도 관련 기술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적 분석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이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독도영유 주장을 처음 기술하기 시작한 시기가 왜 하

37) 《경향신문》(2011. 4. 2).

〈표 4-4〉 일본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 비교

	『방위백서』	『외교청서』
발행기관	방위성	외무성
발행시기	매년 7~8월	매년 4~5월
최초 발간연도	1970년	1957년
독도 언급 최초 발간연도 등	1978년, 1997년~	1963년, 1966년, 1971년~1987년, 1990년~1992년, 1997년, 2000년~2001년, 2003년~
독도관련 내용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이 표현	※ “고유 영토”: 2005년~	◇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1971~1987년 ◇ “고유 영토”: 1990년~ ◇ “동해 명칭문제”: 2003년~

필이면 1978년일까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연유로 최초 언급 이래 19년만인 1997년에 다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재언급 되기 시작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는 1978년과 1997년 전후 시기의 국제정치적 변수를 반드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독도문제의 실증적 접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된 시기가 왜 1978년인가?

일본 『방위백서』의 1978년판에서 최초로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년 4월에는 센카쿠제도 주변수역에서 중국어선들에 의한 영해 침범사건이 발생하여 북방영토문제 및 竹島문제와 함께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국제

정세의 현실을 다시 한번 통감하였다.(1978년판 일본 『방위백서』)

문맥상으로는 1978년 4월의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도서분쟁 발생 때문에 한일 간 독도문제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1978년부터 독도문제를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센카쿠(조어도) 도서를 둘러싼 우발상황(대만선박의 대만국기 게양시도)은 이미 그 보다 앞선 1970년 9월 2일에도 발생했던 적이 있었지만, 당시 일본 『방위백서』(1970년판, 1976년판, 1977년판)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8년의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 언급된 배경은 그 시기에 발발한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도서영유권분쟁에 따른 경각심 차원일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된 1978년도의 국제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19년만에 독도가 재언급된 1997년의 국제정치적 상황 분석과 연계시킴으로써, 이하에서는 분석의 한 예로서 몇 가지 관련 일지를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왜 19년뒤인 1997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재언급되었는가?

1978년의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 언급된 이래 19년만인 1997년에 다시 등장하게 된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북방영토 및 竹島(다케시마 : 독도의 일본식 명칭), 조선반도, 남사군도 등의 제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1997년판 일본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백서가 최초로 발간된 1970년도 이래 현재까지 『방위백서』의 독도 명기 관련 내용과 국제정치·안보적 일정표를 정리한 <표 4-5>에 의하면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파악된다.

우선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된 1978년 시점과 19년만에 재언급된 1997년 시점의 공통적인 국제정치 변수로써 미국과 일본 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제정·개정 사실이 쉽게 주목된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주변 및 극동지역에서의 유사시 미·일 간 공동방위협력 범위 등에 관한

<표 4-5>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명기와 국제정치·안보적 변수

일본 『방위백서』	연도(국제정치적변수)
최초 발간	1970
	1977(美지명위원회, ‘독도→리앙쿠르 락스’ 표기변경)
“독도” 최초 언급	1978(미일방위협력지침)
“독도” 언급 없음	1979~1996
“독도” 재언급	1997(미일신방위협력지침)
“북방영토, 독도, 남사군도 등의 제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	1998
	1999
	2000
	2001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	2002
	2003
	2004
	2005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	2006(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
	2007
	2008(美지명위원회, ‘독도 주권국 표기변경’ 시도)
	2009
	2010
	2011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일본의 중·장기 방위계획의 골격에 해당되는 ‘방위계획대강(大綱)’ 수립 후 대략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마련되는 경향을 보인다.³⁸⁾ 이를테면, 1976년 10월의 일본 ‘방위계획대강’ 수립 후 2년 뒤인 1978년 11월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처음 제정된 바 있고,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이 20년 만에 수정된 ‘前방위계획대강’(1995, 11) 수립 2년 뒤인 1997년 9월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 역시 개정된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2004년 12월에 다시 ‘新방위계획대강’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미일신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이 미국과 일본 간에 2006년 4월 이래로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독도’ 유사시 경우가 과연 미일방위협력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본에게 매우 중대한 현안이고, 따라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시 그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에게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과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지난 1996년 초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문제로 일·중 간에 영유권분쟁이 재연된 바 있는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센카쿠제도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일 공동방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센카쿠 영유권분쟁이 재연되었던 1996년 10월 당시 월터 먼데일 일본 주재 미국대사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센카쿠제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반면, 1개월여 뒤인 11월 당시 미국방성 아태방위 정책 실무책임자인 켄벨 부차관보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제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히는 등 다소 혼선이 있는 듯도

38) 향후 10년간 일본의 군사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위계획대강’은 1975년, 1995년, 2004년, 그리고 2010년 등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39) 이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배진수(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참고.

했다.⁴⁰⁾ 최근 2000년대 후반의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갈등 재발시에는 미국이 센카쿠 제도가 미일방위협력의 적용 대상지역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줄곧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나 사실상 현재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므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지난 1997년 4월 15일에도 이케다(池田) 외상이 참의원 안보토지사용 특별위원회에서 재차 확인한 바 있었다.⁴¹⁾ 이는 일본이 독도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의식하여 가급적 미국의 개입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공교롭게도 미일방위협력지침 제개정 시점인 1978년 및 1997년의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었다가 다시 언급된 배경에는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닌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한미안보관계 및 일미안보관계가 중첩된 ‘독도’ 유사시 경우를 미일방위협력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궁극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관련 미국의 중립적 입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시 한미안보관계와의 역학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독도관련 미국의 개입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닌 ‘한일 간 미해결된 분쟁지역’ 내지 ‘주권미지정 지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08년 7월에 미국 국립지리원(NGA)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관련 주권국 표기를 당초의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상복귀시킨 일련의 과정을 다시 주목해

40) 《조선일보》(1996. 10. 5, 1996. 11. 29). 미국의 정책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터뷰 대상 매스미디어가 일본과 미국의 언론기관으로 달라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41) 《한국일보》(1997. 4. 16).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06년 4월 이래 일본과 미국 간에 ‘미일신방 위협력지침’의 재개정 작업이 2년여 난항 중이던 2008년 7월에 갑자기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국 표기변경’ 시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외에도, 미국의 국립지리원(지명위원회)이 국방성 산하기관이라는 점, 1978년 최초의 ‘미일방위협력지침’ 마련 당시인 1977년 7월 14일 시점에 미(美)지명위원회가 그 때까지 사용해 오던 ‘독도’ 표기를 중립적 용어라고 볼 수 있는 ‘리앙쿠르 락스(Liancour Rocks)’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처음 결정한 사실도 있다.

4.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분석

1)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내용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기술한 일본의 2003학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2002년 4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문부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86년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켰던 고교용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의 개정판인 『최신 일본사』를 비롯해 도쿄[東京]서적, 시미즈[清水]서적 등이 제출한 총 6종의 교과서 검정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신 일본사』는 “우리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로 있으며, 한국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을, 중국이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따오<釣魚島> 또는 다오위타이<釣魚台>]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⁴²⁾

42) 《연합뉴스》(2002. 4. 9).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한 교과서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도 검정본부터이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2005년도 공민 교과서 검증본 중 2군데(후쇼사 및 도쿄서적)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처음 기술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경우는 2006년도 검정본 1종(清水 출판사의 『신정치경제』 검정본)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처음 기술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도 검정본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교과서가 4종으로 더 늘어났다(제국서원 출판사의 『지리A』, 二宮 출판사의 『지리역사』, 清水書院 출판사의 『정치경제』 및 『현대사회』 등 4종).

이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7년 3월 30일 2008년도의 지리·역사 등 205종의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했는데, 고교 2·3학년의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문부성은 일본사 A·B과목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독도와 관련, 검정 신청본의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문제 발생”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아 삭제했다.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문부성은 “센카쿠열도나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과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으며,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토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게 했다.⁴³⁾

2008년 7월 개정된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기존의 러일 간 남쿠릴도서(북방도서)와 관련한 “일본의 고유영토” 및 “러시아의 불법점거” 기술에 추가하여,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

⁴³⁾ 《서울신문》(2007. 3. 31).

장의 차이가 있다 …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을 언급하는 등 북방영토와 같은 식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⁴⁴⁾ 이어 2009년 12월 발표한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비록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라”는 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식을 택하긴 했지만, 맥락은 결국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와 같은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3월 30일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1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도 기술을 강화한 바 있다. 통상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에서 10년 단위로 검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지난 2009년 3월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 독도 영유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지도를 포함하라는 검정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10년 3월 발표된 검정결과에서는 실제로 기존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독도 관련 표현이나 지도가 전혀 없었던 2개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킨 경계선까지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표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4종, 공민 7종, 역사 7종 등 총18종)의 검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일본 교과서의 본문 또는 지도 등에서 독도기술이 예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강화된 것으

44)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문부과학성이 과목별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을 제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보완용으로 별도 작성되는 해설서로서 통상 ‘학습지도요령’ 공표 3~4개월 후 발표된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지난 2008년 2월 15일부터 1개월간의 의견수렴 예고기간을 거쳐 동년 3월 28일 고시되었는데, 당시에는 한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감안하여 독도 관련 사항이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일단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전후 8번째 개정에 해당되는데 대략 10년 내외의 주기를 두고 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로 나타났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독도기술 교과서가 기존의 10종(지리 6종, 공민4종)에서 2011년 검정결과 14종(지리 4종, 공민 7종, 역사 3종)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사회과 교과서 종수를 기준으로 독도기술이 포함된 교과서 비율을 보면 기존의 43.5%에서 2011년 검정결과 77.8%로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일본 교과서의 지도상으로 독도를 ‘죽도(竹島)로 표기’하거나 ‘국경선을 그어 일본영토로 표시’하거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시키는 등의 독도기술 행태가 기존에는 모든 지리교과서(6종)와 공민교과서 일부(3종)였는데, 2011년 검정결과에서는 모든 지리교과서(4종)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모든 공민교과서(7종)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역사교과서 일부(2종)에도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독도기술의 수위가 질적으로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는 첫째로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이 기존의 1종(공민 1종-扶桑社)에서 2011년 검정결과 4종(지리 1종-日本文教出版, 공민 3종-東京書籍·扶桑社·自由社)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교과서 채택률이 무려 60%에 달하는 ‘동경서적’의 공민교과서에 “불법점거”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수는 ‘3종’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일부 교과서에서도 “불법” 어구를 빼고 대신 “한국이 점거”(지리 1종-東京書籍, 공민 1종-清水書院) 또는 “한국이 점령”(공민 1종-自由社)이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또한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의미로 보면, 2011년 검정결과에서는 “한국의 (불법) 점거(점령)” 기술 교과서가 기존의 불과 1종(공민)에서 무려 7종(공민 5종, 지리2종)으로 대폭 증가된 셈이다. 둘째,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도 기존의 2종(공민-扶桑社·東京書籍)에서 8종(지리 3종, 공민 4종, 역사 1종)으로 강화되었다. 셋째로, 2011년 검정결과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본문 기술이 1종(교육출판), 그리고 지도표기가 2종(제국서원·일본문교출판)으로 독도기술이 이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로, 교과서로는 처음으로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본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구체적인 논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기존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최근 2011년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교과서의 검정결과 발표 일정이 2012년 고등학교, 2013년 고등학교,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 2016년 고등학교, 2017년 고등학교 등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로 인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영유권’ 논란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배경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에서 일련의 독도 도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짚어 보기로 하자. 비록 ‘해설서’가 교과서 검증시 ‘학습지도요령’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로 거의 모든 교과서 출판사들이 이 해설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편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실제 수업시 학생 지도에도 직접 참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

45)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관련 긴급 세미나 자료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한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점검, 무엇이 문제인가?〉(2011.3.31) 및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심층분석 국제학술회의〉(2011.6.9) 등 참고.

이 명시될 경우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공민, 지리)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술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2011년 3월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일·러 간 영토분쟁지역인 ‘북방영토’의 경우 관련사항이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고 해설서에만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들이 일제히 북방영토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일 간 첨예한 마찰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⁴⁶⁾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명기를 굳이 강행했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⁴⁷⁾

우선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실태 추이를 통해 대략 살펴볼 수 있다. 2005년 3월 이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당시 문부과학상이 독도 기술과 관련해 “다음 (2008년 고시 예정) 학습지도요령에는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2007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증과 관련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을 출판사에 요구한 바 있었으며, 2008년 3월에는 보수파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가 독도의 일본영토 기술을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여 2008년 3월 28일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를 명기하지 않았고 대신 2008년 7월 해설서에 독도 명기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6)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죽도(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당시 2008년 5월 18일자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가 즉각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단호한 대처 입장을 밝혔을 정도였다.

47) 이하 내용은 배진수(2008), 「국제사법재판소, 아시아 영유권 분쟁에서 공식간행물 기록에 주목」, 『월간조선』 7월호, 232~234쪽 참고.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앞서 살펴 본 대로 일본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한 것은, 이미 일본의 일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기술되고 있는데 굳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명시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⁴⁸⁾ 이를테면 2008년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전에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지리 6개 출판사 중 1곳과 공민 8개 출판사 중 3곳의 교과서에서는 이미 독도관련 기술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 후소샤 및 동경서적 등 2개의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까지 기술되어 있는 등 교과서 왜곡 실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교과서 왜곡은 중학교 경우 2005년도 검정본 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경우 2006년도 검정본 부터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점인 2008년 5월 23일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페드라 브랑카(싱가폴 지명)/푸라우 바투 푸테(말레이시아 지명)’ 도서영유권 분쟁의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아시아지역의 도서영유권분쟁으로는 두 번째 ICJ 판결로써 독도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판결 내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양 당사국의 ‘공식 발간물(official publication)’ 상의 영유권 관련 기술을 유효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싱가포르의 정부 발간물에서는 ‘페드라 브랑카 섬’의 등대가 싱가포르 소속 등대목록에 추가되어 있는 데 반해 말레이시아 정부 발간물의 ‘등대 목록

48) 같은 맥락으로, 동년 2008년 3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독도 홍보용 팸플릿 역시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왔던 기존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왜 금번에는 굳이 ‘14쪽 분량의 팸플릿’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록'에는 이 섬이 누락되어 있음을 들어 재판부에서는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유리하게 판단한 바 있다. 공식 발간물(official publication)에서의 영유주장이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가 된다고 가정할 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독도영유 주장을 2008년 2월에 발간된 것 처럼 '독도 홍보용 팸플릿' 같은 공식 발간물 형태로 새로 제작하는 작업이다. 또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기술된 기존의 일본 출판사 (검인정)교과서에 비해 정부의 공적(official) 성격이 보다 강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내지 '해설서'에 직접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작업 등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독도 홍보용 팸플릿' 및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내지 '해설서'는 정부의 공식 발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이 그 만큼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2010년 3월의 일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독도기술 강화, 2011년 3월의 일본 중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독도기술 강화에 이어, 2012·2013년에도 계속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본이 발표되는 상황이어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강화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일본의 전방위적인 독도 도발의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리고 도대체 어떠한 저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예측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독도문제를 보는 입장과 스펙트럼이 정부 각 부처 간에는 물론 국제법·역사·국제정치의 전공분야별, 학자별, 시민단체 등 서로 간 편차 또한 다소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침탈사로부터 비롯된 독도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함은 물론 일본의 독도도발 행태에 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

석을 통해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보다 실증적이고 설득력있는 논거를 통해 바른인식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결국은 중·장기적인 대비책 강구 차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독도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3) 한국의 독도 교육 강화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강화될수록 한국에서의 독도 교육 또한 강화되었다. 1996년 9월 2학기부터 전국 1만 9천여 개 초등(국민) 학교 4학년에서 사용되는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대폭 수록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화산섬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우나 고기잡이와 국방상 중요하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취급돼 왔다. 1996년 당시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국초등학교에 배포기로 한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따르면 ‘해안과 섬지역의 생활’이라는 대단원안에 ‘독도’라는 소단원을 넣어 독도에 관한 내용을 3쪽에 걸쳐 싣고 있다.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무려 3쪽 분량으로 다뤄지기는 이때가 처음으로 당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관련해 독도교육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1984년 방송금지됐던 <독도는 우리땅(박인호 작사·작곡)>이라는 가요가 5절까지 수록됐으며 사진에는 ‘독도의 전경’·‘동도 서도 독도의 어민’·‘바다를 감시하는 독도의 우리 경찰’ 등 다섯 장면도 게재돼 있다.⁴⁹⁾

경상북도교육청은 2009년 2월에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정규 수업 시간에 적용하고자 ‘영원한 우리 땅 독도’를 지도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독

49) 《연합뉴스》(1996. 2. 16).

도』를 도교육감 인정 도서로 개발해 도내 초등학교를 비롯, 전국 시·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에 배부한 바 있다. 당시 발간해 배부한 『독도』 인정 도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동해 해저 지명의 일본식 표기 등의 만행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국 최초로 국가 영토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정규 교육 과정에 적용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지도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자료에는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인 인정 도서 2종과 컴퓨터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CD-rom 자료 1종을 포함한 총 3종이 들어 있다.⁵⁰⁾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어 2009년 4월에는 중·고등학교 독도 관련 수업과 재량·특별활동 및 행사 등에 교사들이 참고할 장학자료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를 개발해 학교와 교육청 등에 배부하기도 했다.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는 독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역사와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독도 영유권, 독도와 국제법,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수업지도안 예시자료를 제시해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¹⁾

2010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의 독도기술을 더욱 강화시킴에 따라,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독도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해 초등·중·고등 학교급별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마련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도부터 ‘독도’를 범교과 학습주제로 편성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⁵²⁾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초등학생용 독도부교재인 『독도 바로 알기』(2011년 8월), 중학생용 독도부교재인 『영원한 우리 땅 독도』(2011년 12월), 고등학생용 독도부교재인 『독도 바로 알기』(2011년 12월),

50) 《브레이크뉴스》(2009. 2. 10).

51) 《뉴시스》(2009. 4. 13).

52) 《네이트 뉴스》(2011. 3. 10); 《한겨레》(2011. 3. 10).

독도교육 참고자료인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2011년 12월)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일본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왜곡 기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5. 미국 정권교체의 독도 관련성 분석⁵³⁾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미국정부의 정권교체 현황 및 재임기간’을 정리한 <표 4-6>에 따르면, 미국의 공화당 정부 및 민주당 정부의 ‘집권횟수’와 ‘집권기간’은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권횟수’로는 공화당

〈표 4-6〉 역대 미국의 정권교체와 재임기간 : WWII 이래

대통령	정 당	재 임 기 간	
		임 기	기 간
트루먼	민주당	1945.4 ~ 1953.1	7년 9개월
아이젠하워	공화당	1953.1 ~ 1961.1	8년
케네디	민주당	1961.1 ~ 1963.11	2년 10개월
존슨	민주당	1963.11 ~ 1969.1	5년 2개월
닉슨	공화당	1969.1 ~ 1974.8	5년 7개월
포드	공화당	1974.8 ~ 1977.1	2년 5개월
카터	민주당	1977.1 ~ 1981.1	4년
레이건	공화당	1981.1 ~ 1989.1	8년
부시(Ⅰ)	공화당	1989.1 ~ 1993.1	4년
클린턴	민주당	1993.1 ~ 2001.1	8년
부시(Ⅱ)	공화당	2001.1 ~ 2009.1	8년
오바마	민주당	2009.1 ~	

53) 구체적 사항은 배진수,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 : 미국·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배진수 외(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9~33쪽 참고.

정부와 민주당 정부 각 6회씩 집권한 셈이 되며, ‘집권기간’으로는 오바마 정부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공히 각 36년간 집권한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정책방향 등에 미치는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통제 변수’(control variable)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대 미국정부의 안보정책 양상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미국정부의 정당교체 자체가 미국 안보정책의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정부의 안보정책은 정당에 관계없이 서로 공통점과 상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같은 공화당 정부 중에서도 아이젠하워와 닉슨 정부의 안보정책은 레이건 정부의 정책과 많이 달랐으며, 같은 민주당 정부 중에서도 트루먼 정부의 안보정책은 카터 정부의 정책과 많이 달랐다. 한편 정당을 달리하는 공화당 닉슨 정부와 민주당 카터 정부의 안보정책은 상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으며, 또한 공화당 부시(겔프전 당시) 정부와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안보정책 역시 상이점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을 더 많이 보여왔다.⁵⁴⁾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안보정책 변화의 주요 변수는 미국정부의 정당교체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국내적·국제정치적 상황 변화와 더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닉슨-포드 그리고 카터 정부시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자체가 월남전의 패배와 데탕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레이건 정부시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제3세계에 대한 적극적 군사개입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의 악화된 미소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독도 입장’에 있어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 간에 과연

54)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국방·군사정책에 관한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윤미영(1997.1),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권교체와 국방·군사정책 변화」, 『한국군사』 제4호, 274~288쪽 참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독도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미국 입장은 한·일 간 독도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양 당사국 간 해결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2008년 미국 대선에서도 ‘독도’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별 독도관련 사건일지를 비교한 <표 4-7>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첫 번째 특징으로써 미국이 개입된 ‘독도’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공교롭게도 역대 미국의 ‘민주당 집권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 등 일본의 영토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이 수 차례 수정되면서 작성된 시점과,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되어 마침내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시점이 모두 민주당 트루먼 정부때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때 마련된 최종 초안에서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는 도서 목록에 독도가 누락됨으로써 한일간 독도 영유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52년 4월 28일 체결된 미일행정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훈련구역으로 결정한 1952년 7월 26일, 그리고 이에 따라 SCAPIN 제2160호를 통해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Liancour Rocks)’로 표기하면서 주일 미공군 훈련구역으로 지정한 1952년 9월 15일 시점도 민주당 트루먼 정부 시기에 해당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77년 7월 14일에 미국 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Liancour Rocks)’로 변경하기로 처음 결정한 시기도 바로 민주당 카터정부 시기라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미국 정부 집권기간의 ‘첫 연도’나 ‘마지막 연도’에 독도 관련 입장 및 정책의 변경이 시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처리에 관한 대일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 1949년 11월

〈표 4-7〉 역대 미국의 정권교체와 독도 관련성

연도	한국정부	미국정부	독도관련성
1945		54. 4	
	48. 8. 15	민주당(트루먼)	
1950	이승만	53. 1	51. 9. 8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독도 누락) 서명 52. 7. 26 : '독도-주일 미공군 훈련구역' 결정 53. 3. 19 : '독도-주일 미공군 훈련구역 제외' 결정
1955		공화당 (아이젠하워)	
1960	60. 4. 19 장면	61. 1	
	61. 5. 16	민주당(케네디)	
1965		63. 11 민주당(존슨)	
1970	박정희	69. 1 공화당(닉슨)	
1975		74. 8 공화당(포드)	
1980	79. 10. 26	77. 1 민주당(카터)	77. 7 : 미지명위원회, '독도→리앙쿠르 락스' 표기변경 78. 11 : 미일방위협력지침
	80. 9. 1 전두환	81. 1	
1985		공화당(레이건)	
	87. 12. 16		
1990	노태우	89. 1	
	93. 2. 25	공화당(부시 I)	
1995	김영삼	93. 1 민주당(클린턴)	97. 9 : 미일신방위협력지침
2000	98. 2 김대중	01. 1	
2005	03. 2 노무현	공화당(부시 II)	
2010	08. 2 이명박	09. 1 민주당(오바마)	08. 7 : 미지명위원회, 독도 주권국 표기변경 시도 12 : 미일신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06 이래 협의)

2일 미국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당시 주일본 미국 고문이었던 시볼트의 로비로 인해 1949년 12월 29일의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변경된 적이 있었는데, 이 시기는 바로 '민주당 트루먼 정부의 재집권 첫 연도'에 해당된다. 또한 독도가 주일 미공군의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던 1952년 7월 26일은 '민주당 트루먼 정부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 된다. 한편 그 이듬해인 1953년 3월 19일에 독도가 미공군 훈련구역으로부터 제외됨으로써 정책변경이 있었던 시기는 '공화당 아이젠하워 정부의 첫 연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기로 최초 결정한 1977년 7월 14일은 바로 '민주당 카터 정부의 첫 연도'에 해당되며, 최근 2008년 7월에 미국 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 주권국 표기를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했던 시기는 '공화당 부시정부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써 미·일 안보협력의 대부분이 '민주당 집권시기'에 성사되었는데, 이를테면 1951년 9월의 미일안보조약(민주당 트루먼), 1952년 7월 독도의 미공군 훈련구역 지정(민주당 트루먼), 1978년 11월 미일방위협력지침(민주당 카터), 1996년 4월 미일안보공동선언(민주당 클린턴), 1997년 9월 미일신방위협력지침(민주당 클린턴)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사실은 향후 미국정부 출범시 '첫 연도(하니문기간)'와 '마지막 연도(레임덕기간)'의 독도 관련 정책과 입장 변화여부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부의 독도 관련성 및 미일안보협력 성사여부가 공화당 정부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경향이 있으므로 미국의 민주당 출범시 독도관련 입장 변화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정교한 영유논리로 일본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

분명한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땅이며, 따라서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칫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응 수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매년 2월 22일 개최되는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 경우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일 때에는 우리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지방정부인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억지 영유주장 논리를 스스로 단념케 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논리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본의 식민침탈 과정에서 초래된 독도문제의 본질을 국제사회에 널리 이해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국제사회의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입증자료를 발굴하고 보강하는 작업이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입증하는 작업과 함께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작업도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일본이 주변국과의 영토문제 즉,

러·일 간 남쿠릴(북방도서) 문제와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문제 및 한·일 간 독도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상호 모순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이 센카쿠(조어도)에 대한 자신들의 실효지배는 인정하는 반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북방영토(4개 도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탈을 주장하는 반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는 ‘무주지 선점’ 내지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등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바르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리를 보강하고 새로운 영유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지리·국제법·국제정치학 등 학제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구축된 우리의 영유논리를 국제사회에서 성과확산으로 연계시키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성격상 민족적 정서가 개입되기 쉬운 영토 및 역사 갈등일수록 보편적 기준과 가치에 의거한 국제사회의 바른 인식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입장 역시 민족주의적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와 우호적인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영토 및 역사 갈등과 관련한 우리 입장의 국제적 성과확산과 바른 인식의 효과적 전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식민침탈사로 초래된 영토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침탈한 국가의 반성과

55) 세계 대륙별 분쟁지역에서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NGO네트워크의 역할과 기여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배진수·강성호(2008), 『세계분쟁 해결과 NGO네트워크』, 동북아역사재단 및 Sungho Kang, John W. McDonald, and Chinsoo Bae eds.(2009),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Building : The Role of NGOs i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Territorial Issues* (Seoul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9) 등 참고.

결단에 있으며, 이것이 21세기 지구촌의 보편적 해결모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식민침탈로 인한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해내는 작업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다.⁵⁶⁾ 이를테면 식민침탈 과정에서 비롯된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당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의 영토를 되돌려준 몇 가지 바람직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은 일본의 독도 침탈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클 것이다.

1900년대 초 피식민국가인 쿠바와 식민국가인 미국 간의 ‘후벤투드(Juventud) 섬’ 영유권분쟁의 경우, 미국은 1904년 협정에서 쿠바의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1907년에는 ‘후벤투드섬 생산 담배의 관세 관련 판례’에서 미국 대법원조차도 후벤투드 섬은 쿠바의 영유권이 인정되므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피식민국가 도서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해주면서 되돌려준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피식민국가인 쿠바의 도서 영유권을 인정해주면서 협정까지 맺었던 1904년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양에서는 식민국가 일본이 피식민국가인 한국 영토 독도를 불법 편입하려던 시점이었던 점에서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예로서 영국과 미국 간의 ‘산후안(San Juan) 섬’ 도서 영유권분쟁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도서분쟁은 1872년 제3자인 독일 빌헬름 1세의 중재로 영국이 미국에게 ‘산후안 섬’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고 영국이 군대까지 철수함으로써 도서영유권분쟁이 식민국가의 결단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이다.

56) 세계의 영토분쟁 데이터베이스(ICOW)에 의거 추출된 식민침탈 관련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 12건(도서영유권분쟁 6건 포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배진수·윤지훈(2008),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참고. 책 출간 당시 《조선일보》의 “그들에게도 ‘독도’는 있었다” 기사로 소개된 바 있다(2008년 4월 15일자 25면 참고).

이 역시 오늘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단순히 인정하는 과거 식민국가 일본의 결단을 요구하는 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식민지배 처리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 영토문제일 경우에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원래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영토갈등을 순리대로 풀어 나가려는 국가적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2. 대상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

향후 유사시 독도문제가 국제공론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G20 등 국제사회의 제3국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성 여부'와 '도서분쟁 경험여부' 및 '(피)식민국 경험여부'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와 논리로써 국제사회의 제3자를 설득력있게 납득시킬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고, 국제사회 제3국의 경우에는 각국의 관심도와 이해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여러 복합적인 변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도와 같은 도서영유권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다를 수 밖에 없고, 한국처럼 식민침탈사를 경험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제국주의 경험의 국가들 간에도 국가 간 영유권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독도영유권 논리를 보강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독도영유 논리를 국제사회의 서로 다른 경험을 보유한 제3국의 국가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있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우선 이들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⁵⁷⁾ G20 회원국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오일쇼크를 계기로 1974년 등장한 'G5(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에 '이탈리아'가 1975년 추가됨으로써 'G6', 1976년에 '캐나다'가 추가되면서 'G7', 1998년 러시아가 추가되면서 'G8'이 되었으며, 기존의 G7+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합친 'G11', 이 외 G13, G14, G15, G17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왔다. 1990년대 후반의 글로벌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1999년 'G20 재무장관회의'가 출범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후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08년부터 'G20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왔다.⁵⁸⁾

1) G20 국가들의 도서(영토)분쟁 경험여부

G20 국가들의 도서분쟁 또는 영토분쟁 사례를 정리한 <표 5-1>에 따르면, G20 국가들 중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G20 국가들 대부분은 인접국과 도서영유권 관련 분쟁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 도서영유권 분쟁경험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비록 도서영유권 분쟁은 아니더라도 인접국과 어떤 형태로든지 영토문제는 거의 대부

57) 구체적인 내용은 배진수(2010), 「G20 국가의 한국관련 바른인식 제고 과제 : 교과서 한국서술, 독도영유권, 국제개발협력(MDGs)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2호, 14~22쪽 참고.

58) G20 회원국을 열거하면 북미(미국, 캐나다)+구주(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터키, EU의장국)+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아프리카(남아공)+중동(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표 5-1〉 G20 국가들의 도서(영토)분쟁 사례 현황

G20 국가	도서영유권(또는 영토) 분쟁사례			독도유사성
	분쟁지역(현상태)	상대국	G20 국가간 분쟁여부	
Argentina	Falklands섬(이의제기)	UK	●	도서영유권 피식민/한국
Australia	영토(Antarctic)			
Brazil	영토(Uruguay River)	Uruguay		
Canada	Michias Seal섬(점유)	USA	●	도서영유권 순시, 등대/한국
	Hans섬(이의제기)	Denmark		
China	센카쿠/조어도(이의제기)	Japan	●	도서영유권 전후처리
	Spratty Islands(점유, 이의제기)	Vietnam 등		도서영유권
	Paracel섬(점유)	Vietnam		도서영유권
France	Mayotte섬(점유)	Comoros		도서영유권 식민국/일본
	모잠비크해협 4도서(점유)	Madagascar		
	Tromelin섬(점유)	Mauritius		
Germany	Oder-Neise	Poland		
India	New Moore섬(점유)	Bangladesh		도서영유권 발견/한국
Indonesia	Ligitan, Sipadan(이의제기)	Malaysia		이의제기 ICJ 패소/일본
Italy	South Tyrol	Austria		
Japan	Dokdo(이의제기)	Korea	●	도서영유권 러일전쟁 침탈
	센카쿠/조어도(점유)	China, Taiwan	●	도서영유권 청일전쟁 침탈
	남Kuri/북방도서(이의제기)	Russia	●	도서영유권 전후처리
Mexico	Belize			
Russia	남Kuri/북방도서(점유)	Japan	●	전후처리
Saudi Arabia	Qaru, Umm El Maradim(이의제기)	Kuwait		
South Africa	Pengin섬(점유)	Namibia		
Turkey	Imia/Kardak섬(점유)	Greece		실효지배/한국
United Kingdom	Diego Garcia섬(점유)	Mauritius		도서영유권 식민국/일본
	Falklands섬(점유)	Argentina	●	도서영유권 무력점령/일본
United States	Navassa섬(점유)	Haiti		도서영유권 점령/일본
	Michias Seal(이의제기)	Canada	●	도서영유권 캐나다 순시 불인정/일본

註: 한국, EU 생략

〈표 5-2〉 G20 국가 간 도서영유권 분쟁사례

분쟁도서	분쟁 당사국 (실효지배vs.이의제기)		독도유사성 (한-일 입장 유사성)		G20 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
			피식민여부	실효지배여부	
포클랜드 /말비나스	실효지배	영국	식민 (일본)	현재 (한국)	• 한국의 현 실효지배 강조 •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 기도 및 독도영유 역사주장의 부당성 강조
	이의제기	아르헨티나	피식민 (한국)	• 불인정 • UN 등 국제공문화 주장(일본)	• 피침탈의 역사적 공감대 유도 및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 인식 제고
마차이아스 실 (Michias Seal)	실효지배	캐나다	—	순시,등대,관광(한국)	현 실효지배 부각
	이의제기	미국	—	불인정(일본), 관광적극 추진으로 대응	• 실효지배 보다는 '한국의 고유영토'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 • 독도의 한국 관광객 방문 강조 (미국의 관광=영유권 동일시 경향을 감안)
센카쿠 /조어도	실효지배	일본	침탈 (청일전쟁)	현재(일본)	• 식민침탈의 부당성 강조
	이의제기	중국 · 대만	피침탈 (한국)	불인정	• 피침탈의 역사적 공감대 유도 및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 인식 제고
남쿠릴 /북방도서	실효지배	러시아	전후처리	현재(한국)	•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대한 일본의 '남 쿠릴도서'와 '독도'의 모순된 이중적 행태 부각
	이의제기	일본	—	불인정	• "러시아의 침탈"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역이용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 역시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케 유도

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테면 브라질은 우루과이와 우루과이 강 국경문제를, 독일은 폴란드와의 영토문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 남티롤

(South Tyrol) 영토문제를, 멕시코도 벨리즈(Belize)와 영토문제를 겪고 있다.⁵⁹⁾

심지어 도서영유권 분쟁의 양 당사국이 모두 G20 국가에 해당되는 도서영유권 분쟁사례도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5개로 파악된다. G20 국가간 도서영유권 사례로는 한국-일본의 ‘독도’ 이외에 중국-일본의 ‘센카쿠/조어도’ 도서영유권 문제, 러시아-일본의 ‘남쿠릴/북방4도서’ 도서영유권 문제, 영국-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말비나스(Falklands/Malvinas)’ 도서영유권 문제, 미국-캐나다의 ‘마차이아스 실(Michias Seal)’ 도서영유권 분쟁 등이 해당된다.

2) G20 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

미국·캐나다 간 마차이아스 실 도서영유권 사례의 경우는 캐나다가 1832년 이래 등대를 설치하고 해안 경비대가 보호순찰 활동을 하는 등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러한 캐나다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치 않고 양 국가가 모두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⁶⁰⁾ 따라서 현재 등대 관리 및 해안 경비대 순찰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납득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캐나다의 마차이아스 실 도서에 대한 실효지배를 인정치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효지

59)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Peter Calvert ed.(2004),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of the World* (London: John Harper Publishing), Rongxing Guo(2007), *Territorial Disputes and Resource Management: A Global Handbook*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Inc.) 등 참고.

60) J.R.V. Prescott(1985),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 (London: Methuen), pp. 326~328.

배'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이 외에 '독도가 왜 한국의 고유영토인지'를 객관적인 사료와 합리적인 논거로써 설득력있게 제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비록 미국의 경우에 '등대 관리' 및 '경비/순시 활동' 등 실효지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캐나다의 관광여행객선 운영에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직접 마차이아스 실 도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⁶¹⁾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독도의 한국 관광객 방문 활성화' 실태를 부각하는 것도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미국에게 인식시키는 간접적 홍보전략으로 아주 유용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영국 간 포클랜드(Falkland/Malvinas, 이하 현 실효지배를 기준으로 '포클랜드'로 약칭) 도서영유권 사례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1820년에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선포하고 1826년 자국민을 정착시켰으나, 영국은 1592년 무인도인 포클랜드의 발견을 주장하면서 1832년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착민을 추방하고 1833년 무력으로 점령한 후 점유해 오다 1982년 양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했고 영국의 승리로 현재 영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이처럼 영국이 1832년에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아르헨티나 섬을 점유했다는 점에서 포클랜드 도서영유권 사례의 출발은 1904년 당시 러일전쟁 와중에 해군전략상 망루 설치를 위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침탈한 일본의 침탈사와 비견된다. 즉 '침탈당한 역사적 경험'에서는

61) 2007년 당시 미국 메인 주 워싱턴 카운티 커틀러 마을에서 마차이아스 실 섬까지 여객선박 왕복 배 샅은 1인당 80달러 이며 왕복 약 4시간(현지 관광 1시간 포함)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가 도서영유권 이슈 관련 1965년의 유엔 결의⁶²⁾를 강조하는 등 영유권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관련 국제분쟁 지역화를 시도해 온 일본의 입장과 다소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의 바른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피침탈의 역사적 공감대’를 상기시키면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영국에 대해서는 독도가 현재 한국의 실효지배하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의도적으로 국제공론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 논리로 설득력있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중국·대만-일본의 센카쿠/조어도(이하, 현재의 실효지배 기준으로 ‘센카쿠’로 약칭) 도서영유권 사례와 러시아-일본의 남쿠릴열도/북방도서(이하, ‘남쿠릴열도’로 약칭) 영유권사례에 대해 살펴 보면서 이들 중국과 러시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바른인식 제고를 위해 어떠한 홍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논하기로 한다.

먼저 센카쿠 도서영유권 사례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1534년 중국이 처음 발견한 이래 중국의 고유영토였다가 청일전쟁 당시 시모노세키[下觀]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에 강제 할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자인 일본과 미국 간에 불법이양과 복귀를 통해 일본관할로 되어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 주장은, 이 지역이 청일전쟁 당시 강제할양된 것이 아니라 원래 무주지였던 것을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정

62)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 1965년 12월 유엔 결의 2065호(UN Resolution #2065) 참고.

식으로 오키나와 현에 편입조치한 것이며 미국과의 이양 및 복귀절차도 적법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⁶³⁾ 이 경우 일본의 센카쿠 도서영유권 주장논거는 독도의 1904년 시마네 현 편입조치를 강조하는 일본의 주장과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의 바른인식과 관련하여 중국·대만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탈사로부터 비롯된 독도문제의 본질을 부각함으로써 중국·대만 측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센카쿠 도서에 대한 일본의 현 실효지배를 중국이 인정치 않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현 실효지배를 강조하는 것 보다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일본 간 남쿠릴 열도/북방도서 영유권문제의 경우도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러시아에게 4개 섬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독도’와 ‘남쿠릴 열도’의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일본이 상대국에 대하여 똑같이 영토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일본 주장의 결정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주장하는 반면 남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면서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음을 비난하는 등 국제공론화 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 ‘남쿠릴 열도’ 사례와 ‘독도’ 사례에 대한 일본의 모순된 이중적 행태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북방4도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부당하게 침탈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⁶³⁾ 배진수(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시나리오』, 53쪽.

있는데, 이를 역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역시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케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결론적으로 G20 국가들의 ‘독도 관련성 여부’와 ‘도서분쟁 경험 여부’ 및 ‘(피)식민국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공고화 전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유형별 국가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도 관련국’과 ‘독도 비관련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독도 관련국’은 세부적으로 ‘직접 관련국’과 ‘간접 관련국’으로 다시 구분된다. ‘직접 관련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되고, ‘간접 관련국’에는 일본과의 도서영유권 사례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당시 한일간 영토처리 초안작성에 관련되었던 ‘미국’·‘영국’·‘호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독도와 관련성이 없는 G20 국가들에게는 ‘도서분쟁 경험 여부’ 및 ‘식민침탈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분쟁 경험 여부에 따라, 도서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독도와의 유사성’ 정도를 비교하여 “고유영토론 또는 실효지배” 논거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G20 국가들 중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의 국가들은 한국처럼 피식민 침탈로 비롯된 도서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게는 식민침탈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해 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G20 국가 중 프랑스나 터키처럼 도서분쟁 경험이 있지만 한국과는 반대로 식민국의 제국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식민침탈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들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한국의 현 독도 실효지배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경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표 5-3〉 G20 국가 대상의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

독도 관련성 여부 및 정도			G20 해당국	독도영유권 바른인식 제고방향
독도 관련국	직접 관련	당사국	한국	(독도 영유논리 강화)
		상대국	일본	(일본 주장의 허구성 입증)
	간접 관련	일본과의 도서분쟁 관련국	러시아	일본 주장의 모순성 강조 (독도에 대해서는 ICJ 회부 주장하는 반면, 남쿠릴도서에 대해서는 반대)
			중국	일본 주장의 모순성 강조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효지배 불인정 반면, 센카쿠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하여 일본의 실효지배 주장)
		대일강화조약	미국, 영국, 호주	•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설득
독도 비관련국	도서분쟁 경험	피식민 경험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 식민침탈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공감대 유도
		식민국 경험	프랑스, 터키	•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지지입장 유도
		식민지 무관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 해당국과의 유사성 정도를 감안, 실효지배 또는 고유영토 강조의 차별적 적용
	도서분쟁 비경험	피식민 경험	브라질, 멕시코	침탈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유도
		식민국 경험	독일, 이태리	향후 독도문제의 국제공론화 대비, 침탈국인 일본에 대한 지지입장을 사전에 차단 유도
		식민지 무관		

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독도와의 관련성도 없으면서 도서분쟁 경험도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도서영유권 자체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쉽고 간략히 정리된 독도영유 논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에게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일본의 공문서 자료 몇 가지만 제시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G20 국가의 유형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3. 독도 기사 보도와 언론의 역할⁶⁴⁾

국내외 처음으로 시도된 독도 이벤트레이터는 언론매체가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었음이 틀림없다. 언론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독도 관련 언론 기사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본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언론 매체의 영향과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에 대해 핵심을 잘 간추려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저널리스트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이에 반해 학자들의 경우는 통상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먼저 과시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일반 독자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독도문제와 같은 국가적 현안일수록 일반 국민들은 학자들의 전문적인 학술논문 보다는 현안이 발생했을때 즉각적으로 소개되고 분석되는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이기에 국익을 위한 그 역할과 책무 또한 클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들을 접하면서 필자가 느낀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하면서, 국익을 위한 언론매체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도와 같은 영유권 현안에 있어 언론매체의

64) 이하 내용은 배진수(2008,9), 「기사도 국제법적 증거 인정, 신중한 보도 절실 : 독도보도와 국익」, 『신문과 방송』 453호, 54~57쪽 참고.

역할은 단순한 홍보 및 전달의 차원을 넘어 국제법적 증거가치로서의 막중한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2008년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결된 말레이시아-싱가폴 간 ‘페드라 브랑카(싱가폴 명칭)/푸라우 바투 푸테(말레이시아 명칭)’ 도서영유권 사건에서 특정 국가의 언론매체 기사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가치를 고려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싱가포르의 언론 매체인 ‘Singapore Free Press’의 1843년 5월 25일자 기사에는 페드라브랑카 섬이 싱가포르 영토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국인 말레이시아(조호르 술탄)의 영토라는 내용이 있었고, 당연히 말레이시아 측은 싱가포르 언론매체의 이러한 기사내용을 자국 영유주장의 주요한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비록 싱가포르 측이 “이 언론매체 기사의 근거가 빈약하고 작성자를 알수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싱가포르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보도의 증거력을 고려한 적이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싱가포르가 패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론보도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독도와 관련해 우리 언론매체의 기사 보도시 신중함을 요구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대한제국 칙령41호(1900.10.25)의 울도군 관할도서 중 ‘석도’가 ‘독도’라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은 1906.7.13 《황성신문》 기사보도(“동서가 60리, 남북이 40리, 합쳐 200리”)를 인용하면서 대한제국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대한제국 칙령41호 자체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거리’ 부분을 그 뒤 《황성신문》에서 왜 굳이 언급함으로써 일본 측으로 하여금 반론의 빌미를 제공했느냐 하는 점이다. 국익과 관련된 부분일수록 특히, 부정확한 정보 등에 의한 추측성 보도의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문 및 방송 언론매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전달방식인 것 같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보도가 되면 그로 인한 파급영향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단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보도를 접하면서 뇌리에 각인되고 나면, 그 이후의 해명이나 정정 및 추가 자료 제시의 효과는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독도 영유권문제처럼 자칫 상대국에게 결정적인 반론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연구하는 학자, 민간단체,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을 망라하고 한국에게 불리하거나 일본에게 유리한 연구나 자료발굴을 의도적으로 시도할 주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상대국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를 통한 한견주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익을 위한 신중한 언론보도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언론의 몫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언론 본연의 책무를 위한 것이라면 기사화하여 온 동네 떠벌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은밀히 해당 당사자들로 하여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언론의 자세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리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사료가 발굴될 경우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림으로써 일본 측으로 하여금 새로운 반박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게 한다면 이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는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독도 관련 어떤 보도가 국익을 위한 것이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은밀히 바로 잡아야 될 기사내용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담당 기자들의 전문성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학자들조차 독도분야의 시장성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서 기피하는 마당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안을 챙겨야 될 언론인들을 평생 독도문제에만 매달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의 독도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미 알려진 몇몇 소수의 전문가 견해에만 의존하게 되어 편향되고 반복적인 주장들

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언론에 되풀이될 우려가 높다. 새로운 신진 전문가들이 발굴되지 못하다 보니 기존 논리에 대한 재검증의 기회가 적어지고,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척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여지도 점점 줄어든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최근의 예로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의 주권국이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되었을 때 거의 모든 언론이 사실관계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이면의 새로운 문제제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이 독도 표기를 중립용어인 '리앙쿠르 락스(Liancour Rocks)'라고 결정하였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1970년대 후반의 그 시점이었을까? 1970년대 초반은 왜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같은 맥락으로 1970년대 후반에 '리앙쿠르 락스'라는 중립적 표기를 결정한 이래 주권국 표기를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시점이 왜 하필이면 2008년 지금인가?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왜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에도 거의 모든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시점에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데에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구영역과 아젠더 개척의 측면에서, 학계를 위해서나 대응전략을 강구할 정부 부처를 위해서 언론이 해주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우선 학계에는 역사, 지리,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 분야별로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언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문 분야 간 이질성, 같은 분야내 학파 또는 학맥 간 대립 등으로 인해 학계 차원의 학제적 연구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수 십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국내의 독도연구 수준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학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언론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독도 영토주권 수호 등 국익을 위한 언론매체의 역할이 더욱 더 기대될 수 밖에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자료 1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주요 독도 이벤트 개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독도 등대 (1954.8.10 무인 / 1998.12.10 유인)

정식 명칭은 ‘독도항로표지관리소’이다. 독도 동도(東島)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높이 약 15m의 등탑과 3층 규모의 건물이 일체화된 형태이다. 최초 점등일은 1954년 8월 10일인데 당시 무인 등대로 운영되었고 1972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태양전지 무인 등대로 운영되다가, 1998년 12월 10일부터 유인 등대로 전환되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하게 되었다.⁶⁵⁾ 1998년 유인 등대로의 전환 조치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한일 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관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자 한국이 1996~

〈그림 1〉 독도 등대



⁶⁵⁾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87003> (검색일 : 2011. 11. 4). 울릉군 홈페이지 등 참고.

1997년 독도 접안시설 공사와 더불어 독도의 영토주권을 더욱 강화한 조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2. 독도 우표(1954.9.15 / 2002.8.1 / 2004.1.16)

한국 정부가 독도를 주제로 우표를 발행한 것은 1954년 9월 15일, 2002년 8월 1일, 2004년 1월 16일 등 세 차례이다. 1954년에는 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체신부에서 총 3종을 발행했는데, 3종 모두 독도의 도안이 들어 있는 우표로써 총 3천만 장이 발행되었다. 이 가운데 액면가 2환·5환짜리가 각각 5백만 장, 10환짜리가 2천만 장이었다. 2002년과 2004년에 발행된 우표는 모두 독도의 자연을 소재로 했는데, 2002년에는 90만 장이 발행되었고 2004년에는 독도의 갯메꽃·왕해국·슴새·괭이갈매기를 디자인한 4종의 우표가 모두 56만 장씩 발행되었다.

〈그림 2〉 독도 우표



1954년 독도 우표를 처음 발행할 때부터 일본은 독도 우표 발행에 반감을 가졌는데, 특히 2004년에는 이를 문제 삼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해 외교문제로까지 번졌다. 더욱이 일본의 우익단체가 선박을 이용해 해상시위를 벌이다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본우정공사는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 독도 사진을 넣은 우표 360장을 발행하기도 했다. 일본이 망언과 망령된 행동을 계속하자, 북한에서도 같은 해 6월 조선우표사에서 ‘조선의 섬 독도’라는 제목으로 독도 우표를 발행해 전세계 우표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우표에는 18세기

초의 조선 팔도지도 사진과 제주도·울릉도·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도안되어 있다.⁶⁶⁾

구체적으로 당시 일본우정공사에서도 민간인(도쿄의 한 우표·동전 수집업자)의 신청을 받아 독도를 항공 촬영한 사진 밑에 독도의 일본명인 ‘죽도(竹島)’와 영어로 ‘TAKESHIMA’라는 문자가 들어간 우표를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일인 2004년 1월 16일 직후인 1월 23일, 1월 29일, 2월 19일 등 3차례에 걸쳐 80엔 짜리와 90엔짜리로 총 36시트(360장)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에 맞서 대항 우표를 발행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외교마찰을 우려해 우정공사 차원의 발행은 하지 않고 민간인의 제작 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형식을 취한 셈이었다. 또한 일본 우정공사는 동년 2월 6일 도쿄[東京] 학예대학 조교수 출신의 민간인이 신청한 또 다른 독도 우표 제작 주문은 ‘국기’가 들어있는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메시지가 강해 총무성 및 외무성과 협의해 우표도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일본 우정공사 측은 같은 독도 사진이 들어간 우표 제작요청에 엇갈리는 대응을 한 이유에 대해 “외교 현안이 관련된 사진을 우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 “이미 발행한 제작주문도 거부했어야 하지만 단순한 풍경사진으로 생각해 그대로 통과됐다”며 판단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기도 했다.⁶⁷⁾

66) [출처] 독도 우표 [獨島郵票]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9902> (검색일 : 2011. 8. 26). 1954년 한국의 독도 우표와 당시 일본의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분석으로는 박진오(2011), 「한국의 독도우표발행과 일본의회의의 대응관계」, 『동북아역사문제』 2011년 2월호, 2~6쪽이 있다.

67) 《연합뉴스》(2004. 3. 4).

3. 독도 경비 (1956.4.8)

대통령 훈령 제28호(2007.4.15,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울릉도 지역 해안 경비는 경찰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으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사이므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1956년 4월 8일 경찰이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경비 임무를 인수받을 당시, 울릉경찰서에서 8명의 경찰관이 입도하여 의용수비대와 합동 근무 후 1956년 12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는 완전 철수하였다. 독도경비대 창설은 1977년에 만들어진 후 1991년 증축됐으며 1997년 8월 개보수된 바 있다.⁶⁸⁾ 1996년 5월 한·일 간 영유권 문제가 대두되어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독도경비 보강을 위한 군·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경비체제 개선 보완 차원에서 1996년 6월 27일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둬으로써 울릉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용되고 있다. 독도경비대는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독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순시선 등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해안경계를 하고 있으며, 병력 교체 및 보급품 수송 시는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⁶⁹⁾

68) 독도 근해에 일본순시선의 출현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91년 5월 합참의장과 국방정책비서관의 독도방문 결과보고와 대통령의 종합적 대책강구 지시에 의거, 경비막사를 증축하고 1993년 12월 25일 레이더를 설치하고 인원을 증원하였다. 울릉군 홈페이지, http://www.ulleung.go.kr/Wooreumoe/page.htm?mnu_uid=97& (검색일 : 2011. 11. 3), 《국민일보》(2005. 6. 2).

69) 울릉군 홈페이지, http://www.ulleung.go.kr/Wooreumoe/page.htm?mnu_uid=97& (검색일 : 2011. 11. 3).

〈그림 3〉 독도 경비대



동해해양경찰서는 2003년 9월 1일 독도 경비 구난함인 삼봉호에 구조 헬기 (AS-565)를 처음으로 배치했는데, 이 헬기는 전장 13.7m, 폭 3.25m에 항속거리는 850km, 채공시간은 3시간이며 탑승인원은 12명이다. 2002년 4월 취역

한 삼봉호는 5000톤 급으로 길이 145.5m, 폭 16.5m, 속력 23노트이며 95명이 승선할 수 있는데, 자동비행장치 및 함상 운용을 위한 첨단 장비를 장착한 헬기 배치로 삼봉호는 영해 침범, 불법 조업, 밀수 및 밀입국 등 국제범죄와 긴급 구난임무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⁷⁰⁾

2004년 11월 18일에는 경북경찰청에서 독도 접안시설과 독도경비대 막사를 잇는 길이 90여m의 리프트를 설치함으로써 식량 등이 독도로 들어올 때마다 경비대원들이 급경사의 계단을 통해 등짐을 지고 나르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⁷¹⁾ 최근 2011년 8월에는 독도 영토수호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의미에서 독도경비대장의 직급을 종전 ‘경위’에서 ‘경감’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4. 독도 거주 (1965.3)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 도동리 67)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그 후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했다. 그 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7년 7월 8일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2월 9일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 63)번지로 전입했고 1994년 3월 31일 전출했다. 1991년 11월 17일 이후부터는 김성도·김신

70) 《동아일보》(2003. 9. 1).

71) 《연합뉴스》(2004. 11. 18).

열씨 부부 1세대 2명이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 63)번지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며 거주해 왔는데, 1997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독도의 어업인숙소를 개축하고 선가장(船架場)을 설치할때까지 울릉도에서 생활하다가 2006년 2월부터 독도에 다시 거주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주민숙소가 증축되는 동안 울릉도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 5월에 독도에 다시 재입도하여 거주해 왔다.⁷²⁾

경북 울릉군은 1997년 11월 독도 서도에 어민숙소를 완공한 데 이어 독도를 독립된 행정구역인 독도리로 바꾸는 등 유인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⁷³⁾ 독도에 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상악화때 배를 끌어올려 놓을 선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1997년 독도 서도 어민숙소 공사 때 일시 철거되었던 선가장은 7년만인 2003년 8월 원상 복구해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풍 매미가 내습해 다시 기능이 완전 상실되었다가, 1년 뒤인 2004년 7월 7일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 2005년 9월경 마무리된 바 있다.⁷⁴⁾

〈그림 4〉 독도 주민 최종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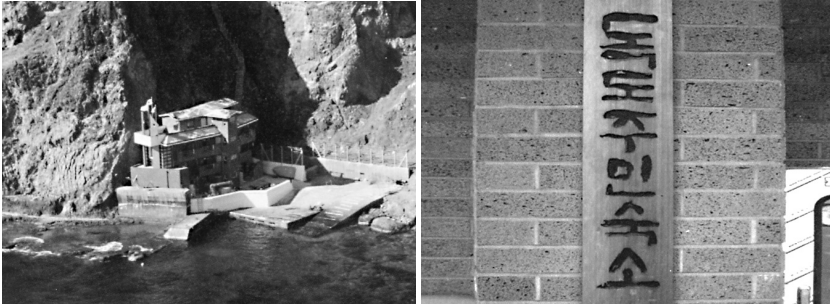


72) 울릉군 홈페이지, http://www.ulleung.go.kr/Wooreumoe/page.htm?mnu_uid=95& (검색일 : 2011. 11. 4)

73) 《한국일보》(2000. 7. 17).

74) 《매일신문》(2004. 7. 8), 《매일신문》(2005. 7. 27).

〈그림 5〉 독도 주민숙소



독도 어민숙소는 1968년 5월 12평 규모로 건립되었다.⁷⁵⁾ 그리고 30년 뒤인 1997년 11월에는 서도에 지상 2층(방 5개) 규모로 신축되었는데,⁷⁶⁾ 2003년 태풍 매미로 파손됨에 따라 2005년 3월 말 보수 공사 착공에 들어가 9월쯤 마무리되기도 했다.⁷⁷⁾ 이 숙소는 독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위급할 때 피신처로 이용하고 김성도씨 부부 등 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경상북도는 2010년 4월 12일 주민숙소 증개축 공사에 착공하여 기존의 2층 규모 연면적 118.9㎡인 숙소를 4층 규모의 373.14㎡로 증개축하여, 마침내 2011년 8월 5일 준공했다. 건물 1층과 2층에는 창고와 발전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들어서고 3층에는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 주거공간과 게스트하우스를, 그리고 꼭대기인 4층엔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다.⁷⁸⁾

75) 《연합뉴스》(1997. 5. 22).

76) 《연합뉴스》(1998. 6. 8).

77) 《서울신문》(2005. 3. 18).

78) 《연합뉴스》(2011. 8. 4).

5. 독도 헬기장 (1981 / 2011)

독도 헬기장은 해군이 1981년 처음 설치한 것으로, 이듬해인 1982년 4월 경찰로 관리 임무가 바뀌었다. 2008년에 경찰청과 항공안전본부는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로부터 독도 경비대가 사용하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지명약어로 'RKDD'를 배정받았다. ICAO 등록 작업은 독도경비대를 관할하는 경북 경찰청이 부산지방항공청을 거쳐 항공안전본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ICAO가 정하는 지명약어는 국제 항공통신 등에 사용되는 공식 부호로 R(동아시아 상공)과 K(한국)는 지역과 국가, D(경북)와 D(독도)는 국내 지명을 각각 가리킨다.⁷⁹⁾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낡아 2008년 11월 안전진단에선 “(상판을 받치고 있는) H빔 부식 등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보유한 것 중 가장 큰 헬기(MI-172)에 28명이 타고 기름을 모두 채우면 무게가 10톤 정도인데, 그 상태로 당시의 독도 헬기장에 10분 이상 착륙해 있는 경우 H빔에 상당한 무리를 줘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독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해 경찰 1개 소대(41명)를 보내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0년 2월 8일 독도 헬기장 설계 계약을 하고,⁸⁰⁾ 2010년 8월 이착륙장 증축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⁸¹⁾

당시까지의 독도 헬기장은 가로·세로 20m 크기에 10톤 급 헬기까지 주간

79) 《연합뉴스》(2008. 10. 14).

80) 《세계일보》(2010. 3. 12).

81) 《헤럴드경제》(2011. 8. 2).

에만 착륙할 수 있는 작은 헬기장이지만, 새 헬기장은 가로·세로 30m 크기의 콘크리트 상판과 야간 조명장치가 설치돼 군이 보유한 시누크(CH47) 수송용 헬기 등 최대 25톤 중량의 대형 헬기가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신식 헬기장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시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 혹은 155mm 견인포 한 대가 2시간 만에 독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육·공군 합쳐 약 20대 정도 보유 중인 시누크 헬기는 완전 무장한 병력 33명을 싣거나, 동체 하부에 155mm 견인포를 장착한 채 8~10명의 포반, 포탄 등을 싣고 경상북도에서 독도까지 1시간 정도면 날아갈 수 있다. 인원을 소집해 탑승·이륙하는 절차를 모두 고려해도 2시간이면 전개가 가능하다. 2011년의 헬기장 증축으로 인해 향후 주변국의 갑작스런 도발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⁸²⁾

6. 독도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 (1982.11.16 / 1999.12.10)

독도가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상 누리고 있는 지위를 보면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며 그 공식 명칭은 ‘독도천연보호구역’이다. 면적은 18만 902㎡이고, 소유자는 ‘국가’이며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울릉군’으로 규정하고 있다.⁸³⁾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처음 지정된 1982년 11월 16일 당시 명칭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이었으나, 이후 1999년

82) 《헤럴드경제》(2011. 5. 17).

83) 《연합뉴스》(2005. 3. 16).

12월 10일에 문화재청 고시로 독도의 문화재 명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 되었다. 문화재청이 2005년 3월 24일 관광객의 독도 입도 허용 정책을 펴면서 어업인 숙소가 있는 서도 전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1997년 12월 31일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5447호)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의거 2000년 9월 5일에는 독도 등 48개 도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는데 ‘독도’는 특정도서 제1호로 관리되고 있다.

7. 독도 통신

(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1991.12.27 일반전화 개통)

울릉도·독도에는 지난 1954년 경찰경비무선 시설로 통신이 시작돼 1977년 무선경비전화로 대체됐으나 울릉도에서만 통신이 가능했을 뿐 당시 독도에는 일반전화 자체가 없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 당시까지 독도는 아날로그방식의 극초단파(UHF)무선통신을 이용한 행정전용회선으로만 육지와 연결돼 일반 전화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울릉전화국은 1991년에 경북경찰청과 공동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자동전화 시설 공사를 통해, 기존의 무선통신 시설을 디지털방식으로 현대화하면서 일반자동전화 2회선과 별도의 행정전용회선을 공급하게 되었다. 1991년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사를 해 독도경비대와 당시 독도의 유일한 주민 조준기씨(최종덕씨 사위) 집 등 2곳에 각각 일반전화를 설치, 12월 27일 자정 개통함으로써 독도에서도 울릉전화국을 거쳐 울릉도는 물론 육지와 통화와 국제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유사시 비상연락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⁸⁴⁾ 1997년 3월

에는 독도경비대 내부만에 착신전용전화 및 구내식당에 발신용 카드식 공중전화 설치 작업을 완료한 바 있는데, 그 이전까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인 독도경비 전화는 통화의 질이 다소 떨어졌던 데 비해 1997년에 설치된 전화는 독도-울릉도 간은 무궁화위성을, 울릉도-육지 간은 해저 광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더 깨끗한 음질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⁸⁵⁾

2002년 6월 3일 KTF는 울릉도 최동단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독도 인근 해상에 2척의 선박 중계기를 띄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울릉도-독도 항로 전 구간 및 독도 순환 항로에서 016, 018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로 KTF는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독도 관광객에게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가 월드컵 기간임을 감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킨 것으로 사업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다.⁸⁶⁾

2004년에는 KT에서 독도에 인공위성(무궁화위성 3호)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울 위성운용국과 독도에 설치된 안테나를 위성으로 연결한 후 유선 랜(LAN : 근거리통신망)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벤처기업인 미래온라인이 2000년 독도에 위성 인터넷을 설치했으나 다운로드의 위성을, 업로드는 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완전 했었다.⁸⁷⁾ 이에 따라 KT는 2004년 5월 8일 독도에 위성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여 독도에 초당 2Mb가 넘는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해 왔다.⁸⁸⁾

84) 《연합뉴스》(1991. 11. 26).

85) 《연합뉴스》(1997. 3. 20).

86) 《연합뉴스》(2002. 6. 2).

87) 《연합뉴스》(2004. 5. 8).

또한 2006년 이후부터는 마이크로웨이브(극초단파)를 이용한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전용회선을 공급해 이동전화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⁸⁹⁾ 2009년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에서도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9월 강릉전파관리소는 동해 묵호항의 여객선 터미널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한겨레호에 이동전화는 물론 화상통화까지 가능한 KTF와 SK텔레콤의 IMT-2000 이동중계국 설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선상에서 동해(바다)와 독도 등의 정취를 휴대전화에 담아 보낼 수 있게 됐으며 선상의 긴급 재난 발생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⁹⁰⁾

나아가 2010년 3월 17일에는 KBS와 경상북도, 울릉군은 경상북도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개국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울릉도 반경 70km와 독도 반경 50km 안에서 KBS 1TV(스타)와 2TV(하트), KBS FM 라디오(뮤직) DMB 방송, 문자방송(재난)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KBS와 경상북도, 울릉군은 지난 2009년에 이를 위한 공동사업 협약을 맺고 울릉도에 100W급, 독도에 50W급 DMB 중계기를 설치하고 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M/W 회선(포항-울릉-독도), 안테나 등 부대시설과 원격제어시설 구축을 모두 마쳤다. 제주도를 제외한 섬 지역에 DMB를 설치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처음이며, 동해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과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특히 독도에서는 이전까지 KBS 아날로그 1TV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3개 채널을 시청할 수

88) 《전자신문》(2005. 3. 18).

89) IT Daily,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8#> (2008. 8. 13).

90) 《연합뉴스》(2008. 9. 9).

있게 돼 전파주권 확립과 실효적 지배 강화는 물론 주민과 관광객들의 방송문화 혜택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 울릉군 측의 입장이다.⁹¹⁾

2011년 현재 KT는 독도에 공중전화 2회선, 일반전화 5회선 등 총 19회선의 통신회선과 전용회선 8회선, 도서무선장비(SR)로 경찰청을 포함한 관공서, KBS 등에 이동통신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성(T-SAT)으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T 측에 따르면 “독도반경 15km내에서는 음성 통화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인터넷도 가능하다. 기지국에는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도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된 이후 기존 통신수단인 무전기 대신 통화품질이 우수한 이동통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⁹²⁾

8. 독도 부재자 투표(1995.6.27/2006/2007/2008/2010)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투표와 관련하여, 1995년 6월 3일 중앙선거위는 부재자신고 요령 등과 함께 독도와 팔미도(八尾島) 등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 22개를 공고했다.⁹³⁾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독도 경비대원 30명과 경찰관 3명 등 독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독도 접안시설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다.⁹⁴⁾

91) 《연합뉴스》(2010. 3. 16), 《뉴스엔》(2010. 3. 17).

92) 《머니투데이》(2011. 4. 15).

93) 《연합뉴스》(1995. 6. 3).

94) 《연합뉴스》(2012.12.13).

부재자 투표소 설치(동도 헬기장)를 통한 독도에서의 투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고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등 계속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는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선거를 앞두고 여객선 결항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선거 우편물을 제대로 배달할 수 없어 경북소방본부의 헬기를 지원받아 울릉도와 독도에 부재자 투표 우편물 277통을 특별 운송하여 독도경비대원 등의 주권 행사를 돕기도 했다.⁹⁵⁾

9. 독도 접안시설 (1997.11)

접안시설은 1991년 12월 경찰청의 요청으로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1995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11월에 완공되었다. 접안시설의 완공으로 500톤 급 경비함정 접안이 가능하여 보급품 수송이 원활해졌으며, 접안시설 준공비에는 “대한민국 동쪽 땅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⁹⁶⁾ 당시 시공회사는 준설선단 출정식을 갖고 자가승강식 작업선과 플로팅 독, 해상암반 굴착기 등 최첨단 장비와 예인선 3척, 파쇄암 운반선 1척, 작업인력 50명을 독도 공사현장으로 출발시켰다. 접안시설 공사에 투입된 자가승강식 작업선은 자동승강장치를 이용해 바다속에 4개의 다리를 고정시켜 파도높이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 초속 30m의 강풍속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 또 플

95) 《연합뉴스》(2010.5.27), 《매일신문》(2010.5.28).

96) 울릉군 홈페이지 참고.

〈그림 6〉 독도 정상에서 본 접안시설과 독도 관광객



로팅 독은 반잠수선으로 각종 공사자재운반과 케이슨 해상제작 장소로 활용되는 당시 최첨단 장비였다. 시공회사 측은 독도와 같이 기상조건이 매우 열악한 해상에서 이들 장비를 암반준설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독도접안시설은 5백톤 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길이 80m의 주안벽과 길이 20m의 간이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안벽을 만드는 셀블록방식을 채택하여 1998년 7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케이슨 공법으로 변경돼 공기가 크게 단축되어 실제로 1997년 11월에 완공할 수 있었다.⁹⁷⁾

97) 《연합뉴스》(1996. 4. 26).

10. 독도 국립공원 지정 계획 보도 (2001.10.17)

환경부는 2001년 10월 17일, 당시 울릉도·독도의 생태계 보전방안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산림청,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대다수가 국립공원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곧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⁹⁸⁾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2002년 4월 울릉도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냈으며 환경부는 울릉도(70km²)만으로는 국립공원으로 면적이 부족하다고 보고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와 인근 해상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했던 적이 있다. 환경부가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태 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 및 야영 등이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의 채굴 등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독도의 경우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과 생태계보전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로 각각 지정돼 있었던 만큼 추가로 적용되는 행위제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환경부는 2002년 9월부터 경상북도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년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기본 정책방향을 논의한 뒤 200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었다.⁹⁹⁾

98) 《연합뉴스》(2001. 10. 17).

99) 《연합뉴스》(2002. 8. 12).

한편 2004년 2월 9일에 환경부는 독도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을 막기 위해 독도 및 인근 해역의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적도 있다. 당시 환경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토지이용 등 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은 뒤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전문가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 모니터링, 자연 훼손 및 오염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¹⁰⁰⁾ 그러나 2004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장 대통령)에서는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환경부·국방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간부와 경상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독도 국립공원화 계획은 일본에 또 다른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고 공원화가 상업주의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다.¹⁰¹⁾

이 외에도 독도 관광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2007년부터 진행해 온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 사업은 가거도와 독도, 마라도, 백령도 등 한반도 가장 끝에 자리한 섬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문화관광부가 2007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써 2009년 1월 13일에 독도·백령도·가거도 등 3개 섬을 ‘국토 끝 관광자원화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¹⁰²⁾ 하지만 관광자원화 대상 가운데 하나인 백령도가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

100) 《연합뉴스》(2004. 02. 09).

101) 《한겨레》(2004. 2. 12).

102) 당초 계획은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2009년 5월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0년부터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매일신문》(2009. 1. 14).

말이 어려운 점 등 때문에 당시 잠정 보류 됐다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뒤 다시 추진되어 2011년에는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의 마스트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이 발주되기도 했다.¹⁰³⁾

11. 광업지적에 독도 포함 (2002.11.22)

산업자원부는 독도를 우리나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02년 11월 22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가 독도에 대한 광업지적을 고시해 줄 것을 청원한데 따른 것인데, 당시 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는 독도에 한국의 광업권이 등록된 사실과 독도 및 근해에 설정된 광구의 광구세(鑛區稅)를 납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광업지적 설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300여 km²를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하고 2003년판 전국 우편번호부에 경북 울릉군 독도리에 우편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나온 것이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당시 “현행 광업법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광업지적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만큼 독도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광업권 출원이 가능하지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광물채굴은 제한될

103) 정부가 연평도 사건 직후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발표하고,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발을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아시아경제》(2011. 8. 2).

수 있다고 산업자원부는 설명했다.¹⁰⁴⁾

12. 독도 입도 ‘허가제→신고제’ 전환

(2005.3.16, 3.24)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며, 당시 독도 입도와 관련 30명 이하는 경북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고 30명 이상 또는 취재 및 촬영목적 등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경북도지사가 결정해 왔다. 그런데 2005년 초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써, 한국의 문화재청은 2005년 3월 16일 문화재청 고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제5조 ‘독도의 입도 제한-국가행정 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을 삭제하여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독도 입도 인원은 2005년 3월 ‘1회 70명/1일 140명 한도’, 2005년 8월 ‘1회 200명/1일 400명 한도’, 2006년 11월 ‘1회 470명/1일 1,880명 한도’ 등 점차 확대되어 왔다. 더 나아가 2009년 8월에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 훼손 방지를 위해 입도승인 권한을 울릉군에 이양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울릉군은 2010년 10월 1일자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제1648호)를 제정·공포하여 하루 1,880명인 독

104) 《연합뉴스》(2002. 11. 22).

도입도 제한 인원도 없애는 한편(1회 입도객 470명 한도는 유지) 독도의 공개지역 범
위도 '동도'에서 '동도, 서도 주민숙소·부두 지역'으로 확대했다.¹⁰⁵⁾

2006년 4월에는 서울 주재 외신기자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하
여 취재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24일에는 일본 도쿄 주재 외신
기자단 11명도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방한한 일본주재 외신기자단
은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독일 공영 ZDF-TV,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이탈리
아 경제지 일 솔레 소속 기자 등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이들은 자체적으로 독
도취재를 준비해 오다 독도 방문 몇 주 전인 7월 3일에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
해 독도취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상주 외신특파원들의 독도 취재
는 주일외국특파원협회(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FCCJ)가 주일한국
대사관에 독도 취재협조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일정
등을 조율하기도 했다.¹⁰⁶⁾ 도쿄 상주 외신기자단이 독도 현지취재에 나선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는데, 당시 도쿄 주재 외신기자단이 독도를 방문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문을 허가한 것을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정
부는 독도 방문을 추진한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 대해서도 “일본에 있는 특파
원이 한국 정부의 편의를 받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상륙하는 것은 보
도의 중립성을 해친다”며 방문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¹⁰⁷⁾

105)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참고.

106) 국정브리핑 (2006. 7. 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24096>

107) 《연합뉴스》(2007. 7. 25).

13. 독도 운항 (2005.4.8)

‘울릉도’로 운항이 시작된 것은 1963년부터 울릉도 종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인데, 대한공사에서 제작한 350톤 급 철선인 청룡호가 동양해운 소속으로 1963년 5월부터 포항-울릉도(10시간 소요) 간을 월 5회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7년에 울릉도 도동항에 여객선 접안 부두시설이 만들어지면서, 1977년 7월 7일 1천톤 급의 첫 고속여객선인 한일호가 포항-울릉도(8시간 소요) 간을 취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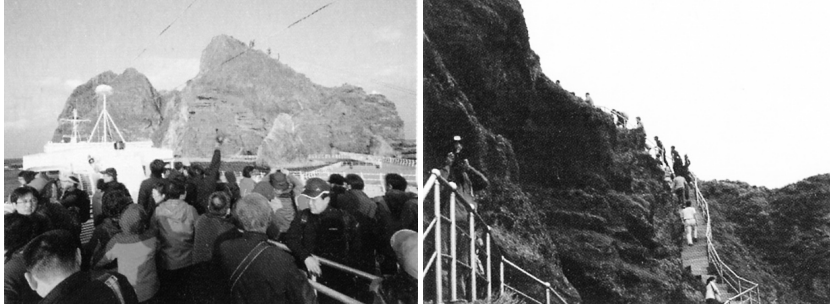
독도까지의 운항과 관련해서는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관광유람선 ‘삼봉호’가 2004년 6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관광객 100명을 태우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발 독도를 향해 첫 운항을 시작했다. 총 승선인원 210여 명에 106톤 급인 삼봉호는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2시 30분 등 2차례 울릉도 저동항 선착장과 도동항 부두를 각각 출발해 독도를 두 바퀴 돈 뒤 돌아오며, 운항에는 4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¹⁰⁸⁾ 2005년 3월 일반인들의 독도 입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독도 방문이 본격화 되었는데, 2005년 4월 8일부터는 영국 FBMA사의 자회사인 필리핀 FBMA에서 건조한 대아고속해운 소속의 439톤 급 씨플라워호가 묵호-울릉도(3시간 30분 소요) 간 및 울릉도-독도(왕복 4시간 소요) 간을 운항하게 되었다.¹⁰⁹⁾

2009년 6월 26일에 경북 울릉군은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독도관리 전용선인 ‘독도평화호’ 진수식을 가졌는데 ‘독도평화호’

108) 《연합뉴스》(2004. 6. 17).

109) http://ulleung.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1501370 (검색일 : 2011.8.25).

〈그림 7〉 독도 선착장을 떠나는 여객선과 독도 탐방하는 시민들



는 독도 행정업무와 주민생활 지원, 독도 방문객 안전관리, 해양 생태자원 조사 및 연구활동, 독도 영유권 수호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독도관리 전용선이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독도평화호는 2009년 3월 국민공모로 선정이 ‘독도평화호’로 정해졌고, 알루미늄 재질로 길이 37.2m, 폭 7.4m의 177톤 급으로 정원 80명에 최대속도 32.5노트로 울릉-독도 구간을 3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¹¹⁰⁾

14. ‘독도함’ 명명 (2005.7.12)

2005년 7월 12일 오전 해군 본부는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에서 ‘독도함’으로 명명된 대형 수송함(LPX)의 진수식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¹¹¹⁾. (주) 한진중공업이 2002년 10월 말 해군으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독도함은 1만 4천

110) 《연합뉴스》(2009. 6. 26).

111) 해군함정은 유형별로 함의 이미지와 관련한 지명, 산봉우리, 섬, 역사상 추앙받는 인물 등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독도함’은 우리 섬 독도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해양 수호정신을 고취하려고 명명됐다.

톤 급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의 수송이 기본임무이며 해상 기동부대나 상륙부대의 기함이 돼 대수상전, 대공전, 대잠수함전 등 해상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지휘함의 기능도 수행한다. 또 군사작전 외에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등 국가정책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이다.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시속 43km)로 300여 명의 승조원이 승선하며 근접방어 무기체제 및 대함 유도탄 등 방어 유도탄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다 헬기 7대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 최대 720명의 상륙 병력을 탑재·수송할 수 있어 경항공모함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²⁾

당시 일본 외무성은 2005년 7월 13일 “독도함 명명은 상호 간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극을 피하자는 양국의 이해를 무시한 행위”라며 외교경로를 거쳐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으며, 이에 앞서 그 전날인 7월 12일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내 이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로 심히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¹¹³⁾

112) 《연합뉴스》(2005. 7. 12).

113) 《한국일보》(2005. 7. 13).

15.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법률 발효 (2008.7.28)

한 국가의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영공 방위를 위해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는 구역이며, 군용기와 민간항공기를 막론하고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951년 3월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면서 독도를 이 구역 내에 포함시켰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1951년 설정한 KADIZ에는 독도 동쪽 외곽의 동해상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KADIZ는 동·서·남해상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특히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은 거의 붙어 있다. 독도에서 독도 동쪽 KADIZ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23km다. 이후 미 공군은 1987년에 발행된 항법지도에도 KADIZ 내에 독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미국 측 스스로도 독도가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측이 독도 외곽으로 KADIZ를 설정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1969년 9월 일본의 방위청 훈령 제36호(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5월 오키나와(沖縄)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에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5년 3월에는 일본의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퇴각한 적도 있

다.¹¹⁴⁾

영공 침입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독도를 포함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7월 28일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국방부장관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동년 7월 31일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관보에 고시(국방부고시 제2008-27호)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법률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합참 예규로 운용해왔던 방공식별구역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국 항공기가 우리 통제 공역에 들어왔을 때 식별과 위치 확인 등 대응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군의 방공식별 구역을 수용해 왔고, 자국의 법률에도 방공식별구역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¹¹⁵⁾

16. 사업자 등록증 교부 (2009.3.11)

2009년에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포항세무서 울릉지서는 ‘독도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 독도 지키기 노력의 상징성을 갖는 의미에서 2009년 3월 11일 독도 주민 김성도씨에게 독도에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독도 제 1호 독도수산물), 독도경비대에 고유번호증을 각각 발급했던 적이 있다. 울릉군은 당초 김씨가 독도 사업자가 되자 독도 모형 및 물개 동판,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김씨에게 위탁, 독도 동도 선착장 내에서 입도

114) 《연합뉴스》(2008. 8. 1).

115) 《YTN》(2008. 7. 28).

객들에게 판매토록 할 계획이었다. 생수 및 음료, 휴지 등 간단한 생필품을 울릉도에서 공급해 역시 김씨에게 판매를 맡기기로 했다.¹¹⁶⁾ 그러나 이후 문화재청은 울릉군과 독도 주민 김성도씨의 독도 상업 활동 신청과 관련,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어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독도에서의 상행위를 불허함으로써, 결국 울릉군은 독도에서의 기념품 판매사업 자체를 일단 보류한 상태에 있다.¹¹⁷⁾

17. 독도 원격의료진료시스템 개통 (2009.7.23)

경찰병원은 2009년 7월 23일 독도원격진료운영(u-Health 서비스) 개통식 행사를 실시하였다. ‘u-Health(ubiquitous-Health) 서비스’라는 것은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혈압, 심전도 등의 생체정보를 측정·전송하면, 원격지 의사 영상상을 통해 원격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원격진찰·처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독도 원격진료운영은 경찰병원과 독도를 통신망으로 연결 독도경비대 및 독도거주자, 관광입도자 등에게 경찰병원 의료진이 원격진찰·처방을 하는 첨단 의료서비스다. 원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u-Health시스템 구축사업을 독도경비대로 확대하여 경찰청(경북경찰청, 경찰병원)과 공동 추진했으며, 2009년 1월 사

116) 《연합뉴스》(2009. 3. 18).

117) 《서울신문》(2009. 7. 11).

업계획 수립 이후 5월 시스템 시연을 거쳐 동년 7월에 개통식을 하게 된 것이다. 독도원격진료는 울릉의료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약품 제조·배달 및 응급 상황 지원 등 운영지원을 받아 독도경비대원 뿐만 아니라 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 1~2회 실시할 예정이다. 첨단 u-Health 원격진료시스템이 경찰병원과 독도경비대 간 구축 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독도경비대원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해양경비대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¹¹⁸⁾

18.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2010.11.10)

〈그림 8〉 독도명예주민증



경상북도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을 시작했다. 2008년 7월과 2010년 3월 추진되던 경북 울릉군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이 2010년 말 시행되게 된 것이다. 2010년 10월 경북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광객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

118) 《연합뉴스》(2009. 7. 23), 《공감코리아》(2009. 9. 24).

리 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cm, 세로 5.4cm 크기에 앞면에는 성명과 국적, 독도주민번호 등이, 뒷면에는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란 문구와 태극기와 독도사진 등이 들어가고 울릉군수 직인이 찍히게 된다. 주민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독도 방문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독도 입도승선권, 증명사진 등을 ‘독도 입도 통합지원시스템’(intodokdo.go.kr)을 통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하다.¹¹⁹⁾

19. 독도 생물유전자 등록 (2010/2011)

대구지방환경청은 생태계 모니터링과 더불어 독도의 생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독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유전자(DNA) 정보를 분석해 NCBI(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세계적 유전자원정보은행)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NCBI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정보관리연구소로 NCBI에 등록된 독도 식물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은 나고야(名古屋)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와 공유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독도 생태계를 모니터링한 결과,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포유류 2종, 식물 54종, 조류 101종, 곤충 129종, 해조류 240종, 해양무척추동물 91종 등 총 617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류 11종과 곤충 33종, 해양무척추동물 30종 등 74종은 그동안 독도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됐다.¹²⁰⁾ 이미 2010

¹¹⁹⁾ 《연합뉴스》(2011. 10. 11).

년에 사철나무, 해국, 번행초, 도깨비쇠고비, 갯괴불주머니, 갯제비쭉 등 6종을 독도 식물로는 최초로 NCBI에 등록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서식하고 있는 해국 간의 유전자 비교를 통해 일본에 서식하고 있는 해국의 원산지가 독도 및 울릉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확산됐음을 입증했다.¹²¹⁾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갯장대, 왕김의털, 민들레, 갯, 큰개미자리, 갯까치수영, 땅채송화, 왕호장근, 술패랭이, 참나리 등 10종의 식물에 대해서도 NCBI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나머지 38종의 식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NCBI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한다.¹²²⁾

〈그림 9〉 독도의 야생화 갯괴불주머니와 해국



120) 《노컷뉴스》(2011. 6. 30).

121) 《매일신문》(2010. 3. 9).

122) 《건설타임즈》(2011. 7. 1).

참고자료 2

독도 이벤트 연표 :
1952~2010년(538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1	독도 포함 평화선 선포(국무원고시제4호)	1952.01.18	
2		1952.01.28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첫 항의(구술서)
3		1952.07.12	일본 순시선 독도 상륙시도
4	일본 순시선 격퇴	1952.07.12	
5	독도 학술조사단 독도 상륙	1952.09.24	
6		1953.05.28	일본선 영해침범
7		1953.06.22	한국어민의 독도근해 일본영역 침범 항의
8		1953.06.25	일본선 독도 상륙
9		1953.06.27	일본 어선 독도 상륙
10		1953.06.28	일본 순시선 독도상륙 및 영토표주 설치
11		1953.07.01	일본선 독도 상륙
12	국회, 일본의 독도침해 관련 대정부 건의	1953.07.08	
13		1953.07.12	일본선 영해침범
14	경찰, 일본영토표식 철거 및 일본선 격퇴	1953.07.12	
15		1953.07.13	일본정부건해(1) 구상서
16	한국정부건해(1) 구상서	1953.09.09	
17		1953.09.17	일본선 영해침범
18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	1953.09.26	
19	산악회 독도학술조사	1953.10.18	
20		1953.10.28	한국영토표식 철거 및 일본영토표식 설치
21	한국영토표식 다시 설치	1954.01.19	
22	경북도 직원 파견	1954.01.20	
23		1954.02.10	일본정부건해(2) 구상서
24	영토표식대 다시 파견 (암석에 조각)	1954.05.13	
25		1954.05.23	일본선 영해침범
26		1954.05.28	일본 조사선 독도 정박
27		1954.06.02	일본함 독도에 기중소사
28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	1954.06.14	
29	국회 해양주권시찰단의 독도 시찰	1954.07.25	
30		1954.07.28	한국 측 국기게양 항의
31	독도 무인등대 첫 점등	1954.08.10	
32		1954.08.23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33	일본 순시선 격퇴, 한국영토표지석 설치	1954.08.23	
34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	1954.08.30	
35	해군수로국 독도 측량(1954.9.10~9.23)	1954.09.10	
36	등대 설치 일본에 통고	1954.09.15	
37	독도우표 발행	1954.09.15	
38		1954.09.24	한국의 등대설치 항의
39	한국정부건해(2) 구상서	1954.09.25	
40		1954.09.25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의
41		1954.10.21	한국의 대표, 가옥, 전신주 설치 항의
42	일본 측 ICJ 회부 제의 일축	1954.10.28	
43		1954.11.21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44	일본의 영해침범 격퇴	1954.11.21	
45		1954.11.29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 항의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46	신등대(무인) 설치	1955.07.08	
47		1955.07.19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48	신(新) 등대 설치 일본에 통고	1955.08.08	
49		1955.08.24	한국의 등대설치 통고 불인정
50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	1955.08.31	
51		1956.09.20	일본정부견해(3) 구상서
52	경찰 독도경비(독도의용수비대 철수)	1956.12.30	
53		1957.05.08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54	한국 상주 ·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 반박	1957.06.04	
55		1957.10.06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56		1957.12.25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57		1958.01.07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58		1958.10.06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59	한국정부견해(3) 구상서	1959.01.07	
60		1959.09.15	일본선 영해침범
61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	1959.09.15	
62		1959.09.23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63	한국 상주 · 시설물 관련 일본항의 반박	1959.12.03	
64		1960.02.08	일본 수상 독도영유권 주장
65		1960.12.08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66		1960.12.22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67	한국 상주 · 시설물 관련 일본항의 반박	1961.01.05	
68		1961.12.03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69		1961.12.25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70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	1961.12.27	
71	한국 아마추어 통신원 독도 활동	1962.02.03	
72		1962.02.10	한국 아마추어 통신원 독도 활동 항의
73		1962.03.00	한일외상회담, 일본의 ICJ회부 제안
74	일본의 ICJ 회부 제안 일축	1962.03.00	
75		1962.07.13	일본정부견해(4) 구상서
76		1962.12.22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77	경찰 독도경비 강화 추진	1963.01.04	
78		1963.02.05	한국 경찰 무기반입 항의
79	한국 상주 · 시설물 관련 일본항의 반박	1963.02.25	
80		1964.01.31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81		1964.03.03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82	한국 상주 · 시설물 관련 일본항의 반박	1964.03.18	
83		1964.11.00	일본 외무성 책(오늘의 일본) 독도 기술
84	일본 외무성 책(오늘의 일본) 내용 항의	1964.11.02	
85	독도 최초주민(최종덕) 독도 거주 시작	1965.03.00	
86		1965.04.10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87	한국 상주 · 시설물 관련 일본항의 반박	1965.05.06	
88	한국정부견해(4) 구상서	1965.12.17	
89		1966.08.00	196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90	196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66.08.00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91		1967.03.30	일본수상, 독도문제 언급
92	독도 어민숙소 건립	1968.05.00	
93		1969.02.25	일본외상, 독도문제 언급
94		1969.08.15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95		1969.10.28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96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항의	1969.11.25	
97		1970.09.03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98		1970.11.13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99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항의	1970.11.24	
100		1971.07.00	197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01	197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1.07.00	
102		1971.07.01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103		1971.09.06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104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항의	1971.10.12	
105		1972.04.01	동대 설치 계획 항의
106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항의	1972.05.15	
107		1972.07.00	1972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08	1972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2.07.00	
109	수산청, 독도개발 5개년 계획 추진(보도)	1972.08.15	
110		1972.08.22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111		1972.10.26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112	(태양전지) 무인등대 설치 운영	1972.12.00	
113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항의	1972.12.11	
114	독도 해양조사 계획 보도	1973.04.00	
115		1973.04.25	한국의 독도 해양조사 계획(보도)에 항의
116	한국 측 해양 조사 관련 일본항의 반박	1973.05.07	
117		1973.08.00	1973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18	1973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3.08.00	
119		1974.06.00	일본어선 영해침범
120	일본어선의 영해침범 저지	1974.06.00	
121		1974.07.00	197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22	197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4.07.00	
123		1975.09.00	1975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24	1975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5.09.00	
125		1975.09.09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126		1975.11.19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127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항의	1975.11.24	
128	아마추어 이동무선국 설치, 학술조사활동	1976.07.27	
129		1976.08.13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130		1976.09.08	한국의 아마추어 이동무선국 설치 항의
131		1976.10.00	197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32	197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6.10.00	
133		1976.10.25	한국의 주둔퇴거 및 시설철거 요구
134	일본 순시선 영해침범 항의	1976.11.12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135	독도경비대 청사 설치	1977.00.00	
136		1977.02.05	일본수상, 독도영유 언급
137		1977.02.08	일본 신문사 항공기 독도 영공 침범
138	일본 신문사 항공기 영공침범 항의	1977.02.15	
139		1977.02.19	일본 방송국 헬기 독도 영공 침범
140	일본 방송국 헬기 독도 영공침범 항의	1977.02.21	
141		1977.09.00	1977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42	1977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7.10.00	
143		1977.12.14	12해리 영해선포 관련 독도문제 협의 요구
144	영해법(12해리) 공포(시행: 1978.4.30)	1977.12.31	
145	독도 헬리포트 착공(1981년 완공)	1978.00.00	
146		1978.02.14	일본외상, 시설물 설치 항의
147		1978.07.05	독도주변 일본어선 퇴거조치 항의
148		1978.07.28	1978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최초)
149	1978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1978.07.28	
150		1978.08.00	1978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51	1978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8.08.00	
152		1978.09.03	일본외상 독도 각료회의 정식의제화 요구
153		1979.01.26	일본수상 독도주변 조업문제 언급
154	일본선의 영해침범 항의	1979.04.18	
155		1979.09.00	1979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56	1979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79.10.00	
157		1981.08.28	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범
158		1981.09.00	198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59	198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81.09.00	
160	독도 최초 주민(최종덕) 주민등록 전입	1981.10.14	
161	독도 헬리포트 완공(1978년 착공)	1981.00.00	
162		1982.09.00	1982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63	1982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82.09.00	
164	독도의 천연기념물(제336호) 지정	1982.11.16	
165		1983.08.17	한국인 독도 주민등록 전입 항의
166		1983.08.26	일본외상 독도문제 거론
167		1983.10.00	1983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68	1983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83.10.00	
169		1983.10.00	일본어선 독도 영해침범 조업
170	독도 영해침범 조업 일본어선 나포	1983.10.00	
171		1984.10.00	198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72	198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84.10.00	
173		1985.07.00	1985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74	1985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85.07.00	
175		1986.07.00	198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76	198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86.07.00	
177		1986.09.10	일본외상 독도영유권 주장
178		1986.11.29	일본 순시선 독도 영해 침범
179		1987.03.09	일본, 독도 주둔 한국경비대 관련 항의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180		1987.05.24	일본외상 독도영유권 주장
181		1987.07.00	1987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82	1987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87.07.00	
183		1987.07.27	일본외상 독도영유권 주장
184	조준기(최종덕 사위) 부부 독도 거주	1988.02.20	
185		1988.03.21	일본외상 독도영유권 주장
186		1988.09.00	(구)소련의 영공침범 관련 대소련 항의
187		1988.09.00	정치위성궤도의 독도 test point 지정
188	일본의 대소련 영공침범 항의 지적 월권	1988.09.19	
189	일본의 독도 test point 지정 항의	1988.09.19	
190		1989.04.01	일본외상 독도영유권 주장
191	영공침범 관련 (구)소련에 유감 표명	1989.04.28	
192		1989.11.15	일본어선 독도 영해침범
193	독도 영해침범 일본어선 1척 나포	1989.11.15	
194		1989.11.28	일본 순시선 독도 영해 침범
195		1989.12.14	한국의 독도 시설물 설치 관련 항의
196		1990.08.07	한국 구축함의 일본 순시선 퇴가명령 항의
197	한국 입장 전달 및 일본에 주의 언급	1990.09.03	
198		1990.10.00	1990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199	1990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90.10.00	
200		1991.01.22	일본 순시선 독도 영해침범
201	국방부, 독도방위계획 완성	1991.03.00	
202	독도경비대 증축(1977년 설치)	1991.05.00	
203	합참의장+국방정책비서관, 독도 방문	1991.05.00	
204	대통령, 독도 관련 종합적 대책 강구 지시	1991.05.00	
205	독도주민 김성도 가족 전입(서도)	1991.11.17	
206		1991.12.00	199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207	199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91.12.00	
208	해군 독도근해 사격훈련	1992.00.00	
209		1992.02.14	일본 순시선 독도 영해침범
210		1992.04.00	1992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211	1992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92.04.00	
212		1992.06.17	한국 해군함정의 독도근해 사격훈련 항의
213	경찰 통제 레이더기지 설치	1993.12.22	
214		1994.02.11	일본 순시선 독도 영해침범
215		1994.04.22	한국의 독도 레이더 설치 항의
216	독도 접안시설 공사 계획 발표	1996.02.00	
217		1996.02.09	한국 측 독도접안시설 계획 항의
218	대통령, 독도영유권 주장 강력 대처 지시	1996.02.10	
219	해·공군 독도 합동군사훈련 방침 발표	1996.02.12	
220		1996.02.15	한국 해·공군 독도 합동군사훈련 항의
221		1996.02.20	일본 측, EEZ 독도 기점 주장
222		1996.03.02	EEZ 관련 일본정부 입장 표명
223	EEZ 관련 한국 기본입장 표명	1996.03.02	
224	독도 접안시설 착공	1996.04.28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225		1996.04.30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불인정
226		1996.05.17	일본외상 한국의 독도시설 불인정
227	울릉경비대(독도경비대 확대) 창설	1996.06.27	
228	독도 수역 사격구역(R-130) 신규 지정	1996.09.18	
229		1996.09.27	자민당, 독도문제의 선거공약 포함
230	자민당의 독도 선거공약 항의 논평	1996.09.30	
231	독도근해 해상사격구역 설치방침 통보	1996.12.00	
232		1996.12.19	한국 측의 독도 해상사격구역 설치 항의
233	독도(동도) 일반전화 개통	1997.03.24	
234		1997.03.25	한국의 독도 일반전화 개통 관련 항의
235		1997.05.00	1997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236	1997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1997.05.00	
237	독도주변 수역의 사격훈련구역 폐쇄	1997.05.10	
238	독도개발계획 추진 발표	1997.05.30	
239		1997.06.00	한국어선 나포
240		1997.06.02	한국의 독도개발계획 철회 요구
241		1997.07.15	1997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재등장)
242	1997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1997.07.31	
243	울릉도에 독도박물관 개관	1997.08.08	
244	한국 해군의 독도부근 훈련구역 설정	1997.09.00	
245		1997.09.22	한국의 독도부근 훈련구역 설정 항의
246	국방백서의 독도 기술(최초)	1997.10.12	
247		1997.10.13	한국 국방백서의 독도 기술 관련 항의
248	독도 접안시설 완공, 준공기념비 설치	1997.11.04	
249	독도 어민숙소 증축	1997.11.24	
250		1997.12.2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항의
2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12.31	
252		1998.01.00	일본,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
253	독도영해 내 한국 측 해양조사 측량	1998.00.00	
254		1998.03.28	독도영해 내 한국 측 해양조사 측량 항의
255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	1998.04.00	
256		1998.04.08	한국의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 항의
257		1998.06.23	1998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258	1998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1998.06.23	
259		1998.11.00	일본 자위대 가상 독도탈환 훈련
260		1998.11.28	한국 측 독도 유인등대 공사 항의
261	독도 유인등대 설치(1998.3.16 관보 고시)	1998.12.10	
262		1999.07.27	1999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263	1999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1999.07.27	
264	독도주변 해양조사 실시	1999.09.00	
265	독도 지적 등록(접안시설 지번 부여)	1999.10.00	
266	독도 행정구역 처음 기술	1999.10.12	
267		1999.10.21	한국 측 독도 지적 등록 항의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268		1999.10.27	독도영해 한미연합훈련구역 포함 항의
269	한미연합훈련구역 조정 불가 통고	1999.10.27	
270	정기여객선 독도운항 신고접수	1999.11.00	
271		1999.11.00	일본인 첫 독도 호적등재 보도 관련
272		1999.11.06	정기여객선 독도운항 신고접수 항의
273	일본인의 독도 호적등재 취소 요구	1999.11.29	
274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	1999.12.10	
275	독도포함 첫 국가해양기분도 제작	1999.12.29	
276		2000.02.16	독도영해내 한국 측 해양과학조사 항의
277	울릉군 의회, 독도리 신설 조례안 개정	2000.03.20	
278		2000.03.21	한국의 독도리 신설 항의
279		2000.04.29	독도영해내 한국 해양과학조사 실시 항의
280	독도주변 해양조사 실시	2000.05.00	
281		2000.05.09	2000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282	2000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2000.05.09	
283	일본 독도광업권 설정(1954년 이래) 항의	2000.05.18	
284	사이버 독도(경상북도 공식홈페이지)개통식	2000.06.00	
285	울릉군 의회 독도리 공식지가 산정·공시	2000.06.00	
286	독도주변 해양조사 실시	2000.07.00	
287		2000.07.28	2000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288	2000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0.07.28	
289		2000.08.10	한국 공군기의 독도주변 활동 항의
290	한나라당 국회의원(22명) 8·15 독도 방문	2000.08.15	
291	생태계보전특별법(1977) 의거 특정도서 지정	2000.09.05	
292		2000.09.18	일본수상 독도영유권 주장
293		2000.10.30	한국측의 독도주변 대륙붕 탐사 항의
294	해양조사원 연안해류조사 추진	2001.02.00	
295	독도 선가장 복원 추진 결정	2001.02.02	
296		2001.02.08	한국의 한국연안해류조사 사업 항의
297		2001.02.27	시마네 현 지사 한국 독도 불법점거 주장
298		2001.05.08	200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299	2001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2001.05.08	
300		2001.07.06	2001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301	2001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1.07.06	
302	독도 해도 첫 간행(축척 5000분의 1)	2001.07.26	
303	한나라당 국회의원(8명) 8·15 독도 방문	2001.08.15	
304		2001.08.21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항의
305	환경부, 국립공원 지정 추진 계획 보도	2001.10.17	
306		2001.10.24	한국 측 독도 국립공원화 보도 항의
307		2001.11.00	지지방자치단체 전국회의, 독도영토권 결의
308		2001.11.09	한국 온누리호의 독도영해 내 해양조사 항의
309		2002.04.00	시마네 현 수산시험선의 영해침범
310	2003년도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항의	2002.04.08	
311		2002.04.09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독도 기술 검정 통과
312	해군 시마네 현 수산시험선 침범 저지 경고	2002.04.17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313		2002.05.00	일본어선 영해침범
314	해경 경비정의 일본어선 단속조치	2002.05.20	
315	독도 이동전화 올림기지국 설치	2002.06.03	
316	독도 (주변해역) 지질조사 추진계획 발표	2002.06.12	
317		2002.06.24	한국의 독도 지질조사 관련 항의
318		2002.07.15	한국의 독도 이동전화국 설치 관련 항의
319	독도우표 발행	2002.08.01	
320		2002.08.02	2002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321	독도국립공원 추진계획 보도	2002.08.12	
322		2002.08.12	한국의 독도국립공원 추진 계획 항의
323	독도사랑모임 국회의원 8·15 독도 방문	2002.08.15	
324		2002.08.16	독도 국립공원화 추진계획 항의
325	일본의 독도 국립공원화 보도 확인 요구	2002.09.06	
326	2002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2.10.21	
327		2002.11.14	한국 독도리 우편번호 부여 항의
328	산자부, 광업지적에 독도 포함 고시	2002.11.22	
329		2002.12.05	한국의 독도 광업지적 고시 관련 항의
330	독도 우편번호(799-805) 부여	2003.01.01	
331	경북체신청, 독도 우체통 설치	2003.04.24	
332		2003.04.29	한국의 독도 대형 우체통 설치 항의
333		2003.07.22	2003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334	2003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기술 항의	2003.07.22	
335		2003.08.05	2003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336	독도사랑모임 국회의원 8·15 독도방문	2003.08.15	
337	독도인근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통과	2003.08.18	
338	2003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3.08.19	
339	독도경비함에 구조헬기 배치	2003.09.01	
340		2003.09.08	한국의 독도 경비함 헬기 배치 항의
341	정보통신부, 독도우표 발행 기자회견	2004.01.08	
342		2004.01.09	총무상 일본도 독도우표 발행 검토 주장
343	독도우표 발행	2004.01.16	
344		2004.01.16	한국 독도우표 발행 항의
345		2004.01.23	민간인 신청 일본명 독도 우표 제작 발행
346		2004.01.26	만국우편연합(UPU) 회원국에 일본정부 입장 문서 회람
347	일본의 UPU 문서 회람 관련 반박 문서 회람 송부	2004.02.23	
348		2004.02.24	군사훈련 관련 독도 부근 구역 제외 요청
349		2004.03.00	일본 시마네 현 4명 독도로의 본적 이적
350	한국 TV 특집 독도 생방송	2004.03.01	
351		2004.03.04	한국 TV 특집 독도 생방송 항의
352	일본 시마네 현 4명의 독도본적 항의	2004.03.16	
353		2004.04.00	200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354	200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2004.04.00	
355		2004.05.06	극우단체 독도상륙 시도 출항 후 귀항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356	KT의 독도 초고속 위성인터넷 작업	2004.05.08	
357		2004.05.18	한국 KT의 독도 초고속 위성인터넷 항의
358		2004.07.06	2004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359	2004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항의	2004.07.07	
360	해양조사 관련 일본 순시선 파견에 대응, 한국 경비정 파견	2004.07.09	
361		2004.07.09	한국 측 독도주변 해양과학조사 항의
362		2004.08.00	200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363	한나라당 국회의원 8·15 독도 방문	2004.08.15	
364	2004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2004.08.17	
365	독도 영문판 해도 제작 배포	2004.10.31	
366	경북경찰청, 독도 리프트 시설 완공	2004.11.18	
367		2004.11.18	한국 측 독도 리프트 시설 보수 항의
368		2005.02.23	시마네 현 죽도의 날 조례 제정안 상정
369	시마네 현 죽도의 날 조례 제정안 상정 항의	2005.02.23	
370		2005.03.08	신문사 경비행기 KADIZ 접근 후 회항
371		2005.03.09	해상보안청 해상초계기 KADIZ 접근 후 회항
372	일본 측의 KADIZ 접근 관련 대응	2005.03.09	
373		2005.03.16	시마네 현 죽도의 날 조례 가결
374	시마네 현 조례 항의 및 즉각 폐기 촉구	2005.03.16	
375	경북, 시마네 현 관계 단절	2005.03.16	
376	국회, 독도수호 관련 특위 구성 결의	2005.03.16	
37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성명 발표	2005.03.17	
378	대통령, 한일관계 대국민 메시지 발표	2005.03.23	
379	독도입도 완화 일반인 입도 허용	2005.03.24	
380		2005.04.00	2005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381	2005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2005.04.00	
382		2005.04.05	일본 교과서 독도 고유영토 주장
383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항의	2005.04.05	
384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설치	2005.04.18	
385	대통령직속 역사·영토전담기구(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설치	2005.04.20	
38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5.05.18	
387		2005.06.11	극우단체 독도상륙 시도 출항 후 귀항
388	독도현황 고시	2005.06.28	
389	경북, 독도의 달(10월) 조례 제정	2005.07.04	
390	해군, 대형수송함의 독도함 명명 진수식	2005.07.12	
391		2005.07.13	한국 해군의 독도함 명명 항의
392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2005.07.29	
393		2005.08.02	2005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394	2005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5.08.03	
395	독도 영토표식 및 독도조난어민위령비복원	2005.08.15	
396		2006.02.22	시마네 현, 죽도의 날 1주년 행사
397	외교부, 대변인 논평 ‘유감’ 표명	2006.02.22	
398		2006.03.29	문부과학성 고등 교과서 검정본 독도 기술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399	일본 교과서 검정본 독도 기술 항의	2006.03.30	
400		2006.04.00	200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401	2006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2006.04.00	
402	독도주변 한국식 해저지명 IHO에 등재 추진	2006.04.00	
403		2006.04.14	독도주변 해저수로 탐사계획 IHO 통보
404	일본 측 해저수로 탐사계획 중단 촉구	2006.04.14	
405	대통령 한일관계 (독도)특별담화문	2006.04.25	
406		2006.04.26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표현 수립 언급
407		2006.04.28	외상 독도영유권문제 주장
408	외교부 유감 표명 및 독도문제 역사성 강조	2006.04.28	
409	외교부 독도/EEZ 특별대책반(TF) 발족	2006.05.03	
410	독도(서도)에 일반전화 개통	2006.05.04	
411	해양수산부 독도 5개 분야 사업 전개 방침	2006.05.04	
412		2006.05.12	일본의 독도영유권 인정 국회 답변서 채택
413	EEZ 독도 기점 확정법정부 고위급 TF회의	2006.06.05	
414	동해 해류조사(해양과학조사)	2006.07.05	
415		2006.07.05	한국의 해양과학조사 항의
416	일본외신기자단 독도 방문시 편의 제공	2006.07.24	
417		2006.07.24	외신기자단 독도방문시 편의 제공 항의
418		2006.07.30	일본 독도부근 방사능 조사계획 통보
419		2006.08.01	2006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420	2006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6.08.01	
421	독도에 이동전화 개통	2006.08.10	
422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로 대응	2006.09.00	
423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02	
424		2007.02.24	시마네 현 죽도의 날 2주년 행사
425	외교부, 대변인 논평 "유감" 표명	2007.02.24	
426		2007.03.00	2007년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기술
427	2007년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기술 항의	2007.03.00	
428		2007.03.30	문부성 고교 교과서 검정본 독도기술 강화
429	울릉군 독도 이장 임명식 개최	2007.04.06	
430	교육부장관, 일본 교과서 왜곡 항의	2007.05.09	
431		2007.05.14	시마네 현 독도 부교재 일선 학교에 배포
432	(두산중공업) 독도 담수화시설 설비 준공	2007.06.11	
433		2007.07.03	해양상(종합해양정책본부 부분부장) 신설
434		2007.07.06	2007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기술
435	2007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기술 항의	2007.07.06	
436	외교부 독도 해양경계 담당부서 신설	2007.08.29	
437		2007.12.00	국토지리원, 독도 정밀 위성지도 제작
438	사상 첫 독도 대통령 부재자투표 실시	2007.12.13	
439		2008.02.00	외무성 독도 홍보용 팸플릿 제작
440		2008.02.22	시마네 현 죽도의 날 행사
441	외교부 대변인 논평 '유감' 표명	2008.02.22	
442	독도 태양광 발전기 건립안 심의 통과	2008.02.27	
443	국토해양부 독도 등 담당 해양영토과 신설	2008.03.09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444		2008.04.00	2008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기술
445	2008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기술 항의	2008.04.00	
446	경북 울릉군, 독도 현지 공무원 상주 근무	2008.04.21	
447		2008.05.18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명기 가능 보도
448	일본 문부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명기 가능 항의	2008.05.19	
449	경북의회 일본정부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	2008.05.20	
450	국회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관련 결의안 채택	2008.07.11	
451		2008.07.14	문부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명기 강행
452	국토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해설서 독도명기 관련 대국민 발표	2008.07.14	
453	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해설서 관련 대변인 성명	2008.07.14	
454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독도영유권 관련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대책 수립 지시	2008.07.16	
455	경상북도의회·대구시의회 일본의 독도명기 규탄 결의문 채택	2008.07.17	
456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 설치	2008.07.17	
457	국방부 해·공군·해경청 참가 독도방어훈련 7월말/11월 중순 실시계획 발표	2008.07.21	
458	외교부 독도 TF 구성	2008.07.28	
459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TF 설치	2008.07.30	
460	문화관광체육부 차량부착용 독도사랑 스티커 제작 배포	2008.08.13	
461	(대통령지시)독도문제 전담 독도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내) 출범	2008.08.14	
462	국가정책조정회의, 독도관련 대응전략과 체계의 전면 재정비("기존의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영토관리"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처")	2008.08.21	
463		2008.09.05	2008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464	2008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8.09.05	
465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출범	2008.10.02	
466		2008.10.03	내각회의 독도영유권 주장
467	경북지방경찰청 독도방문 기념엽서 제작 독도 현지 배포	2008.10.10	
468	항공안전본부 ICAO독도 헬기장 정식 등록 및 지명약어 배정	2008.10.14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469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독도방문	2008.10.21	
470	서울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 지원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	2008.10.23	
471	국회 국토해양위 독도 방문	2008.10.25	
472	경북 울릉군 제108주년 독도의 날 선포	2008.10.25	
473	대구시교육청 독도교육 워크북(초등 4~6 년용, 중학교용)발간,보급	2008.10.30	
474	경상북도 만화로 풀어가는 독도이야기 발간	2008.10.31	
475	국회 독도특위 독도 방문	2008.11.04	
476		2008.12.00	외무성의 독도 홍보용 팸플릿 총 10개 국어판 제작 배포
477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용 팸플릿 제작 배포 항의	2008.12.00	
478	문광부 독도의 국토 끝 관광자원화 사업대상 지역 선정	2009.01.13	
479	어린이 독도체험관 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2009.02.04	
480	경상북도 전국 최초 초등학교생용(5~6년) 독도 교과서 발간	2009.02.09	
481		2010.02.22	시마네 현 죽도의 날 행사
482		2009.03.06	총리 독도영유권 주장(참의원 예산위)
483	대구지방국세청 독도 첫 사업자등록증 교부(주인 김성도)	2009.03.11	
484		2009.04.00	2009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기술
485	2009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기술 항의	2009.04.00	
486	경상북도 허가 안용복재단 출범(2009.2 조례에 의거)	2009.06.18	
487	경북 울릉군 독도관리 전용선 독도평화화 취향	2009.06.26	
488		2009.07.17	2009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489	2009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09.07.17	
490	경찰병원 독도원격진료 운영 개통식	2009.07.23	
491	독도 공개지역 확대(문화재청 행정명령)	2009.08.00	
492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지 발간·배포	2009.08.03	
493	경북 독도입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 개최	2009.08.24	
494	외교부 대변인 명의 '유감' 논평	2009.09.22	
495	문화재청 독도 국기게양대 설치 관련 조건부 승인	2009.10.00	
496		2009.12.25	문부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영유 입장 반영
497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 논평	2009.12.25	
498		2009.12.25	문부과학상 독도영유권 주장
499	경북 2007년 계획된 독도개발 4대 핵심사업 본격추진 발표	2010.01.07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500	경북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	2010.02.00	
501	경북 울릉도-독도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등재 추진	2010.02.03	
502	경찰청 독도 헬기장 전면 개축 설계 계약	2010.02.08	
503		2010.02.22	시마네 현 죽도의 날 행사
504	외교부 대변인 명의 '유감' 논평	2010.02.22	
505	국회 외통위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자동폐기	2010.02.23	
506	대구환경청 독도 자생식물 세계유전자 은행(NCB) 첫 등록	2010.03.09	
507	울릉도·독도 DMB 방송 개국식	2010.03.17	
508		2010.03.30	문부성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본의 독도 기술 강화
509	일본 초등학교과서 검정본 독도기술 항의	2010.03.30	
510	국회 일본 초등학교과서 독도영유권 표기 철회 촉구 결의	2010.04.02	
511		2010.04.06	2010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512	2010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항의	2010.04.06	
513	청와대 대변인 2010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기술 관련 언급	2010.04.06	
514	독도주변 해역의 지반안정성 분석용 지질 특성 연구 수행	2010.04.15	
515		2010.04.16	한국 측 독도주변 해역 지질조사 중단 요구
516	국회의장 최초 독도 방문	2010.04.18	
517	울릉군 독도 서도 주민숙소 확장 개축 사업 착공방침	2010.04.21	
518	국회 독도영토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2010.04.28	
519	교과부 독도교육통합위원회(10명) 출범	2010.04.30	
520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독도주민숙소 확장공사 관련 행정명령	2010.05.04	
521	행안부 정부종합청사 로비에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 개통	2010.05.10	
522	교과부 독도교육 강화 역사 교육과정 확정 발표	2010.05.12	
523	울릉도-독도 정기여객선 조건부 면허 처음으로 승인	2010.05.13	
524	독도주재 부재자투표 실시	2010.05.27	
525	독도에서 국가공인자격(정보기술자격: ITQ) 시험 첫 시행	2010.05.29	
526	독도의 친환경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및 제막식 개최	2010.06.15	
527	문화재위원회, 독도 동도 국기게양대 3개 설치 관련 심의	2010.07.29	

사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행사	일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528	교과부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지침에 독도교육 권장	2010.08.06	
529		2010.08.21	독도와 북방영토의 일본 국유화 대상 제외 보도
530	경상북도 의회 독도 현자-일본의 독도 영유권 규탄 결의문 채택	2010.08.26	
531	기상청 독도 연안에 해양기상관측장비 뷰이 설치	2010.09.01	
532		2010.09.10	2010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533	2010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 항의	2010.09.10	
534	국회 독도특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등 결의안 채택	2010.09.13	
535	국회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 설치	2010.09.16	
536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명예주민증 발급) 제정	2010.10.01	
537	국립해양조사원 독도수역 최신 해도 간행	2010.10.22	
538	국토부 울릉도·독도 포함 10개항의 국가관리항 지정 계획	2010.12.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

60 Years of Dokdo Issue and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 Event-Data Approach

초판 1쇄 인쇄 2012년 3월 21일

초판 1쇄 발행 2012년 3월 27일

지은이 배진수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군동 26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2

ISBN 978-89-6187-271-3 93910

*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